

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목 차

I 감사의 말씀 / 1

II 모니터링 선언문 / 5

III 모니터링 사업 개요 / 9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 11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11
3. 모니터링 주요 활동 일지 • 14

IV 모니터링 결과 보고 / 19

〈전국 과제〉

과제 1. 2010년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 25

과제 2.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52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과제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75





〈지역 과제 : 서울 권역〉

과제 1.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 91

〈지역 과제 : 부산 권역〉

과제 1.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105

과제 2.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모니터링 • 113

과제 3.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 121

과제 4.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131

〈지역 과제 : 광주 권역〉

과제 1.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 • 143

〈지역 과제 : 대구 권역〉

과제 1. 대구 시내 공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모니터링 • 153

과제 2.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161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 167

VI
모니터링 활동 후기 / 189

1. 서울 권역 • 191
2. 부산 권역 • 199
3. 광주 권역 • 209
4. 대구 권역 • 215

VII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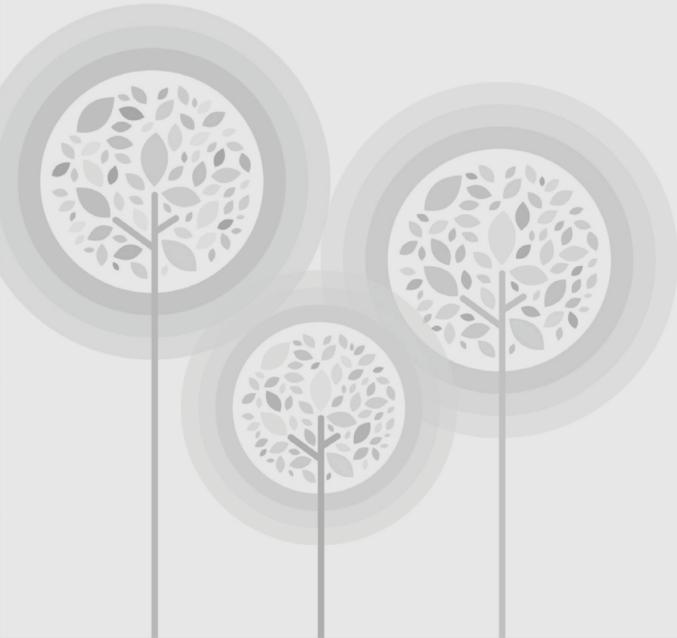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 부 록 / 247





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단 발대식

I . 감사의 말씀



I. 감사의 말씀

이제는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심길입니다.

먼저, 모니터링 단원 및 자문단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거행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습은 ‘장애차별조사과 직원들’로부터 자주 전해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6월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모니터링을 위해 선거 현장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의 모니터링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결실의 계절인 9·10월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 저기 행사장으로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대식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이 하나도 식지 않고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최종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득 여러분들이 발대식 때 선언한 일부 글귀가 생각납니다. △장애인도 영화관에서 A석 자리에 앉아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저상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여 신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마음껏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세상 등 단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비록 모니터링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고, 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으며, 일부 기관으로 부터는 즉시 시정하겠다는 반가운 계획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도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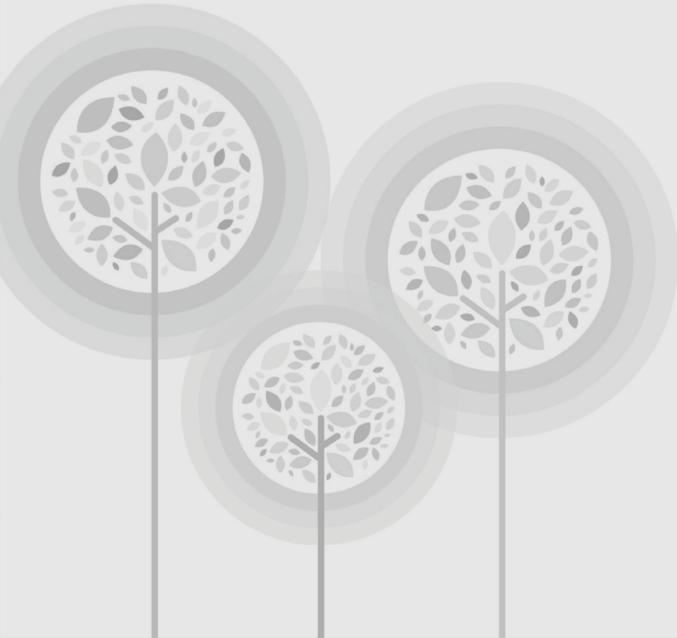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손심길

Ⅱ . 모니터링 선언문



II. 모니터링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 모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영역에서의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우리는 단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거나 특별한 배려를 바라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편견 없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세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에 마음껏 접근하고, 영화관에서는 S석 자리에 앉아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웹에 접근해 사이버세상을 즐기고, 첨단 IT기기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는 세상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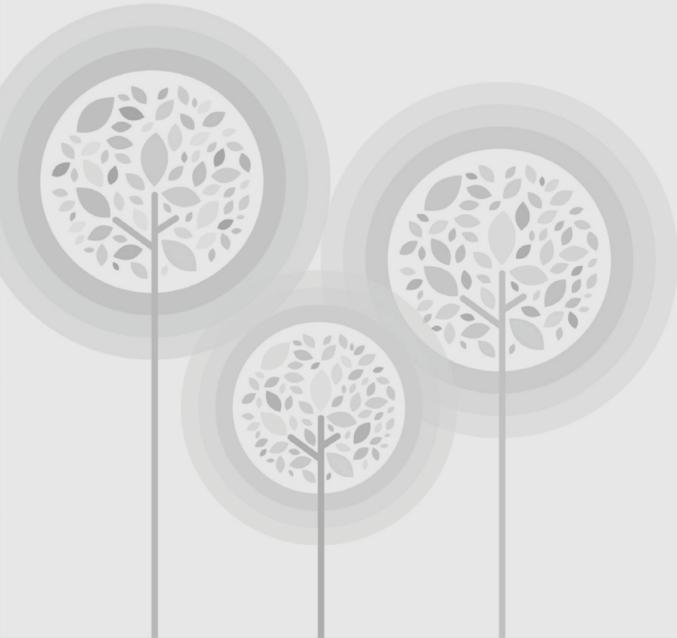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국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행사에 적극 참여·향유할 수 있는 세상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자 동일한 구성으로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전국 각지를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니터링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역동적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Ⅲ. 모니터링 사업 개요



Ⅲ.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 하여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원회 정책과제·진정사건·기관협의 등과 연결시켜, 동법의 대국민 인식제고와 그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임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 장애차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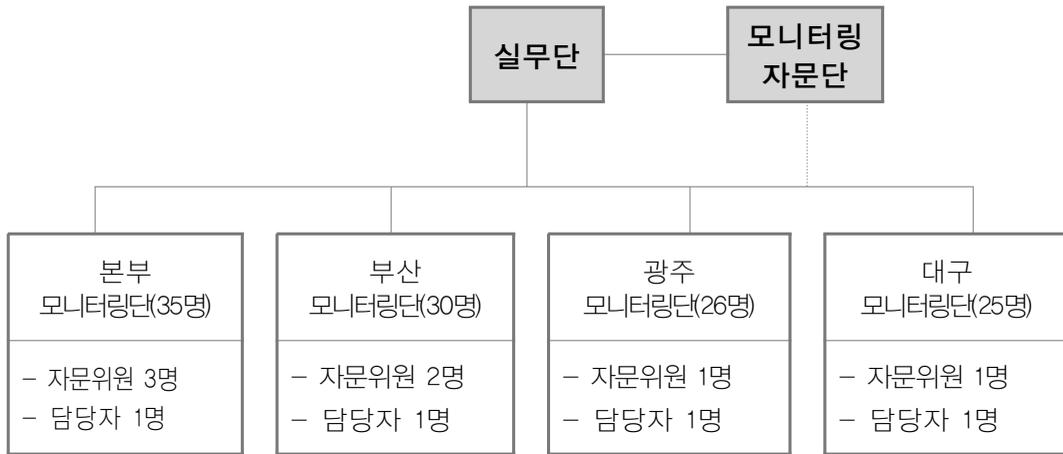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가. 모니터링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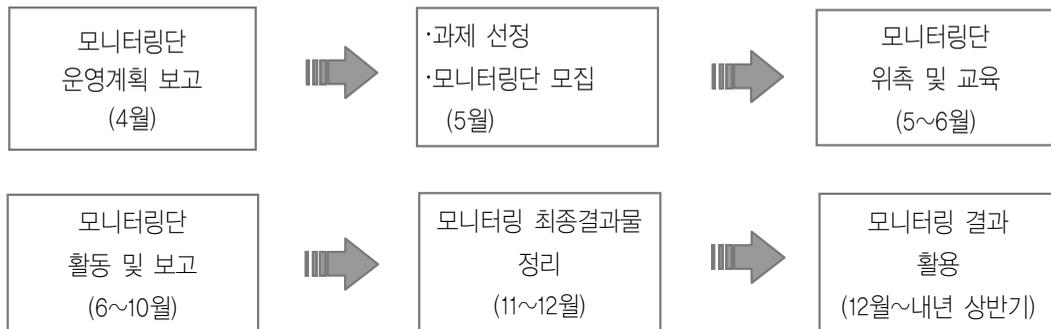
-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자문단과 현장 모니터링단원, 권역별 담당자,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
- 모니터링 자문단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총 7명으로 구성

- 현장 모니터링단원은 4개 권역(본부, 부산, 광주, 대구) 총 116명이며, 대표적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60% 정도 참여
- 이외 권역별 담당자가 1명씩 배치됐으며, 모니터링 단원 중 1인은 전체 코디네이터로 활동

나. 모니터링단 구성도



다. 모니터링 사업 흐름도



※ 정책과제, 기관협의
진정사건 등 연결

라. 모니터링 개요

1) 현장 모니터링

- 5개월 간(2010. 6. ~ 10.) 월 2회의 현장모니터링 수행
- 전국(지정)과제와 지역(자율)과제로 나누어 수행
- 모니터링에 앞서 매월 과제에 대한 교육 및 정기회의 실시
- 기관 및 시설 모니터링 시 사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위원회 직원이 동행
- 모니터링 후에는 개인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

2) 정책 모니터링

- 전문가 등이 참여한 권역별 조례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부산,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 자치법규 모니터링 실시

3) 모니터링단 교육 내용

- 공통(전체) 교육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권리협약
 -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 방식
- 권역별 교육
 - 2010년도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교육
 - 모니터링 방식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마. 모니터링 주제

1) 현장 모니터링 - 전국과제

- 2010년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2) 현장 모니터링 - 지역과제

- 서울
 -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 부산
 -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광주
 -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 대구
 - 대구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3) 정책 모니터링

- 광역시·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3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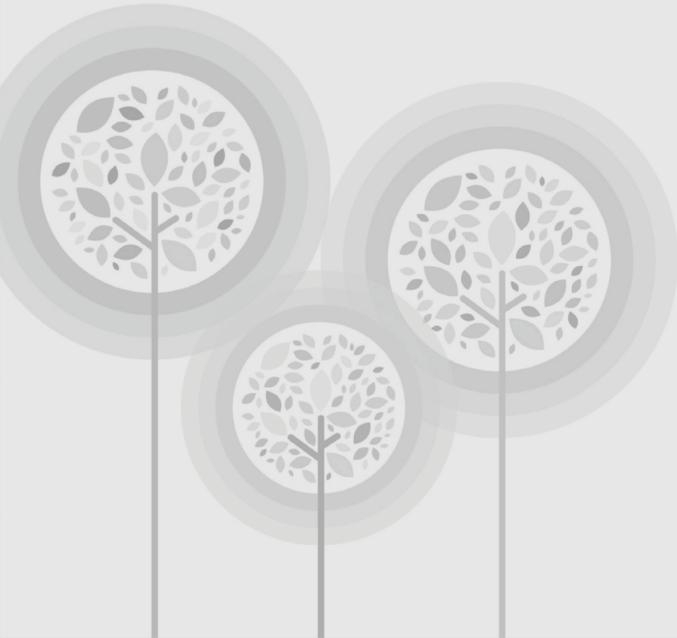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월	2010년도 주요 활동	비 고
1	○ 모니터링 사업 기획 및 자문단 모집	
2	○ 모니터링단 제1차 자문단 회의 개최(2. 24)	
3	○ 모니터링단 실무단 회의 개최(3. 19.) - 2010년도 모니터링단 세부 운영 계획 논의 및 확정	
4	○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기본 운영 계획 보고 (상임위원회, 4. 29.)	
5	○ 모니터링단 제2차 자문단 회의 개최(5. 7.) - 모니터링단 현장(전국) 및 정책 과제 확정 ○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세부 계획 보고(5. 12.) ○ 모니터링단 모집(5. 17.) : 4개 권역(본부, 부산, 광주, 대구 총 117명) ○ 모니터링량 위촉(5. 17. ~ 11. 31.) <모니터링 과제설명회> ○ 서울 권역 : 5. 26(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 부산 권역 : 5. 25(화) 부산광역시 인권전시관 ○ 광주 권역 : 5. 28(금) 광주 장애인복지관 ○ 대구 권역 : 5. 26(수)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10	

월	2010년도 주요 활동	비 고
6	<모니터링단 발대식>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6. 4.) ○ 모니터링단 전체 교육 실시 <전국과제 모니터링> ○ 장애인 참정권 전국 모니터링(5. 20. ~ 6. 2.) 실시 <지역과제 모니터링> ○ 서울 권역 -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6.19. ~ 6.27.) ○ 부산 권역 -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6.28 ~ 7.9.) ○ 대구 권역 - 대구시내 공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6.28. ~ 7.8.)	
7	<모니터링 과제설명회> ○ 서울 권역 : 2010. 7. 7(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7. 9(금) 부산사직야구장 ○ 대구 권역 : 2010. 7. 9(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전국과제 모니터링> ○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7.12 ~ 8.30.) -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과제 모니터링> ○ 부산 권역 -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6.25. ~ 8.3.) ○ 대구 권역 -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7.19.~8.6.) ○ 광주 -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7.10.~7.20.) <기 타> ○ 재보궐 선거(7.28.)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 발송(7.14)	

월	2010년도 주요 활동	비 고
8	<p><모니터링 과제설명회> ○ 서울 권역 : 2010. 8. 5(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8. 11(수)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광주 권역 : 2010. 8. 5(목)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 권역 : 2010. 8. 13(금) 대구인권사무소</p> <p><전국과제 모니터링> ○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7.12 ~ 8.30.) -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p> <p><지역과제 모니터링> ○ 부산 권역 -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6.25.~9.27)</p>	
9	<p><모니터링 과제설명회> ○ 서울 권역 : 2010. 9. 10(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9. 9(목)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2010. 9. 10(금)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광주 권역 : 2010. 9. 16(목)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대구 권역 : 2010. 9. 10(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p> <p><전국과제 모니터링> ○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9.13~10.31) - 토론회, 공청회, 축제성 행사 등을 중심으로</p> <p><지역과제 모니터링> ○ 부산 권역 -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6.25.~9.27)</p>	
10	<p><웹 접근성 교육> ○ 서울 권역 : 10. 7(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광주 권역 : 10.11(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대구 권역 : 10. 8.(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p> <p><전국과제 모니터링> ○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9.13~10.31) - 토론회, 공청회, 축제성 행사 등을 중심으로</p>	

월	2010년도 주요 활동	비 고
	○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10.26~10.28) - 제주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중심으로 <지역과제 모니터링> ○ 부산 권역 -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9. 27.~ 10. 22.) <기 타> ○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10. 21.)	
11	<모니터링 평가회> ○ 서울 권역 : 11. 5(금)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0층 ○ 부산 권역 : 11. 23.(화)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광주 권역 : 11. 26.(금) 광주은행 4층 ○ 대구 권역 : 11. 12.(금) 부산 노보텔 8층 보르드홀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 광역시·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11.24.) - 위원회는 4개 권역(부산, 광주, 대구, 경북) 지역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과 공동 개최	
12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 2010년도 모니터링 최종 결과발표회 개최 - 2010. 12. 2(목)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	

IV. 모니터링 결과 보고





전국과제

과제 1. 2010년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2.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결과보고서 들여보기>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올해 아래의 총 11개 과제(전국 3, 지역 8)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 역		과 제 명
전국과제		2010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공공기관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지역 과제	서울권역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접근성
	부산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보건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광주권역	지자체 청사 건물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대구권역	대구 시내 공원에서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과제는 크게 전국과제와 지역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전국과제는 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모아 모니터링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4개 권역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과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권역이 중심이 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결과보고서의 작성도 전국과제는 본부(서울)가 중심이 되었고, 지역과제는 해당 권역이 중심이 되어 작성되었다.

결과보고서는 △모니터링 결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회신 등 개선사항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은 각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2010. 11. 22.) 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며, ‘회신 등 조치 내용’은 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 모니터링 기관들의 답변 내용을 마찬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피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전달하여 그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판단에 관한 부분들은 되도록 간략하게 기술

하거나 제외하였다. 또한, 피 모니터링 기관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사례, 체크리스트 내용 등은 그 양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직접 담지는 않았으며, 대신 관련 내용은 피 모니터링기관들에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해 가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 현장이 담긴 사진들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유사한 사진이 많아 별도 목차를 정해 주제별로 분류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좀 더 차별 사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과제 1. 2010년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및 선거 후보자 웹사이트
- 정당 및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 선거 후보자 대담 및 토론을 위한 선거방송(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 투표소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5. 20.(선거운동 개시일) ~ 2010. 6. 2.(선거일)

라. 모니터링 참가자(총 92명) → 장애인 총 56.5%

지역	장애유형					총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비 장애	
서울	3	5	9	-	14	31
부산	3	1	13	1	5	23
광주	-	-	10	-	10	20
대구	-	1	6	-	11	18
계	6	7	38	1	40	92

2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전 교육

가. 사전교육 일시 및 장소

- 서울 권역 : 2010. 5. 26(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 부산 권역 : 2010. 5. 25(화). 17:00~18:30, 부산광역시 인권전시관
 - 광주 권역 : 2010. 5. 28(금). 14:00~16:00, 광주 장애인복지관
 - 대구 권역 : 2010. 5. 26(수). 14:00~16: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 모니터링단 선발 직후, 유선 및 e-mail을 이용한 참정권 모니터링 설명을 통해, 각 권역별 사전교육 실시 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나. 사전교육 주요 내용

- 모니터링단원 소개 및 소통
- 2010년도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 설명
-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설명
- 각 조별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

3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대상	담당	모니터링 방법
웹사이트 운영	시각	- 스크린 리더기 사용 가능 여부 등	전체	재택 모니터링 (웹페이지 검색)
	청각	- 홍보영상물에 대한 자막 제공여부 등	전체	
선고공보	시각	- 점자공보 제작 여부 - 점자공보와 목자공보 내용의 동일성 (동일 정보 제공)	시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선거공보 검토 및 선거방송 청취)
선거 방송	시각	- 화면해설 여부	전체	
	청각	- 수화통역, 자막방송 여부	전체	
투표소	지체	- 임시경사로 설치 등 - 출입구 유효폭 확보여부 등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투표대 설치여부	전체	현장 모니터링 (선거 당일 직접투표 참여)
	시각	- 시각장애인용 투표 보조용구	전체	
	공통	- 투표소 내 장애인의 편의와 투표를 보조할 보조인의 배치 여부	전체	

4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가. 웹 접근성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27조 (참정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항, 제2항 제1호

2) 모니터링 대상

○ 총 47개 웹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 선거관리위원회 6곳, 선거홍보사이트 1곳, 선거 후보자 33곳, 정당 7곳

3) 모니터링 내용

(가) 체크리스트 내용

점 검 사 항	비 고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하고 있는가?	
1-4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색 구성에 있어 색상대비 등을 통해 시각적 전달은 용이한가?)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2-2 깜빡이는 콘텐츠의 경우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가?	
2-3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가?	
2-4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가?	
2-5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2-6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는가?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가?	
3-3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선거후보자)

체크 리스트	콘텐츠 인식 용이성				콘텐츠 사용 용이성						콘텐츠 이해 용이성		
	1-1	1-2	1-3	1-4	2-1	2-2	2-3	2-4	2-5	2-6	3-1	3-2	3-3
웹사이트 수	45	46	46	40	46	40	46	45	37	37	45	45	46
만족	4	3	1	10	10	0	7	3	7	1	6	8	9
만족비율(%)	8.9	6.5	2.2	25	21.7	0	15.2	6.7	18.9	2.7	13.3	17.8	19.6

○ 선거관리위원회(총 6곳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	콘텐츠 인식 용이성				콘텐츠 사용 용이성						콘텐츠 이해 용이성		
	1-1	1-2	1-3	1-4	2-1	2-2	2-3	2-4	2-5	2-6	3-1	3-2	3-3
모니터링 기관 수	5	6	6	6	6	2	6	6	3	4	6	6	6
만족	4	3	0	6	5	0	3	1	3	1	4	5	4
만족비율(%)	80	50	0	100	83.3	0	50	16.7	100	25	66.7	83.3	66.7

○ 후보자(총 33명)

체크 리스트	콘텐츠 인식 용이성				콘텐츠 사용 용이성						콘텐츠 이해 용이성		
	1-1	1-2	1-3	1-4	2-1	2-2	2-3	2-4	2-5	2-6	3-1	3-2	3-3
모니터링 기관 수	5	6	6	6	6	2	6	6	3	4	6	6	6
만족	4	3	0	6	5	0	3	1	3	1	4	5	4
만족비율(%)	80	50	0	100	83.3	0	50	16.7	100	25	66.7	83.3	66.7

○ 정당(총 7곳 모니터링)

- 정당 7곳 모두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 되지 않음.

4) 주요 사례

- 선거관련 웹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문자 확대 버튼이 있으나 문자 확대를 했을 경우 다른 문자와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숨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이나 음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자막해설이나 수화 통역 제공이 부족함
- 새 창이 계속 반복되는 등의 복잡한 홈페이지는 마우스를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가졌을 경우 접근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5) 시사점

-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하지만, 실제 선거기간 운영된 거의 대부분의 선거관련 웹 사이트들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보면, 정당이나 선거후보자들의 웹 사이트에 비해 상당부분 웹 접근성이 보장되었으나, 동영상에 대한 대체수단(자막, 원고, 수화) 제공(0%), 깜박이는 콘텐츠 회피 수단마련(0%), 건너뛰기 링크 제공(16.7%), 새 창 안내 제공(25%) 등에 있어서는 낮은 접근성 수준을 나타냄.
-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들의 경우 장애인 참정권 보장여부를 떠나 국가 기관으로서 누구든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출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무가 정당이나 선거후보자에 비해 훨씬 엄중하다고 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7개 정당 및 33개 선거후보자 웹사이트의 경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신속히 요구됨.
- 이러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선거후보자들의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실정법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

-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각 정당과 공직 선거후보자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참정권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선거 공보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6항

2) 모니터링 대상

- 경기도 및 안양시 관련 후보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북구 관련 후보자
-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 대구광역시장, 대구달성구청장, 대구달성군수 후보자

3) 모니터링 내용

(가) 체크리스트 내용

항목	점 검 사 항	비 고
정보제공	책자형 점자선고공보 제작여부	
	묵자 선고공보의 내용과 점자 선거공보 내용의 동일성	

(나) 모니터링 결과 분석

		총 수	점자 공보물 제작 (인원, 정당수)	비율(%)	비 고
후보자		74	45	60.8	
각 정당별 비례대표의원	경기도의원	7	2	28.6	
	안양시의원	4	2	50	
	부산시의원	5	3	60	
	부산시북구의원	3	2	66.7	

4) 주요 사례

- 후보자별로 점자공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 후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공보물의 점자가 눌러져서 배달이 되거나, 공보물이 누락되는 경우, 동일한 공보물이 2개 배달되는 경우가 있음
-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틀린 경우가 있음
- 일반 공보물에 비해 점자공보물의 내용이 부실하고, 후보자의 약력위주나 큰 타이틀 제목만 나열돼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저시력 장애인이나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파일 형태로 선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시사점

- 선거공보는 선거 및 선거에 출마한 공직선거후보자들에게 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수단으로써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직접 개개인의 집으로 배달되고 있으며, 점자선거공보의 경우 그 제작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선거공보는 당연히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갖추어 전달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번 선거공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점자 선거 공보가 원활히 제작·배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후보자들의 경우 60.8% 제작,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 경우 47%의 점자선거공보가 제공 되었으며, 점역비율도 약 60~70% 정도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560명 중 점자 선거 공보 제작자는 157명으로 전체의 28%라는 부산일보의 보도도 있었음
-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제65조 제4항)이 점자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소극적 행위를 허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점역비율이 낮은 이유 또한 점자선거공보 제작 시 일반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 65조 제4항 후단)에 기인함. 공직선거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결과적으로 점자선거공보 제작의 소극화, 점역율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선거 후보자 및 정당 들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선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한편,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를 모르는 저시력 장애인이 많은 만큼 음성파일 등 점자 선거공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도 함께 고민 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많은 선거후보자들이 점자선거공보의 제작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시의 적절한 홍보도 요구됨

다. 선거 방송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 모니터링 대상

- 총 22개 방송 토론회 및 방송 연설 모니터링

3) 모니터링 내용

(가) 체크리스트 내용

- 후보자 토론회 등 선거 관련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시각), 수화통역(청각), 자막방송(청각)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모니터링 대상별 결과 분석

	모니터링 대상 수	자막방송(%) (청각)	수화방송(%) (청각)	화면해설(%) (시각)
선거 방송 토론회	19	1(5.3)	17(89.5)	0(0)
		자막 or 수화방송 → 94.8%		
방송사	10	1(10)	8(80)	0(0)
		자막 or 수화방송 → 90%		
합 계	29	2(6.9)	25(86.2)	0(0)

4) 주요 사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 및 수화통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자막해설과 수화방송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자막과 다르게 수화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자막해설의 경우 후보자가 발언하는 시간과 속기해서 내보내는 시간이 달라, 자막이 어느 후보자가 발언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색깔을 달리해서 표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음

5) 시사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 등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참정권) 제2항은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전달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음
- 이번 지방선거 선거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 중 대체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지역단위 방송의 경우 여전히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모니터링 한 선거방송 중 화면해설을 제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이는 토론이나 연설 방송의 특성상 방송국에서 별도 화면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선거방송토론회의 자막방송 또는 수화방송 비율은 95%
 - 선거방송토론회의 화면해설 방송 비율 0%
- 하지만 제공된 수화통역의 경우 그 완성도가 청각장애인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자막방송의 경우에도 자막이 느리게 제공될 경우 후보자들 간의 발언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안이 실질적으로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회에서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의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5.28. 선고 2006 헌마 285 판결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방송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결정이유에서 해당 임의조항은 원칙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

라. 투표소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2항
-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 등)

2) 모니터링 대상

- 전국 총 102개 투표소 모니터링
 - 서울 20곳, 경기 12곳, 충남 2곳, 부산 21곳, 울산 4곳, 경남 4곳, 대구 20곳, 광주 15곳, 전북 4곳

3) 모니터링 내용

- (가) 체크리스트 내용
- 편의시설

항목	점 검 사 항		비고
편의시설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는 확보되었는지 여부		
	통행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지형상곤란한경우1/12 허용)	
	2. 건축물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제거되었는지 여부		
	턱 낮추기	2cm 이하	
	턱 낮추기가 어려운 경우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3.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여부		
	유효폭(0.8mO, 전면유효거리(1.2m), 턱제거 여부 등 점검		
	4. 점형블록 설치 여부		
	5. 투표소 내 투표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없앴는지 여부		

- 편의시설 외 편의제공

항목	점 검 사 항	비고
투표 보조	6. 장애인용 기표대 마련 여부(1,2m)	
	7. 투표보조용구 비치 여부	
	8. 점자 투표 안내문 비치 여부	
인적 서비스	9. 장애인 투표 활동 보조인 배치 여부 (투표 안내, 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이동 및 기표 도움 등)	
	10. 기표하는데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기 타	투표소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투표소 주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충분했는지 여부	

(나) 모니터링 투표소 결과 분석

지역	투표소 (수)	접근로 확보	출입구 높이차	출입구 확보	점형 블록	장애물 여부	장애인 용 기표대	투표 보조 용구	점자 투표 안내문	투표 보조원	기표 도움
		1	2	3	4	5	6	7	8	9	10
서울, 경기, 충남	34	22/30 (73.4%)	23/30 (76.7%)	26/29 (89.7%)	4/10 (40%)	20/30 (66.7%)	14/20 (70%)	11/16 (68.8%)	10/15 (66.7%)	23/27 (85.2%)	20/24 (83.3%)
부산, 울산, 경남	29	22/29 (75.9%)	22/29 (75.9%)	23/29 (79.3%)	7/27 (25.9%)	15/28 (53.6%)	14/26 (53.8%)	16/27 (59.3%)	10/27 (37.0%)	20/27 (74.1%)	20/27 (74.1%)
대구	20	15/20 (75%)	9/20 (45%)	17/20 (85%)	3/10 (30%)	7/17 (41.2%)	6/13 (46.2%)	3/11 (27.3%)	2/8 (25%)	11/14 (78.6%)	10/13 (76.9%)
광주, 전북	19	14/17 (82.4%)	12/17 (70.6%)	15/17 (88.2%)	2/6 (33.3%)	12/17 (70.6%)	6/12 (50%)	8/12 (66.7%)	9/13 (69.2%)	11/18 (61.1%)	10/12 (83.3%)
합 계	103	73/96 (76.1%)	66/96 (68.8%)	81/95 (85.3%)	16/53 (30.2)	54/92 (58.7)	40/71 (56.3%)	38/66 (57.6%)	31/63 (49.2%)	65/86 (75.6%)	60/76 (79.0)

4) 주요 사례

- 투표소가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에 마련돼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음
- 접근 경사로 등에 다른 물건이 놓여있거나, 자동차 또는 자전거 등이 주차 되어 있고, 경사도가 미끄러운 재질로 구성됨
-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음
- 투표소 내부에 턱이 있거나, 활동 공간이 비좁아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입구는 접근 가능하나 출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음
- 기표대 안이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렵거나, 기표대가 약할 경우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은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음
- 투표보조원 교육 필요
 - 장애인 선거용 보조기구(점자투표용구)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
 - 보조인이 기표소를 열어 보는 등 비밀투표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
 - 정당 참관인이 투표보조원을 하여 비밀투표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
 - 투표보조원이 반말을 하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 투표소는 선거행위가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장애인 편의 미제공 시 가장 직접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있어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오래전부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2항)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많은 투표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편의시설 측면에서 여전히 장애인 접근이 곤란한 지하1층과 지상2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이 있었고, 설치된 경사로의 관리는 부실했으며,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된 경우, 비좁은 투표소 내부와 기표대로 휠체어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음.
 - 점형블록 설치 30.2%, 점자투표 안내문 비치 49.2%, 투표보조용구 비치 57.6%, 장애인용 기표대 마련 56.3% 등으로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미흡함

- 이외에도, 접근로 확보 76.1%, 출입구 높이차 제거 68.8%, 장애인 출입 가능한 출입구 확보 85.3% 정도임
- 특히,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투표소와 기표대 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 투표장소 내부가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협소함
 - 기표대 폭이 좁아 투표 시 전동 휠체어가 모두 가려지지 않고, 비밀투표 보장에 어려움이 있음
 - 기표대에 전동휠체어가 끼는 등 움직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몸 떨림이나 손떨림이 심한 장애인일 경우 기표대 책상이 너무 약해 기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편의시설외의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활동보조인 배치 53.9%, 활동보조인 기표 도움이 54.8%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 투표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 투표 보조원이 선거용 보조기구의 사용법을 미숙지한 경우
 - 장애인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투표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편의시설 설치 및 선거보조기구 개발, 선거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편의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투표소 선정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투표보조원 배치에 이르기까지 관련기관의 세심한 준비와 특히 진행요원들에 대한 사전 전문교육과 인권소양교육이 필요함

5 2010년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총평

-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거관련 웹사이트, 선거공보, 선거 방송 토론회, 투표소에 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분을 모니터링 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참정권 영역에서 많은 장애 차별 사례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웹 사이트

-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 및 선거후보자 웹 사이트들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은 매우 취약했으며, 특히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수단(자막, 수화 등)제공은 모든 웹 사이트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제공률 0%)

□ 점자 선거공보

-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선거 후보자들의 점자선거공보는 약 60% 정도가 제공 되었으며, 제공된 점자선거공보의 점역비율은 약 60~70% 수준이었음

□ 선거 방송

- 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자막 또는 수화 방송 서비스가 90% 이상 제공 되고 있었으나, 자막방송만의 제공비율은 7% 수준으로 낮았으며, 수화방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
-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는 없었으며, 이는 선거방송토론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투표소

- 투표소 편의시설 측면에서 점형블록 설치(30.2%), 점자투표 안내문 비치(49.2%),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56.3%) 등이 부족했으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출입구 및 접근로를 갖춘 투표소는 약 80% 정도였음
- 편의시설 외 편의제공 측면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인들의 선거를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활동보조인은 53.9%로 나타났으며, 배치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및 친절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음

□ 평 가

-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이 낮은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 제공과 선거방송토론회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 및 수화통역 제공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점자선거공보 제작 시 면수가 제한되는 등 법령상 차별이 허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더불어 선거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당,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정부기관, 정당, 방송사 등 12개 기관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 6월에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기 공문발송 : 장애차별조사과-3319(2010.5.14))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더불어 2010. 7. 28.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27조(참정권)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010. 7-28 재보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협조 요청

○ 수신자 : 6개 지역 선관위에 공문 시행

제목 재보궐 선거(2010.7.28)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10. 6월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정당, 방송사 등)에 송부하여 향후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 기관의 관할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7·28 재보궐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에 사용된 투표소 및 웹사이트 관련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3.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표명

-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표명

가.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전단형 포함, 이하 같다.)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모니

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 “2010. 6. 2.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공 및 면수 제한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8조,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9조

III. 판단

1.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선거 홍보물로서, 특히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로 인해 선거벽보,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전달 매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제작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의 장애인 유권자를 대하는 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제도적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하지 않아도 선거 결과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경우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보다 면수가 최소 1.5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해당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60~70% 정도의 내용 밖에 담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

가. 차별 판단의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이어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동등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08년 12월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구체적으로는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할 것, 또한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시각장애인이 공직 선거과정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의 합리성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운동의 자유 보장 및 부족한 점자 인쇄시설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후보자 등이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선거공보 제작이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선거운동 자유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 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역량이 공직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자문내용에 근거할 때, 점자 인쇄시설 부족으로 인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보급의 곤란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설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시장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보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에 대한 「헌법」의 취지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와 더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한 것이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2010.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공보의 수량과 부피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규모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현행과 같이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제작하도록 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다. 소결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참정권 영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선거에 참여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 면수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공직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제공 의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게 동등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위 규범인 헌법의 정신과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1.

나. 보도 자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2층 | 전화02 2125 9973팩스 02 2125 9898 |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0년 11월 24일 | 담당: ,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전화 02-2125-9854)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

인권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그 면수 제한으로 인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못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바라며, 향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끝.

붙임.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결과〉(2010.5.20. ~ 2010.6.2.)

○ 2010. 6·2 지방선거 정당 및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93개)

		총 수	점자 공보물 제작 (인원, 정당수)	비율(%)
후보자		74	45	60.8
각 정당별 비례대표의원	○○도 의원	7	2	28.6
	○○시 의원	4	2	50
	○○시 의원	5	3	60
	○○시 북구의원	3	2	66.7
총 계		93	54	58

〈부산일보 보도(2010. 5. 28.)〉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560명 중 점자 선거 공보 제작자는 157명으로 전체의 28%

〈3〉 혁신 등 개선 사항

기 관	협조 요청 내용	개선 내용	비 고
A 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협조 요청	- 선거홍보사이트 향후 제작시 체크리스트 내용 참고하기로 함 - 5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	
	○ 점자선거공보 제작 독려 ○ 점자선거공보 제공 및 면수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선 계획	- ‘장애인 선거편의 지원방안’에 점자 선거공보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의 공직선거법 논의 시 제도 개선 방안 강구하겠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에서 관리·감독 ○ 자막 및 수화방송 관련 공직선거법 개선 계획 요청	- 자막·수화 방송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는 있으나,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음. 수화·자막 방송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음	
	○ 투표소 정당한 편의시설 구비 및 선거보조원 전문성 강화 계획 요청	-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적정할 해결 방안을 마련 하겠음 - 투표관리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B 위원회	○ 향후 선거 방송 주관 시 수화방송 또는 자막방송 100% 제공 요청 ○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의 정확성 및 완성도 제고 요청	- 방송사 사업자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방송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 요청 - 시청자 권익 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 시 증양 및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장애인방송이 적극 지원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예정	
방송사	○ 향후 선거 방송 주관 시 수화방송 또는 자막방송 100% 제공 요청 ○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의 정확성 및 완성도 제고 요청	- 지역국의 경우 현재 자막방송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수화방송만 실시. 빠른 시일 내에 지역국에서도 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 자막제작요원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및 자막제작시스템의 꾸준한 개선을 자막제작업체에 요청	

기 관	협조 요청 내용	개선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간 자막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는 방안 자막제작업체와 논의 - 선거방송의 경우 화면해설 방송구현이 어려우나 토론회 중 발언자가 바뀔 때마다 사회자가 발언자의 신상 정보를 환기시켜주는 방안 논의 - 기타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의 정당 및 공직선거후보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요청 ○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의 정당 및 공직선거후보자 점자선거공보 제작 독려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당 홈페이지 개편 시 적극 반영 - 향후 선거에서 당 후보자들에 점자선거공보 제작 적극 독려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웹 접근성 제공 방안' 자료 요청 후 홈페이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당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당 및 상설위원회 홈페이지 개선(2011년 상반기 예정인 '제2차 전당대회' 개최시까지 완료 노력) -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비용 관련 예산 계획 수립 시 점자공보물 제작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집행 할 것을 적극 독려 	

과제 2.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과제

-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나. 모니터링 대상

- 국·공립 박물관 26곳, 미술관 5곳, 공공도서관 84곳 등 총 115곳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웹 접근성)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보조인력·보조기기 제공 등
-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보조인력·보조기기 제공 등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7. 12. ~ 2010. 8. 30.
 -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지역 모니터링단 공동 모니터링 실시

라. 모니터링 참가자

- 총 88명(장애인 참가자 47.7%)

지역	장애유형				총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비 장애	
서울	3	3	9	12	27
부산	3	2	6	10	21
광주	-	-	9	10	19
대구	-	2	5	14	21
계	6	7	29	46	88

2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사전 교육

가. 사전교육 일시 및 장소

- 박물관 및 미술관 모니터링 사전교육
 - 서울 권역 : 2010. 7. 7(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7. 9(금). 17:30~19:00, 부산사직야구장
 - 대구 권역 : 2010. 7. 9(금). 15:00~17: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사전교육
 - 서울 권역 : 2010. 8. 5(목).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8. 11(수). 13:30~15:30,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광주 권역 : 2010. 8. 5(목). 14:00~16:00,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 권역 : 2010. 8. 13(금). 15:00~17:00, 대구인권사무소

나. 사전교육 주요 내용

- 모니터링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 선정
-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설명
- 각 조별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

3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시설 접근성	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직접 이용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
	화장실 접근 가능 여부	
	시설 내 이동권	
	각종 시설 접근성	
편의제공	보조인력 및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직접 이용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
장비 및 기기제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장애인보조 기기 제공 여부	직접 이용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
	도서관에서의 정보획득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제공 여부	
웹사이트 접근성	인식의 용이성	재택(홈페이지 방문)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4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가.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항, 제2항 제1호

2) 모니터링 대상 : 총 105개 웹 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 박물관 25곳,

- 서울 13곳, 부산 2곳, 광주 5곳, 대구 5곳
- 미술관 5곳
 - 서울 3곳, 부산 1곳, 광주 1곳
- 공공도서관 75곳
 - 서울 28곳, 부산 20곳, 광주 및 전북 18곳, 대구 9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 청각장애인이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 등이 원활히 제공 되지 않고 있음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새 창이 계속 반복되는 등 복잡한 웹 페이지의 경우 마우스를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
- 의미를 갖는 배경이미지에 대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나) 시사점

- 장애인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획득이 가능한 웹 사이트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가 선행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모든 웹 사이트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하고 사용하고 이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함.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문화·예술 시설(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의 웹 사이트들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총 106곳의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페이지 제목 제공’(73.1%)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3.6%), ‘새 창 안내’(19.3%), 시간제어 기능 제공’(21.2%) 항목 등에서 특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음
- 특히, 문화·예술 영역의 웹 사이트들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들에 비해 그 특성상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적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배경 이미지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웹 사이트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이 상당 부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 박물관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13	7	53,8	2	0	0	5	3	60	5	4	80	25	14	56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12	4	33,3	2	0	0	4	1	25	4	2	50	22	7	31,8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하고 있는가?	12	1	8,3	2	0	0	5	0	0	4	0	0	23	1	4,3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13	8	61,5	2	1	50	5	3	60	5	4	80	25	16	64
	2-2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가?	13	8	61,5	2	1	50	5	0	0	5	3	60	25	12	48
	2-3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가?	13	7	53,8	2	1	50	4	1	25	5	2	40	24	11	45,8
	2-4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10	2	20	1	0	0	2	1	50	4	0	0	17	3	17,6
	2-5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는가?	11	2	18,2	2	0	0	4	0	0	4	2	50	21	4	19,0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12	5	41,7	1	0	0	5	3	60	5	2	40	23	10	43,5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가?	13	9	69,2	2	0	0	5	3	60	5	5	100	25	17	68

○ 미술관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3	1	33.3	1	0	0	1	0	0	5	1	20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3	0	0	1	0	0	1	0	0	5	0	0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 (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 하고 있는가?	3	0	0	-	-	-	1	0	0	4	0	0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을 제공 하고 있는가?	3	1	33.3	1	0	0	1	0	0	5	1	20
	2-2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 할 수 있는가?	2	2	100	1	1	100	1	1	100	4	4	100
	2-3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 는가?	3	2	66.7	1	0	0	1	0	0	5	2	40
	2-4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2	0	0	1	0	0	1	0	0	4	0	0
	2-5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 에게 안내하는가?	3	0	0	1	0	0	1	0	0	5	0	0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3	1	33.3	1	0	0	1	1	100	5	2	40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 가?	3	3	100	1	1	100	1	1	100	5	5	100

○ 공공도서관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26	11	42,3	20	11	55	18	13	72,2	9	8	88,9	73	43	58,9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25	3	12	19	7	36,8	16	10	62,5	7	6	85,7	67	26	38,8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하고 있는가?	17	0	0	16	1	6,3	15	1	6,7	8	0	0	56	2	3,6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28	17	60,7	19	13	68,4	18	14	77,8	9	7	77,8	74	51	68,9
	2-2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가?	26	10	38,5	20	11	55	18	9	50	9	6	66,7	73	36	49,3
	2-3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가?	25	9	36	20	11	55	13	3	23,1	6	3	50	64	26	40,6
	2-4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16	3	18,8	17	8	47,1	10	0	0	2	0	0	45	11	24,4
	2-5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는가?	23	4	17,4	18	5	27,8	16	2	12,5	5	2	0	62	13	21,0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26	12	46,2	19	13	68,4	15	8	53,3	9	6	66,7	69	39	56,5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가?	28	18	64,3	20	15	75	17	14	82,4	9	7	77,8	74	54	73,0

○ 전체(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42	19	45.2	23	11	47.8	24	16	66.7	14	12	85.7	103	58	56.3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40	7	17.5	22	7	31.8	21	11	52.4	11	8	72.7	94	33	35.1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하고 있는가?	32	1	3.1	18	1	5.6	21	1	4.8	12	0	0	83	3	3.6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44	26	59.1	22	14	63.6	24	17	70.8	14	11	78.6	104	68	65.4
	2-2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가?	41	20	48.8	23	13	56.5	24	10	41.7	14	9	64.3	102	52	51.0
	2-3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가?	41	18	43.9	23	12	52.2	18	4	22.2	11	5	45.5	93	39	41.9
	2-4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28	5	17.9	19	8	42.1	13	1	7.7	6	0	0	66	14	21.2
	2-5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는가?	37	6	16.2	21	5	23.8	21	2	9.5	9	4	44.4	88	17	19.3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41	18	43.9	21	13	61.9	21	12	57.1	14	8	57.1	97	51	52.6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가?	44	30	68.2	23	16	69.6	23	18	78.3	14	12	85.7	104	76	73.1

나.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함.) 제7조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2) 모니터링 대상

- 국·공립 박물관(26곳) - 서울 14곳, 부산 2곳, 광주 5곳, 대구 5곳
- 국·공립 미술관(5곳) - 서울 3곳, 부산 1곳, 광주 1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 장애인주차장
 -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
 - 장애인주차구역이 주 출입문에서 먼 곳에 위치해 있음.
- 출입구
 - 음성안내 또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음.
 - 출입구 내부에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촉지하기가 어렵고, 안내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 출입구 점자유도블럭이 카펫 등으로 덮여 있음.
 - 출입문이 대부분 무거운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장애인 혼자서 문을 여닫기 힘들.
- 시설 내 이동권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지도 등이 없음.
 - 계단, 승강기 등 주요시설 앞에 점형블럭이 없음.
 - 계단 손잡이 층수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 없음.

- 위험지역에 대한 점자 및 음성안내가 없음.
 - 승강기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회전이 안 됨.
 - 조명이 어두워 저시력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어려움.
 - 전시물 등이 통로 및 복도에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됨.
- 화장실
- 남녀분리 되어 있지 않음.
 -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이용 어려움.
 - 세정장치가 변기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려움.
 - 잠금장치 이용 불편함.
 - 내부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음.
 -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 없음.
 - 화장실 앞에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 없음.
 - 비상호출 벨 없음.
- 보조인력 및 장비, 기기제공
- 작품설명에 대한 보조기구인 음성안내기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비장애인 혹은 학생을 위한 작품해설기기인 경우가 많음.
 - 리플릿, 안내자료 등에 대한 점자자료 없음.
 - 전시물에 대한 점자설명 혹은 음성안내 없음.
 - 전시물 설명판의 글씨가 너무 작아 저시력장애인 접근 어려움.
 - 보조인력 없으며, 직원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있음.
 - 수화통역사 없음.
- (나) 시사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보조인력 배치, 장비 및 기기제공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시설 접근성 및 편의제공(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인력 배치) 모니터링 결과, 특히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

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보행이나 관람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작품 감상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 번째, 시설 접근성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 출입구, 시설 내 이동권,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출입구〉

-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주차장 설치비율’은 74.1%였으며, 약 83.9%의 시설이 ‘주 출입구에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 놓았고, ‘출입문의 폭과 형태를 갖춰놓은 곳’은 67.7% 였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비율은 약 16.1%에 그쳤음.

〈시설 내 이동권〉

-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80%), ‘복도 및 통로에서의 휠체어 통행 가능성’(71.0%) 비율을 보았을 때 지체 장애인의 이동은 대체로 원활해 보임. 그러나 ‘주요시설 및 전시장 등의 음성안내장치 설치’(10%), ‘주요 시설 및 경계부분의 점형블럭 설치’(32.1%), ‘계단 손잡이에 층수·위치 점자표지판 부착’(18.5%) 비율 등을 살펴 볼 때 시각장애인의 단독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화장실〉

- 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약 85.2%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췄지만,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을 제대로 갖춘 시설은 66.7%,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한 비율은 55.6%에 그쳤음.
- 또한, 장애인화장실 내부 공간이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 만큼 넓게 설치된 곳은 약 38.5%에 그쳐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문이 아니거나, 사용 알람장치가 없는 경우, 문이 고장난 경우, 청소도구가 쌓여있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음.

- 두 번째, 보조기기·보조인력 등의 편의제공 영역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제공 비율을 나타냈음.

〈보조기기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자료 제공비율은 약 6.5%, 문화재 혹은 작품에 대한 점자 설명이나 음성안내표지판 설치비율은 약 9.7%, 작품의 감상을 돕기 위한 별도의 장비(음성안내기 등) 제공비율은 22.6%로 나타남.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보조를 위한 보조인력(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수화 통역사, 활동보조인 등) 배치율은 약 16.1%에 그쳤음. 이처럼 낮은 보조인력 배치율과 관련해서는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비롯한 그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원인으로 파악됨

(다)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 박물관, 미술관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1.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14	10	71.4	3	3	100	6	4	66.7	4	3	75	27	20	74.1	
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너비와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2	9	75	3	3	100	5	3	60	4	3	75	24	18	75	
2. 시설 주출입구의 턱 낮추기 및 경사로 설치 여부	17	14	82.4	3	2	66.7	6	5	83.3	5	5	100	31	26	83.9	
3.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폭과 형태가 고려되어 설치되었는지 여부	17	13	76.5	3	2	66.7	6	3	50	5	3	60	31	21	67.7	
4. 주출입구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7	3	17.6	3	0	0	6	1	16.7	5	1	20	31	5	16.1	
5. 매표소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에게 편리한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0	4	40	3	1	33.3	5	2	40	-	-	-	18	7	38.9	
6. 시설 내 층 이동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13	11	84.6	2	1	50	6	5	83.3	4	3	75	25	20	80	
7. 엘리베이터 내 음성안내 및 점자버튼 여부	12	6	50	1	0	0	5	3	60	3	3	100	21	12	57.1	
7-1. 엘리베이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2	10	83.3	1	0	0	5	4	80	3	3	100	21	17	81.0	
8. 시설 내 복도 및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17	11	64.7	3	2	66.7	6	5	83.3	5	4	80	31	22	71.0	
9. 계단 손잡이 양 끝에 충수·위치 등을 알리는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13	4	30.8	3	0	0	6	1	16.7	5	0	0	27	5	18.5	
10. 판매대, 음료대 등에 접근 가능 여부	10-1. 휠체어 이용시 접근 가능 여부	9	7	77.8	2	1	50	6	4	66.7	3	2	66.7	20	14	70
	10-2. 자동판매기, 자동음료대일 경우 조작버튼에 점자표시 여부	6	1	16.7	2	0	0	5	0	0	3	0	0	16	1	6.3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11. 시설 내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 시설 경계부분에 점형블럭 설치 여부	14	5	35.7	3	0	0	6	1	16.7	5	3	60	28	9	32.1
12. 주요시설 및 방 마다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16	2	12.5	3	0	0	6	0	0	5	1	20	30	3	10
13.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15	13	86.7	3	2	66.7	6	4	66.7	5	4	80	29	23	79.3
13-1.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여부	15	10	66.7	2	0	0	5	3	60	5	2	40	27	15	55.6
13-2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지 여부	14	8	57.1	2	0	0	5	1	20	5	4	80	26	13	50
13-3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여부	14	7	50	2	0	0	5	1	20	5	2	40	26	10	38.5
13-4 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 여부	15	9	60	2	1	50	5	3	60	5	5	100	27	18	66.7
14.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여부(사각장애인용 위한 보조인, 수화통역사, 활동보조인 등)	17	2	11.8	3	0	0	6	3	50	5	0	0	31	5	16.1
15. 리플릿, 안내자료 등에 대한 점자안내책자 비치 여부	17	1	5.9	3	0	0	6	0	0	5	1	20	31	2	6.5
16.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제공 여부	17	6	35.3	3	2	66.7	6	4	66.7	5	4	80	31	16	51.6
17. 문화재 혹은 작품에 대한 점자설명표지판 혹은 음성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17	2	11.8	3	0	0	6	0	0	5	1	20	31	3	9.7
17-1. 장애인 등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별도 장비 및 기기제공 여부	17	3	17.6	3	1	33.3	6	1	16.7	5	2	40	31	7	22.6

다. 공공도서관 접근성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제16조(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편의증진법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1, 별표 2.

2) 모니터링 대상

- 공공도서관(83곳)
 - 서울 30곳, 부산 19곳, 광주 21곳, 대구 13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 출입구

- 출입구 내부에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어 사용하기 불편함.
-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판 없음.
- 출입구에 점자유도블럭 위에 카펫 등을 올려 놓음.
- 출입문 경사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경사로에 자전거를 세워 놓음.

○ 시설 내 이동권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지도 등 없음.
- 열람실, 자료실, 검색실 등의 출입문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닫기에 불편함.
- 계단 손잡이 층수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 없음.
- 주요시설에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 없음.
- 승강기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며 음성지원 되지 않음.

○ 위생시설(화장실)

- 남녀분리 되어 있지 않음.
-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이용 어려움.
- 세정장치가 변기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려움.
- 잠금장치 이용 불편함.
- 내부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음.
-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 없음.
- 화장실 앞에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 없음.

○ 열람석

- 장애인열람석이 있으나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치워놓거나 비장애인이 이용함.

- 장비 및 기기제공
 - 독서확대기, 도서 검색 컴퓨터(시각장애인 사용가능) 등의 기기가 고장 나 있음.
 - 도서관 직원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점자안내책자 없음.
- 기타시설(음료대, 접수대 외)
 - 자판기, 음수대 등 점자표지판 미부착.
 - 자료검색대, 안내데스크 등이 높아 이용하기 어려움.

(나) 시사점

-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시설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제공 부분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여 정보검색, 자료검색, 열람 등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와 같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첫 번째, 시설 접근성의 경우 주 출입구, 시설 내 이동권,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 출입구〉

- ‘경사로 설치’(94.0%), ‘출입문의 폭과 형태가 적절한 지’(87.8%)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비율은 25.3%에 그쳤음.

〈시설 내 이동권〉

- ‘복도나 통로에서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가능여부’는 약 83.1%인데 반해 ‘열람 실이나 서가에서의 이동통로 확보’는 각각 51.3%, 50%에 그침. 이는 도서관 방문 사유가 열람 및 자료검색임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의 실질적인 도서관 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 출입구의 ‘각종 안내시설 및 열람실 등의 출입문에 대한 점자표지판 부착여부’(8.5%), ‘주요시설 및 방 앞 점형블록 설치여부’(25.3%),

‘계단 손잡이에 층수·위치 점자표지판 부착여부’(22.8%) 등의 준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장애인 화장실〉

- 모니터링 대상 도서관의 약 86.7%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췄지만, 남녀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약 54.8%에 그침.
- 또한, ‘출입문의 통행 가능 여부’와 ‘장애인화장실 내부 공간이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 만큼 넓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각각 53.4%와 46.6%, ‘대변기 양옆에 손잡이 설치 여부’는 86.5%, ‘한쪽 손잡이의 회전가능 여부’는 38.4%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화장실에서도 취약하여 ‘화장실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는 24.4%에 그쳤음
- 기타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문이 아니거나, 청소도구나 물건 등이 쌓여있거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이용 상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음.

- 두 번째로, 보조기기 등의 편의제공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제공 비율을 나타냈으나, ‘보조인력 배치 여부’ 항목에서는 61%로 비교적 높은 제공 비율을 나타냈음. 이는 유사 기관인 박물관·미술관의 보조인력 제공 비율이 16.1%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보조기기 제공〉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제공 여부’ 32.9%, ‘보청기 비치 여부’ 19.5%,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비치 여부’ 46.9%, ‘점자안내책자’ 17.3%, ‘도서검색 컴퓨터 접근 가능 여부’ 48.8%, ‘시각장애인 도서검색컴퓨터 제공여부’ 24.7%로 거의 모든 보조기기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보조를 위한 보조인력(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수화통역사, 활동보조인 등) 배치율은 약 61.0%임.

(나)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 공공도서관

점 검 사 항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1. 출입구	1-1. 시설 주출입구의 턱 낮추기 및 경사로 설치 여부	30	29	96.7	19	19	100	21	19	90.5	13	11	84.6	83	78	94.0
	1-2.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폭과 형태가 고려되어 설치되었는지 여부	30	26	86.7	19	17	89.5	20	19	95	13	10	76.9	82	72	87.8
	1-3. 주출입구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였는지 여부	30	18	60	19	12	63.2	21	18	85.7	13	9	69.2	83	57	68.7
	1-4. 주출입구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0	9	30	19	2	10.5	21	6	28.6	13	4	30.8	83	21	25.3
	1-5. 주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 여닫이 문, 미닫이문 중 하나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30	23	76.7	19	18	94.7	20	17	85	13	10	76.9	82	68	82.9
2. 위생 시설 (화장실)	2.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30	26	86.7	19	17	89.5	21	19	90.5	13	10	76.9	83	72	86.7
	2-1.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여부	27	15	55.6	16	10	62.5	19	9	47.4	11	6	54.5	73	40	54.8
	2-2.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지 여부	27	14	51.9	17	9	52.9	19	8	42.1	10	8	80	73	39	53.4
	2-3.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여부	27	13	48.1	17	7	41.2	19	6	31.6	10	8	80	73	34	46.6
	2-4. 화장실 앞 점형블록 설치 여부	28	12	42.9	18	12	66.7	21	9	42.9	13	7	53.8	80	40	50
	2-5. 화장실 출입구 벽면에 남녀 구별 가능한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27	8	29.6	18	6	33.3	21	3	14.3	12	2	16.7	78	19	24.4
	2-6. 세정장치 사용가능 여부(광감지식·누름버튼·레버식)	28	17	60.7	17	13	76.5	20	8	40	13	7	53.8	78	45	57.7
	2-7. 장애인용 대변기(양변기) 설치 여부	28	24	85.7	17	17	100	19	14	73.7	11	10	90.9	75	65	86.7
	2-8.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28	25	89.3	17	16	94.1	18	13	72.2	11	10	90.9	74	64	86.5
	2-9. 대변기 옆 수평손잡이 중 한쪽이 회전 가능한 지 여부	28	15	53.6	17	5	29.4	17	6	35.3	11	2	18.2	73	28	38.4
2-10.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29	10	34.5	17	6	35.3	20	6	30	13	7	53.8	79	29	36.7	
3. 시설 내 이동권	3-1. 시설 내 층 이동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엘리베이터(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	30	25	83.3	19	11	57.9	21	15	71.4	13	8	61.5	83	59	71.1
	3-2. 시설 내 복도 및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30	23	76.7	19	15	78.9	21	20	95.2	13	11	84.6	83	69	83.1

점 검 사 항	서울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3-3. 계단 측면에 손잡이 설치 유무	29	15	51.7	18	16	88.9	21	18	85.7	13	7	53.8	81	56	69.1
3-4. 계단 손잡이 양 끝에 층수·위치 등을 알리는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27	8	29.6	18	3	16.7	21	5	23.8	13	2	15.4	79	18	22.8
3-5. 계단의 시작 및 끝 지점 전면에 점형 블록 설치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	29	16	55.2	17	7	41.2	21	8	38.1	13	6	46.2	80	37	46.3
3-6. 시설 내 계단 등 시설 경계부분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14	46.7	18	7	38.9	21	8	38.1	13	6	46.2	82	35	42.7
3-7. 도서관 내부 시설 중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열람실 등의 출입문 벽면에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30	0	0	19	4	21.1	20	2	10	13	1	7.7	82	7	8.5
3-8. 주요시설 및 방 앞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3	10	19	6	31.6	21	8	38.1	13	4	30.8	83	21	25.3
3-9. 점자안내표지판 및 점자안내지도 유무	30	5	16.7	19	4	21.1	21	4	19.0	13	2	15.4	83	15	18.1
3-10. 열람석의 책상과 책상 사이 등의 휠체어 이동 통로 확보 여부	30	13	43.3	18	6	33.3	19	14	73.7	13	8	61.5	80	41	51.3
3-11. 서가의 휠체어 이동 통로 확보 여부	30	17	56.7	17	5	29.4	20	12	60	13	6	46.2	80	40	50
4. 열람석															
4-1. 장애인용 열람석 배치 여부	30	17	56.7	19	7	36.8	21	8	38.1	12	8	66.6	82	40	48.8
4-2. 장애인용 열람석(열람용 책상) 접근 여부	17	16	94.1	7	7	100	7	5	71.4	9	7	77.8	40	35	87.5
5. 음료대 및 접수대															
5-1. 음료대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9	20	69.0	19	11	57.9	20	15	75	11	5	45.5	79	51	64.6
5-2. 음료대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28	14	50	18	8	44.4	18	15	83.3	11	5	45.5	75	42	56
5-3. 사무용 카운터 접근 가능 여부(대출서비스 및 신분증 제작 등을 위한 카운터)	30	25	83.3	19	12	63.2	21	16	76.2	13	9	69.2	83	62	74.7
보조인력 배치															
6.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9	14	48.3	19	15	78.9	21	12	57.1	13	9	69.2	82	50	61.0
장비 및 기기 제공															
7-1. 장애인의 문화활동 보조를 위한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제공 여부	29	8	27.6	19	4	21.1	21	9	42.9	13	6	46.2	82	27	32.9
7-2. 보청기 비치 여부	29	7	24.1	19	2	10.5	21	4	19.0	13	3	23.1	82	16	19.5
7-3. 저시력용 독서기(시각장애인용독서확대기) 비치여부	29	14	48.3	18	6	33.3	21	10	47.6	13	8	61.5	81	38	46.9
7-4. 점자안내책자 비치 여부	29	8	27.6	18	2	11.1	21	3	14.3	13	1	7.7	81	14	17.3
7-5. 도서 검색을 위한 컴퓨터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9	16	55.2	19	6	31.6	21	10	47.6	13	8	61.5	82	40	48.8
7-6.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검색용 컴퓨터 제공 여부	29	11	37.9	18	1	5.6	21	2	9.5	13	6	46.2	81	20	24.7

5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모니터링 총평

- 정보 접근성(웹 사이트)
 -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웹사이트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은 취약하 였으며, 특히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 음성 등에 대한 대체수단(자막, 수화 등)’의 제공 비율은 3.6%, ‘배경이미지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비율은 35.1%로 매우 낮게 나타남. 문화 · 예술 영역의 홍보 특성상 이미지와 동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대체수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에서의 시설 접근성
 - 기본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의 시설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았음. 특히 다른 장애유형(지체 등)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및 이동권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 보다 주 출입구 부분의 ‘음성 및 기타 유도 안내시설’, ‘시설 내 계단 등의 경계부분 및 주요시설 앞의 점형 블록 설치’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화장실은 대 부분의 시설이 갖추고는 있으나,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 설치하였거나, 출입문 또는 내부공간을 좁게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에서의 편의 제공
 - 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보조기기의 제공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보조기구 제공’ 32.9%, ‘보청기 제공’ 19.5%, ‘독서확대기 제공’ 46.9%, ‘점자안내 책자 비치’ 17.3%,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도서검색용 컴퓨터 제공’이 24.7% 정도의 비율을 보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 · 예술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치되어 있는 장비 및 기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보조기기 비치에서 부터 관리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조인력의 배치 비율의 경우 박물관 · 미술관의 경우 16.1%, 공공도서관의 경우 61%의 비율을 보임.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에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바,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 가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의 시설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시설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보조기기 제공, 보조인력 배치 등) 준수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의 경우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법으로서, 동법 제24조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 및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충분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문화 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박물관 26곳, 미술관 5곳, 공공도서관 83곳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에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7월~8월에는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의 문화·예술 사업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0. 4. 11.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견표명 검토 중

○ 문화·예술 영역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관 관행 개선 의견표명을 검토 중에 있음

〈3〉 혁신 등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 고
	기 관	주요 내용	
<p>기관별 모니터링 결과 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 한 의견 및 향후 구체적 인 계획 등 제출 요청</p> <p>- 웹 사이트 : 대체 텍 스트, 동영상에 대한 대체수단(자막, 수화 등) 제공 등</p> <p>- 시설 접근성 : 점자안 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시각장애인을 위 한 안내 유도 장치, 점자안내책자 비치, 주요시설 점자블록 설 치, 작품 및 주요시설 에 대한 음성안내 확 대, 장애인 화장실 개 선 등</p> <p>- 편의 제공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장비 제공, 보조인력 배치 등</p>	A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측면 손잡이 설치 예정(2011년 상반기) - 열람실 등의 출입문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 (2011년 상반기) - 점자안내책자 추후 설치 검토 예정 	
	B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폭 등 보완 추진(2011년 리모델링 공사 시) - ‘촉지도 안내판’ 제작 설치 계획임(2011년도) - 화장실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시공완료 이며, 세 정장치 개선 예정 - 도서관 내부 시설 벽면 등에 ‘점자 안내판’, ‘점형블 록’ 등 설치 완료 - 휠체어 구입 예정(2010. 12.) - 점자 안내 리플릿 제작 예정(2010. 12.) - 휠체어 이용 가능한 검색용 컴퓨터 추가 설치 검토 - 시각장애인 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C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0. 11.) - 장애인 화장실 크기 등은 향후 증축시 반영, 대변기 손잡이는 보수 예정(2010. 11.) - 열람석 책상 사이 휠체어 이동 통로 확보 예정(2010. 11.) - 주요시설 점형블록 및 점자안내판 주착 예정(2010. 11.) - 신규 동영상 제작 시 자막 반영 예정 	
	D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출입구 부근 관련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사실 전달 - 저시력용 독서기 비치 	
<p>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의 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청</p> <p>- 웹 사이트 : 대체 텍스트, 동영상에 대한 대체수 단(자막, 수화 등) 제공 등</p>	E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출입구 부근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 정(2011년도 예산 반영) -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 세정장치, 손잡이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 추진 예정 - 시설 내 이동 관련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0. 11.) - 총별 안내판 등은 2011년 초 설치예정(2011년도 예산 반영) - 향후 홍보물 발간 시 점자안내책자 발간 참고 - 기타 홈페이지 개선(2010.11.12)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 고
	기 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접근성 :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유도 장치, 점자안내책자 비치, 주요시설 점자블럭 설치, 작품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음성안내 확대,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 편의 제공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장비 제공, 보조인력 배치 등 	F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지도 안내판’은 동사무소에서 설치, 내부 실별 점자안내판은 2011년 설치 예정 - 계단 측면 손잡이 설치 예정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점진 개선 예정 - 홈페이지는 2011년도 예산 반영하여 구축 예정 	
	G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건물 자체가 근대문화유산 등록 예정으로 제약은 있으나, 박물관 신축공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신축공사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5조 사항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겠음 - 홈페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개편안에 반영하여 개선 예정 	

※ 현재도 계속해서 개선 문의나 개선계획 문건이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음

과제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과제

-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 토론회, 공청회, 축제성 행사 등

나. 모니터링 대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항의 ‘공공 기관’¹⁾ 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행사 및 축제 : 39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 : 13개 등 총 52개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9. 13. ~ 2010. 10. 31.
- ※ 부산, 광주, 대구 인권사무소 동시 추진

1)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모니터링 참가자

○ 총 65 명(장애인 참가자 약 52.3 %)

지역	장애유형				총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비 장애	
서울	3	4	7	11	25
부산	-	-	10	6	16
광주	-	-	6	5	11
대구	-	1	3	9	13
계	3	5	26	31	65

2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사전 교육

가. 사전교육 일시 및 장소

- 서울 권역 : 2010. 9. 10(금).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부산 권역
 - 2010. 9. 9(목). 16:00~18: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2010. 9. 10(금). 10:00~12: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광주 권역 : 2010. 9. 16(목). 17:00~20: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대구 권역 : 2010. 9. 10(금). 16:00~18: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나. 사전교육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선정
-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설명
- 각 조별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

3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주요 내용

가. 행사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 단, 행사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된 경우에만 실시
- 접자로 된 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여부

나. 행사 참여 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요청 시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였는지 여부
-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전 요청 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대체 텍스트 등 필요한 지원

다. 행사 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 행사 장소의 출입 및 이동 접근성, 장애인 화장실 등 구비 여부

4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가. 행사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하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법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항 내지 제4항

2) 모니터링 대상

- 축제 및 행사 홈페이지 : 23곳
 - 서울·충북 8곳, 부산 : 4곳, 광주·전남 : 3곳, 대구 8곳
- 토론회 및 공청회 등 홈페이지 : 4곳
 - 서울 3곳, 부산 1곳
- 행사 리플릿 및 안내자료 제작 : 46곳
 - 서울·충북 17곳, 부산 10곳, 광주 6곳, 대구 13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 플래쉬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떨어짐.
- 스크린리더기로 접근 불가능한 웹사이트가 있음.
-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동영상에 자막 및 수화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음.
- 일부 메뉴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뉴를 탭키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움.

<점자 홍보물 제공 관련>

- 점자리플릿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경우 행사 참여 어려움.

(나) 시사점

-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 에서 가장 일반적인 홍보 수단인 행사 관련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행사 홈페이지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 총 24곳의 행사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50% 대의 낮은 준수율을 보였으며,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7.7%), ‘시간 제어 가능 여부’(33.3%), ‘새 창 제공에 대한 안내’(37.5) 항목 등에서는 특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9. 4. 11.부터 공공기관 등에게 장애인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홈

페이지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보임

- 한편, 홈페이지와 함께 행사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홍보 리플릿에 대한 점자제공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46개 행사 홍보 리플릿 가운데 점자 리플릿을 제공한 경우는 2개 행사로 8.7%에 불과 해 행사 홍보에 관한 장애인 편의제공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다)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및 충북			부산			광주 및 전남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인식의 용이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미)	1-1 이미지 등에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11	7	63.6	5	1	20	3	3	100	7	2	28.6	26	13	50
	1-2 배경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8	6	75	5	1	20	3	2	66.7	7	3	42.9	23	12	52.2
	1-3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하고 있는가?	4	0	0	4	0	0	3	1	33.3	5	0	0	16	1	6.3
2. 운영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미)	2-1 페이지를 나눠 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	11	6	54.5	5	1	20	3	3	100	8	5	62.5	27	15	55.6
	2-2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가?	11	7	63.6	5	0	0	3	2	66.7	8	6	75	27	15	55.6
	2-3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는가?	7	6	85.7	5	0	0	2	2	100	8	6	75	22	14	63.6
	2-4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시간제어가 가능한가?	2	1	5	5	1	20	-	-	-	5	1	20	12	3	25
	2-5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는가?	5	0	0	4	0	0	3	2	66.7	7	4	57.1	19	6	31.6
3.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3-1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는가?	9	8	88.9	4	0	0	3	3	100	8	6	75	24	17	70.8

체크리스트 내용		서울 및 충북			부산			광주 및 전남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미)	3-2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는가?	11	7	63.6	5	0	0	3	3	100	8	6	75	27	16	59.3
점자안내자료 제공 여부	4. 점자 리플릿 제공 여부	17	4	23.5	10	0	0	6	0	0	13	0	0	46	4	8.7

나. 행사 참여 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4항

2) 모니터링 대상 : 총 52곳

- 행사 및 축제 : 39곳
 - 서울·충북 9곳, 부산 9곳, 광주·전남 8곳, 대구 13곳
- 토론회 및 공청회 등 : 13곳
 - 서울 9곳, 부산 4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 행사개최 7일전 편의제공 요청 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
- 편의제공 요청 시 담당자가 귀찮게 여겨 불친절하게 답변하는 경우.
- 국제행사로 일반인 참여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참석 및 편의제공 거절하면서, 비장애인은 참석 허용하는 경우.
-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편의제공 요청 거절.
- 사전에 전화 요청 시에는 제공을 해 주겠다고 한 후 행사 당일 약속을 어겨 행사에 참여

할 수 없게 된 경우.

-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요청한 편의기기를 준비는 했으나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행사 진행요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안내 및 보조 방법을 모르는 경우.
- 행사 참여시 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많지 않음.
- 공연이나 토론회의 경우 장애인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맨 앞 좌석에서 볼 경우 너무 가까워 목이 아픔.
 - 사람이 많은 행사일 경우 사람들 틈에 끼여 관람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와 사람이 부딪쳐 다치거나 휠체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 행사 운영 주최 측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리프트 장착 차량이 없어 이용하지 못함.

(나) 주요사례

-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행사 참여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수화통역사, 보청기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이행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 38개의 행사 중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10개 행사로 26.3% 나타났으며,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요청시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공공기관은 전체 48개 기관 중 2개 기관으로 4.2%에 그쳤음.
-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한된 행사 관련 예산문제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점 검 사 항	서울 및 충북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1. 행사개최 7일전까지 요청 시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였는지 여부	16	1	6.3	11	0	0	8	1	12.5	13	0	0	48	2	4.2
2. 행사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14	7	50	10	7	70	8	6	75	11	7	63.6	43	27	62.8
3. 편의제공 요청 시 해당 편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행사 참여에 필요한 수단)	14	5	35.7	6	1	16.7	6	1	16.7	12	3	25	38	10	26.3

다. 행사 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1)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2) 모니터링 대상 : 총 52곳

- 행사 및 축제 : 39곳
 - 서울·충북 9곳, 부산 9곳, 광주·전남 8곳, 대구 13곳
- 토론회 및 공청회 외 : 13곳
 - 서울 9곳, 부산 4곳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요사례

- 야외 행사일 경우 잔디밭이나 자갈길, 배수로 등이 있어 휠체어 통행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떨어짐.

- 지하철,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기 어려운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실내 행사일 경우 통로가 좁아 휠체어 통행이 어려움.
- 화장실
 - 실외 행사일 경우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준비하는데 내부 공간 폭이 좁거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용 어려움.
 - 잠금장치 등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움.
 - 행사 규모가 큰 경우 행사 규모에 비해 장애인화장실이 부족하여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경우.
 -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하기 꺼려짐.
 - 문, 물 내리는 센서 등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있음.

(나) 시사점

- 장애인의 원활한 행사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사 정보 접근권과 마찬가지로 행사 장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 장소를 통해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판단되는 행사 건물의 경사로 설치 여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이동 가능 여부, 장애인 화장실 구비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대부분의 행사가 관련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장 건물의 경사로 설치 여부는 91.2%,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이동 가능 여부는 90%, 장애인 화장실 구비 여부는 84%로 나타남
- 다만, 실외 행사 시 행사장 접근이나 이동식 간이 화장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점 검 사 항	서울 및 충북			부산			광주 및 전북			대구			전체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전체 기관 수	만족 기관 수	이행 비율 (%)
1.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인지 여부	18	9	50	13	12	92.3	8	3	37.5	13	11	84.6	52	35	67.3
1-1.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사로 설치 여부	12	11	91.7	7	6	85.7	5	5	100	10	9	90	34	31	91.2
1-2.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행사장까지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행사장이 1층인 경우 제외)	8	7	87.5	3	3	100	3	3	100	6	5	83.3	20	18	90
2. 장애인용 화장실은 구비되었는지 여부	18	17	94.4	12	11	91.7	7	4	57.1	13	10	76.9	50	42	84

5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총평

□ 행사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 행사 정보 접근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행사 관련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및 행사 관련 홍보 리플릿에 대해 점자 자료 제공 여부등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관련 정보를 통해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행사 참여 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안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 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 행사 장소에 대한 장애인 시설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실외 행사의 경우 행사장 접근 및 이동, 간이 화장실 이용 등에 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 가

- 장애인이 공공기관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대한 정보접근성, 행사 장소에 대한 시설 접근성,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 유기적으로 제공 되어야 함.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며, 행사 개최 시 준비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기관의 행사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관련 부처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행사 관련 예산책정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입법, 사법, 행정 기관 82곳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각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된 공공기관에, 광역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위 공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 협조 요청 함.

제목 공공기관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에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7월~8월에는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 9~10월에는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귀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화 통역사(청각), 문자통역사(청각), 또는 보청기기(청각), 대체텍스트(시각) 등 장애인이 행사에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각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 공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광역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위 공문 내용이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결과. 끝.

2. 행사 매뉴얼 제작·배포 검토 중

- 공공기관 행사 개최 시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매뉴얼’ 제작·배포 검토 중에 있음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지역 과제 : 서울 권역

과제1. 고궁 및 공원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1.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고궁 및 공원에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5개 고궁
- 서울 시내 13개 공원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6. 19. ~ 2010. 6. 27.

라. 모니터링 참여자(→총 30명)

장애유형				총합
시각	청각	지체	해당없음	
4	3	9	14	30

2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공원·고궁까지의 이동 수단	1. 공원·고궁까지의 이동 교통수단	직접 이용(휠체어, 청각, 시각)
	2.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 (버스, 지하철)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 저상버스 이용할 경우 - 지하철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의 각종 편의시설 모니터링
공원·고궁의 접근권과 공원·고궁 내에 있는 시설의 접근권	1. 장애인용 주차장 및 화장실의 접근 가능 여부	직접 이용(휠체어, 청각, 시각)
	2. 공원·고궁 내에서 편의시설 접근성 여부(음료대, 매점 등)	직접 이용(휠체어, 청각, 시각)
	3. 공원·고궁의 각종 시설의 접근성 (문화재, 체험학습장 등)	직접 이용(휠체어, 청각, 시각)
	4. 공원·고궁의 안내지도 및 설명 자료의 접근성 여부(점자자료 비치, 안내원 배치 등)	직접 이용(청각, 시각)
	5. 공원·고궁 내에서 이동시 공원 보도 등의 장애인 통행 원활 여부	직접 이용(휠체어, 청각, 시각)
기 타	비상시 대피시설	

3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 결과

가. 고궁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총 5개 고궁 모니터링 실시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부칙 제1조) 및 시행령(별표1, 별표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별표1, 별표2)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이동권〉

- 고궁 내 또는 대중교통시설에서 고궁까지 점자 블록이 없는 경우
-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14개 출구 중 1곳에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
- 지하철역에서 고궁까지의 보도가 고르지 않고, 각종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
- 고궁 내 턱과 계단이 많고 대부분 흙이나 돌로 이루어져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궁내 배수호가 깊고 넓게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함

〈접근성〉

- 고궁 내 경사로가 낮고, 손잡이가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 휠체어 및 스쿠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먼지가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함
- 각종 안내 및 정보제공 미흡
 - 안내표지판 등에 점자설명 및 음성안내가 없음
 - 문화재 해설서, 안내자료 등에 대한 점자자료 또는 음성안내장치가 없음
 - 안내원이 수화를 모르거나, 수화통역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매표소, 음료대, 공중전화기 등 편의시설 접근성 미흡
 - 자판기 등의 위치가 높거나, 관련 기기에 점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공중전화기 내 공간이 너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
 - 휴지통, 음료대 등의 앞에 턱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움
 - 매표소에 경사로가 있으나 협소하고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음
 - 기념품 판매소 앞의 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움
- 화장실 시설 미흡
 -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관리소홀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지저분함
 -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편함

-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공간 확보가 어려움
- 화장실을 이용 중인 사람이 있는 지를 알려주는 알람장치가 없음
- 세정장치(화장실 변기의 물 내리는 버튼)의 이용이 불편함
- 남녀화장실 구분을 위한 점자가 없음
- 대변기 수평손잡이가 고정되어 이용이 불편함

나. 공원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서울시내 총 13개 주요 공원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 편의증진법(제7조, 부칙 제1조) 및 시행령(별표1, 별표2)
-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별표2)
- 「자연공원법」(제2조제10호) 및 그 시행령(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공원시설)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이동권〉

-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 버스역)에서 공원까지 대부분 점자블럭이 없음
-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시스템이 없음
- 공원 앞 버스정류장이 너무 협소하여, 저상버스 리프트 이용에 불편함
- 공원 내 이동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불편함
- 공사 중인 공원의 경우 휠체어 이동을 위한 고려가 없음
- 공원으로 가는 인도가 좁아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위험함

〈접근성〉

- 공원 내 안내시설 및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에 점자 및 음성안내가 없음
- 사고방지 안내판에도 점자 및 음성안내가 없어 위험함
- 공원 안내 리플릿 등에 점자가 없음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공원 내 호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전 장치가 없어 위험함

- 매표소, 음료대, 공중전화기 등 편의시설 접근성 미흡
 - 자판기 등의 위치가 높거나, 점자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공원 내 매점 앞의 턱 설치 등으로 접근이 어려움
- 공원 내 공연 무대에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공원 내 시설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접근이 안됨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아 불편한 경우, 또는 비장애인의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
- 화장실 시설 미흡
 -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관리소홀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지저분함
 -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편함
 -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공간 확보가 어려움
 - 화장실을 이용 중인 사람이 있는 지를 알려주는 알람장치가 없음
 - 세정장치(화장실 변기의 물 내리는 버튼)의 이용이 불편
 - 남녀화장실 구분을 위한 점자가 없음
 - 대변기 수평손잡이가 고정되어 이용이 불편

다. 고궁 및 공원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이 동 권	1. 교통수단	지하철: 18 버스:3	이 동 권	4.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 설치여부	27.8	
	버 스 및 정 류 장	2-1. 안내시설(안내방송 및 문자안내 외)		100	접 근 권 (고 궁 및 공 원)	5.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2-2. 내부시설(휠체어 승강설비, 좌석)	100	6.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여부		40
		2-3. 기타시설(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 가능표시)	100	7. 공원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 등 설치여부		5.6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지하철역	2-4.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50	접근권 (고궁 및 공원)	8. 공원시설 접근 가능하게 하는 보도	29.4	
	2-5. 기타시설(대기시설)	50		9. 장애인화장실 유무	100	
	3-1. 매개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입구 외)	75.0		9-1. 남녀 분리 설치 여부	40	
	3-2. 내부시설 (통로, 경사로, 승강기)	94.1		9-2. 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73.3	
	3-3. 위생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93.3		10.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사용가능 여부	17.6	
	3-4. 안내시설(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외)	81.3		11. 공원 내 각종시설 접근 여부	31.3	
	3-5. 기타시설(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외)	93.4		12. 각종 문화재 설명을 위한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0	
				13. 홍보 및 안내자료 등에 대한 접근성	5.6	

4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 결과 총평

가. 고궁 및 공원의 이동권 모니터링 분석

- 고궁 및 공원(이하 '고궁 등' 이라 함)근처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은 대체적으로 장애인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매개 시설(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등) 설치 75%, 내부시설(통로, 경사로, 승강기 등) 설치 94.1%, 기타시설(매표소, 개찰구 등) 설치 93.4%
- 고궁 등에 접근을 위한 저상버스의 안내시설(안내방송 및 문자안내), 내부시설(휠체어 승강 설비, 좌석), 기타시설(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 가능 표시)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구

비되어 있음

- 그러나, 교통시설(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고궁 등으로 이동을 돕는 안내 유도시설에 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고궁 등으로 연결하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비율은 각각 27.8%, 50%로 나타났으며, 연결 보도가 고르지 못하거나 폭이 좁아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들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었음

나. 고궁과 공원 및 관련 시설의 접근성 모니터링 분석

-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고궁 등을 출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내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관련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음

〈시설 접근성〉

- 모니터링 대상 시설의 83.3%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춰 고궁 등의 출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장애인 통행이 원활하도록 공원 내 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29.4%, 공원 내 각종 편의 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31.3%로 나오는 등 장애인들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40%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을 100% 갖췄지만,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을 갖춘 시설은 73.3%,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비율은 40%에 그쳤음
- 또한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공간이 좁은 경우, 사용 알림장치가 없는 경우, 점자 안내장치가 없는 경우, 문이 고장 난 경우, 청소도구가 쌓여있는 경우 등 장애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음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 고궁 등의 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판을 설치한 비율은 전체 18개 대상 시설 중 1곳으로 5.6% 수준임

〈홍보 및 안내자료 접근성〉

- 고궁 내 각종 문화재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는 1곳도 없었으며, 고궁 등의 홍보 및 안내 자료에 점자나 음성 안내를 제공한 곳은 18개 대상 시설 중 1곳으로 5.6%를 나타냄

다. 총 평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 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첫째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고궁 등으로의 이동편의성, 고궁 및 공원 내 이동권 및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통행정기관(교통사업자 포함) 및 고궁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편의증진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고궁 등이 장애인들의 시설접근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물을 이용 하는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궁 등을 접근 및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에 대해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원, 고궁 등 20개 기관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 6월에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및 서울시내 고궁 및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7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혁신 등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 고
	기 관	주요 내용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청	A 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앞 입간판 설치, 장애인 관람객 수요에 따라 전용주차장 확장 운영 가능 -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예산확보 후) - 각종 편의시설물 접근성 개선 보완 및 음료수 2개소 신설 - 점자블록 대신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GPS 방식 음성안내장치 설치됨). 문화재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통행 불편 최소화 추진 - 기념품판매소 앞 턱 정비 및 음료수대 주변 정비 - 화장실 점형블록 및 일람장치 설치 	
	B 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안전바 시정 검토 - 화장실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은 건물 신축 시 반영 예정 - 점자블록, 안내도우미, 문화재 및 안내 책자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안내는 문화재청 차원 검토 필요 	
	C 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표소 앞 점자블록은 예산 확보후 초지 예정. 그러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은 문화재청 차원 지원 필요 - 경사로 나무 빠진 곳 보수 조치 -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는 리모델링 시 고려. 잠자안내판은 설치 예정 - 음료대, 공중전화기, 자판기 앞 경사로 설치 예정 - 안내도우미, 문화재 및 안내 책자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안내는 문화재청 차원 검토 필요 - 휠체어 및 스쿠터 전담 관리 인력 지정하여 관리 	
	D 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도우미, 문화재 및 안내 책자에 대한 점자 및 음성 안내는 문화재청 차원 검토 필요 - D궁 건물은 경사로 설치 추진 - 장애인 화장실 공간 확보, 비상버튼, 알림판 등은 2010년도 리모델링 시 반영 추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 고
	기 관	주요 내용	
	E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 확보 - 경사로 추가 설치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 - 2010년도 중 장애인 화장실 1개 개선 계획 - 음대로 및 자판기 발판 마련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의 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 획 등 제출 요청	F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비상호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성안내 및 보조인력 등 제공 - 공원 전체지도 및 안내판 등은 공원 안내체계 시스템 재구성 시 종합적인 검토 예정 	
	G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보도 점자블럭 등은 향후 정비계획 시 반영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또는 수화통역사는 어려움 발생 시 장애인복지관에 협조 요청 예정 - 남녀화장실 구별할 수 있는 점자블럭 설치 예정 	
	H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완료되어 통해 지장은 없음 - 점자블럭 및 음료대 접근, 화장실 내부 공간 확보 등은 계획된 리모델링 공사 시 개선 예정 - 매점 앞 턱 자체 정비 예정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의 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 획 등 제출 요청	I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유도블록 미비한 곳은 향후 유지보수 공사시 반영 - ○○ 순환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휠체어 이동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확보 -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추진중 - 점자음성 인식 안내판 16개소 설치 됨 	
	J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후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 - 총 13개 화장실 중 2개소만이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 향후 리모델링 시 개선 예정 - 수화통역사 등의 보조인력 제공은 인력수급 및 예산확보 가능 여부 등 고려 후 시행 검토 - 예산 확보후 점자식 안내판 및 시설 설명판 설치 예정 - 음료자판기 앞 경사로 설치 완료 - J공원 주차장은 2011년 위탁업체 재계약시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 예정 	

※ 현재도 계속해서 개선 문의나 개선계획 문건이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음

〈지역 과제 : 부산 권역〉

과제 1.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2.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3.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4.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과제 1.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시티투어버스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 시티투어버스 5개 노선 중 4개 노선(80%)
- ○○ 시티투어버스 1개 노선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6. 28. ~ 2010. 7. 9. (2주간)

라. 모니터링 참여자(총 11명, 장애인8명, 72.7%참여)

장애유형				총합
청각	지체	뇌병변	비 장애	
1	6	1	3	11

2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정보접근권	1.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시티투어버시아용의 접근권	2. 승차권 구입방법 편의제공 유무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3. 버스노선 및 관광지안내 방법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4. 승.하차의 용이성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5. 경유지 안내방법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대중교통과의 연계	6. 버스정류장과 주변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유무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경사로 등)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기 타	요금할인제 건의 등	

3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결과

가.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A 시티투어버스
 - 운임 : 성인 10,000원/단체 10인 이상 8,000원/ 소인·청소년 5,000원
- B 시티투어버스
 - 운임 : 성인 10,000원/단체 10인 이상 8,000원/ 소인·청소년 5,000원
- C 시티투어버스
 - 운임 : 성인 10,000원/단체 10인 이상 10,000원/ 소인·청소년 5,000원
- D 시티투어버스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별표1,

별표2)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부칙 제1조) 및 시행령(별표1, 별표2)(제7조, 제8조) 및 시행령(제4조, 별표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및 시행령(제14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
-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승차권 구매 시〉

- 현장구매 시 카드결제가 불가능함.
- 전화예약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유형 불가능함.

〈시티버스 내 편의시설〉

- 시티투어버스(이하 버스) 내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운전기사 외 안내직원 없음(운전 중 경유지 등에 대한 문의할 수 있으나 위험함).
- 버스내부 손잡이가 한쪽만 설치됨.
- 2층 버스의 경우 2층 통로계단 경사가 가파르거나 단의 높이가 높음.
- 버스 노선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한 해설서, 안내자료 등에 대한 점자자료 또는 음성안내 장치가 없음.
- 점자안내판 없음.
- 노선 및 주변관광지를 안내해 주는 모니터 고장, 시스템 작동안함.
- 경유지 안내 음성이 주변 소음으로 인해 명확하게 청취가 불가능함.

〈기타〉

-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경사로, 핸드 레일 등 없음
-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할인 미적용.

나. 시티투어버스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비율(%)
정보접근권	1.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18.2%
접근권	2. 승차권 구입방법 편의제공 유무 - 승차권 구입처 등	0%
	3. 버스 노선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한 안내 - 점자안내문, 음성인식바코드 삽입 등	9.1%
	4. 승.하차의 용이성	9.1%
	5. 경유지에 대한 안내방법	40%
이동권	6. 버스 정류장과 주변 관광지 연계 방법 -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및 음성서비스 제공 여부 - 유효 통로설치 여부(경사로, 손잡이 등)	0%

4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결과 총평

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 1) 편리하다 18.2%로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 홍보용으로 제작된 플래시의 경우 대체 텍스트, 수화통역, 자막 등 제공 안됨
 - 나) 글자 확대 및 음성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다)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또는 설명글 없음
 - 라) 깜박이는 콘텐츠에 대한 조절(회피) 기능 없음

나. 승차권 구입방법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1) 온라인예매 가능하나 시각장애인 접근 불가, 버스 내 운전기사로부터 구입 가능
 - 가) 현장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음, 카드결제 안됨
 - 나) 온라인 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
 - 다) 전화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각 및 언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어려움

다. 버스 내 편의제공

- 1) 버스노선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한 점자 안내문, 음성인식바코드 제공 0%
 - 가) 영어, 일어, 한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은 있으나 점자 안내문 없음
 - 나) 한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에 음성인식바코드 제공 안함
 - 다) 버스 내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버스 노선 및 인근 관광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있었음
- 2) 폭이 좁은 출입문 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매우 어려움
 - 가) 휠체어석 전혀 없음
 - 나) 좌석 간의 폭이 매우 좁고, 2층 버스의 경우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해야하고 계단 손잡이가 한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매우 어려움
 - 다) 출발 전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탑승은 가능하다 그 외 보조인력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3) 시티버스 경유지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해 안내 미비 등
 - 가) 경유지에 대한 안내방법은 내부에는 화면으로 설명이 되고, 기사가 마이크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2층(오픈)에는 화면도 보이지 않고 주변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음,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화면을 켜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나) 버스가 운행 중일 때 기사에게 가서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1층 실내 복도가 좁고 버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기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어려움
 - 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버스 운행 시간으로 인해 긴 시간을 정류소에 정차할 수 없어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및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경유지(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아야 함
 - 라) 안내원이 노선 안내와 경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연계 관광지에서는 별도의 안내원이 따로 배치된 경우도 있었으나, 수화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4) 버스 정류장과 주변 관광지 연계 대체로 미비
 - 가) 점형블록 미설치, 정류장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및 음성서비스 미제공, 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유효 통로(경사로, 손잡이 등)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나) 하차 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있음

5) 기타 시티버스이용 관련 불편사항

- 가) 장애인 및 경로할인에 대한 부분이 없는 시티투어 상품의 경우 없어 할인제도 도입이 요구됨
- 나)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좌석 등받이 조절이 가능했으면 함

나. 총 평

- 1) 시티투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 버스나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버스는 없는 상황이므로,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
- 2) 버스 경유지 및 인근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달방법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지방자치단체 2곳

제목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결과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부터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광역시 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접근 등에 대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보건소에서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편의제공, ○○광역시 및 ○○광역시 시티투어버스 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3. 귀 기관에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이 자유롭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시티투어버스). 끝.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과제 2.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보건소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보건소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보 및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부산광역시 8개 보건소
-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
- 경상남도 양산시 1개 보건지소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6. 25. ~ 2010. 9. 27. (14주간)

라. 모니터링 참여자(21명, 장애인 66.7%참여)

시각	장애유형					총합
	지적	청각	지체	뇌병변	비 장애	
1	1	1	7	4	7	21

2 보건소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보건소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권	1.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 재택모니터링(개인접속)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 및 비장애인 4~5명으로 팀구성, 팀원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 이용
	2. 보건소이용 안내 시각장애인 리플릿 구비 유무	
	3.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유무	
보건소 이용의 접근권	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접근로 설치 유무	
	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무	
	6.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유무	
	7.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설치 유무	
	8.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설치유무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핸드레일 등)	
	9. 장애인화장실 설치 유무(남녀분리, 편의시설)	

3 보건소 모니터링 결과

가. 보건소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가) 부산광역시 8개 보건소
- 나)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
- 다) 경상남도 양산시 1개 보건지소

2) 관련 법령

-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3조)
- 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시행령(제3조, 제4조, 별표1, 별표2)
-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3조) 및 시행령(제14조)

라)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마)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가) 보건소 이용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웹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검색이 거의 불가능함
- 점자안내도, 점자안내판, 점자안내책자 등이 전혀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나) 보건소 시설 접근권

〈주출입구 경사로 및 주출입문〉

- 경사로 통로가 있으나 회전이 힘들고 협소함,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도 있었으나 중간에 참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 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기가 어려움
- 경사로를 통해 진입한 후 다시 계단을 이용해야 출입이 가능한 곳 있음
- 경사로 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힘들
- 계단 한편에 철재로 만들어진 경사로는 있었으나 경사로 진입부분에 턱이 2개 존재하고, 손잡이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함
- 출입문의 폭이 넓어 전동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후 공간이 적어 회전은 불가능함
-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전원을 꺼놓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됨.
- 여닫이문의 경우 한쪽을 열리지 않게 고정(일명 고정문)시켜 놓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힘들게 들어감.

〈유도블럭 및 내부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

- 점형블록의 폭이 좁고 색상이 연하여 구분이 힘들, 바닥재질과 동일한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거나 회색유도블럭도 있어 바닥색과 구분이 안됨
- 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 중간에서 끊어져 버림
- 도로와 연결된 경우에도 도로경계석이 맞닿은 부분에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 주출입구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블록위에 화분 등이 놓여 있어 통행에 지장초래

- 출입구에서 안내데스크까지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전혀 설치 되지 않은 곳도 있음
- 건물 내 이동을 위한 핸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설치된 벽면에 의자 등이 놓여 있어 이용이 불가능함
- 계단에 미끄럼 방지턱이 없고, 계단 시작을 알리는 유도블럭, 점자 안내표시 등이 없음
- 승강기가 전층을 운행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 있음
- 승강기 내부에 이용을 위한 점자가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높이의 버튼에만 점자안내문이 부착된 경우도 있음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구분 안되어 있음
- 장애인용 화장실 입구에 휴지통 또는 세탁기 등이 놓여 있어 휠체어장애인 들어가기 힘들
- 화장실 입구통로와 내부의 공간이 좁아 회전하기가 힘들고 잠금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됨
- 2010년 6월 11일에 화장실 상태점검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청소 도구가 화장실 내부에 놓여있어 사용이 불가능함
- 2층 장애인용 화장실문이 열리지 않음 역지로 열어보니 2005년까지 점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후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음. 문짝도 어긋나 있었음

〈주차장〉

- 주차장에서 보건소입구까지의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함
- 장애인용 주차구역이 구비되어 있지만 폭이 많이 좁았고, 바닥면이 기울어져 위험한 곳 있음
- 당초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에 표식을 페인트로 지우고 보건소 차량을 주차함
- 장애인 주차구역이 3곳 있었으나 주출입구와 먼 곳에 위치함
-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선이 지워졌거나 바닥 색깔과 구분이 안됨

나. 보건소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비율(%)	
보건소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접근권	1.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쉽다	5.2
		보통	47.4
		어렵다	47.4
	2. 보건소이용 안내 시각장애인 리플릿 구비 유무	0	
	3.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유무	7.1	
보건소이용의 접근권	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접근로 설치 유무(경사로 등)	100	
	5. 장애인용 주차구역 설치 유무	100	
	6.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유무	71.4	
	7.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설치 유무	92.9	
	8.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설치유무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핸드레일 등)	35.7	
	9.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남녀분리, 편의시설 설치)	42.9	

4 보건소 모니터링 결과 총평

- 부산. 경남지역(자치구단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균 100명~600명으로, 1일 평균 보건소 이용자수는 1~2명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 경우 16개 보건소 중 8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울산지역은 5개 보건소 모두를 모니터링 함.

가. 보건소 이용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

- 1) 웹을 통한 정보접근의 경우 5.2% 편리, 정보접근과 관련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없음
 - 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은 쉽다 5.2%, 보통 47.4%, 어렵다 47.4%
 - 나)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이용 안내책자 등은 구비된 곳 없음
 - 다) 화상전화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영도구보건소) 있었으나 직원들이 사용방법을 몰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나. 보건소 시설 접근권

- 1) 경사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0% 설치, 실제 이용에는 불편한 편임
 - 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핸드레일(손잡이)이 없거나 경사각이 1/12 기준보다 큰 경우가 있었으며, 경사각 기준에 맞춰 길게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중간부분에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경사각 0°인 참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힘들
 - 나) 울산광역시외의 경우 모든 보건소의 장애인주차구역이 3곳 이상이었으나 부산광역시의 8개 중 5개의 보건소가 1곳만을 지정 운영함
- 2) 대체로 장애인 출입이 편리한 주출입구 설치
 - 가)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동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건소 71.4%
 - 나)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여닫이문의 경우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통행에 어려움 있음
- 3)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승강기 설치율 92.9%로 편리
 - 가) ○○보건소 지소의 경우 단층 구조로 접근성이 매우 좋음
 - 나) 일부 보건소의 경우 3층 건물로 승강기가 없어 2, 3층 시설이용이 매우 어려움
- 4) 보건소 14곳 중 9개소 유도블럭, 점자안내문, 핸드레일 등 전혀 없음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설치율 35.7%
- 5) 장애인화장실 남녀분리 42.9%,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 맞는 화장실은 한곳도 없음.
 - 가) 일부 보건소의 경우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없음
 - 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한 출입문 구조, 출입문 유효폭,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손잡이, 소변기손잡이, 세면대, 세정장치, 안내장치, 비상호출장치, 바닥재질 및 마감 등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음.

다. 총 평

-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 및 장애물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 이용 안내가 필요하며, 설치된 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의 경우 시급히 개선될 사항으로 나타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 3곳

제목 보건소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부터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광역시 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접근 등에 대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보건소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편의제공, ○○광역시 및 ○○광역시 시티투어버스 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3. 귀 기관에 ‘보건소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이 자유롭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보건소) 1부. 끝.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과제 3.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부산시내 8개 공원
- 부산시내 3개 해수욕장(개장 전후 비교 2곳)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6. 28 ~ 2010. 8. 3 (6주간)

라. 모니터링 참여자(총 18명, 장애인 11명 61%참여)

장애유형						총합
시각	청각	지적	지체(휠체어)	뇌병변(휠체어)	해당없음	
1	1	1	6(2)	2(2)	7	18

2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공원, 해수욕장 접근권 및 공원, 해수욕장 내부 시설 이용 접근권	1. 공원, 해수욕장의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2. 공원, 해수욕장 내부의 보도 이용 가능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3. 시각장애인의 공원, 해수욕장 접근가능 여부 (접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 접근 가능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시각)
	5. 장애인용 화장실의 내부 사용 가능 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시각)
	6.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분리 설치 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시각)
	7. 공원, 해수욕장내에서의 편의시설 접근성 여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시각)
이동권	8. 장애인용 주차구역 접근 가능 여부	직접 이용(지체, 뇌병변, 시각)
	9. 교통수단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접근 여부 (교통시설주변의 점형블록)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10. 휠체어장애인이 공원, 해수욕장 접근 가능하게 하는 보도 이용여부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11.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지하철	대중교통의 각종 편의시설 모니터
	12.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저상버스	대중교통의 각종 편의시설 모니터
기타	13. 서비스 이용 관련 불편사항	직접 이용 후 소감

3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결과

가. 모니터링 주제

1) 모니터링 대상

- 부산시내 8개 공원
- 부산시내 3개 해수욕장(개장 전후 비교 2곳)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부칙 제1조) 및 시행령(별표1, 별표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별표1, 별표2)
- 「자연공원법」(제2조제10호) 및 그 시행령(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공원시설)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가) 공원 접근권(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주차장, 주출입구, 이동통로 등)

- 대중교통시설(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에서 공원까지 유도블록이 없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깨져있거나, 블록 위에 각종물건이 적재되어 있음.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과 먼 거리에 위치함.
- 공원까지 바닥이 고르게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바닥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휠체어가 한쪽으로 기울어 짐.
- 장애인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규격 미달로 이용에 불편함.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곳도 있음.
- 공원으로 가는 인도가 좁아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위험함.
-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중 공원 근처에 정차하는 버스 없음
- 출입구까지의 진입경사가 가파르거나, 공원내부는 계단으로 되어있는 상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 따로 있으나 안내판이 없음.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가파른 경사로로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에 위험성이 있음.
- 공원 내 턱과 계단이 많고 바닥이 흙이나 돌로 이루어져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공원 내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나) 공원 내 편의시설 접근권

- 공원 내 안내시설 및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에 점자 및 음성안내장치가 없음.
- 사고방지 안내판에도 점자 및 음성안내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 자판기 버튼 등의 위치가 높거나, 제품명 및 가격에 대한 점자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움.
- 공원 내 매점 턱으로 접근이 어려움.
- 공원내부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가파르고 곡선으로 꼬여있는 길이며, 낭떠러지가 있어서 안전손잡이 미설치로 위험함.
-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관리소홀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지저분함.
- 장애인 화장실 문이 열달이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 있음.
- 남녀화장실 구분표식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이용 시 불편함.
- 대변기의 수평손잡이가 고정되어 이용이 불편함.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물내리는 버튼이 없어 불편함(화장실).

다) 해수욕장 접근권(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주차장, 주출입구, 이동통로 등)

- 대중교통인 저상버스 운행시간(배차)이 제한적이며, 지하철역과도 대체로 거리가 멀.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저상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도보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역 없음.
- 장애인용 주차구역이 없거나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됨.
-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주차장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음.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유도블록이 없어 진입로를 찾기가 매우 힘들. 유도블록의 색이 희미하여 저시력 장애인이 구분하기 힘들.
- 어떤 해수욕장 주출입구에는 백사장까지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장 후 유도블록 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관광 안내소부근의 인도위에 샤워실로 연결되는 물관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으로 보호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도블록 위에 설치되었음.
- 해수욕장 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으나 경사로 핸드레일이 불결함.
- 백사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손잡이가 없음.
-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때문에 전동휠체어 진입이 어려움.

라)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접근권

-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용 안내 문구없고, 편의시설도 없음.
- 점자안내판 없음. 그 외 시설물 망원경, 포토존, 전망대 등이 성인의 평균키에 맞춰져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화장실 내 다용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구가 좁아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어려움.
- 장애인 유영구역은 버스정류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 힘들.
- 장애인 유영구역의 표지판이 휠체어에 앉아서 읽기에는 높은 곳에 위치함.
- 장애인유영구역을 설치한 해수욕장의 경우 이동통로는 만들었으나 유영구역이 가로, 세로 각 30m로 비장애인 유영구역보다 좁고, 물의 깊이도 1m 안팎으로 수영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경사로의 경사각이 시설기준보다 컸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이 없거나 '장애우'라고 표기되어 있음. 장애인 화장실은 있었으나 남녀구별이 안 된 곳이 있고, 화장실로 유도하는 블록을 따라가지 화단이 나왔음.
- 화장실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음.
-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다는 안내판은 있었으나 실제로 화장실건물은 없었음.

나. 공원 및 해수욕장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공원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해수욕장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접근권	1.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유무	75.0	접근권	1.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유무	63.6
	2. 공원 내부의 보도 이용가능	58.3		2. 해수욕장 내부의 보도 이용가능	72.7
	3. 공원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여부	25.0		3. 해수욕장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여부	18.2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구 접근 가능	83.3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30.0
	5. 장애인용 화장실의 내부 사용 가능	50.0		5. 장애인용 화장실의 내부 사용 가능 여부	30.0
	6.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분리설치	100		6.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분리설치	10.0
	7.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사용가능	16.7		7.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사용가능	27.3
이동권	8. 장애인용 주차구역 접근 가능	16.7	이동권	8. 장애인용 주차구역 접근 가능	30.0
	9. 교통수단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접근여부(점형블록)	16.7		9. 교통수단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접근 여부(점형블록)	27.3

공원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해수욕장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10. 휠체어장애인 공원 주변 접근 가능하게 하는 보도	8.3		10. 휠체어장애인 해수욕장 주변 접근 가능하게 하는 보도	18.2
	11.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지하철	41.7		11.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지하철	27.3
	12.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저상버스	16.7		12. 교통수단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저상버스	90.9

4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결과 총평

가. 공원 이용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 분석

- 1) 75% 이상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었으나 공원 내 통행과 관련하여 보도블록 설치는 58.3%로 나타났고,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고르지 못하거나 폭이 좁아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공원내 접근이 불편함.
- 2)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가능 16.7%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에 대체로 접근이 어려움.
-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은 25%
- 4)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구분은 100%
 - 출입문이 협소하여 출입이 어려웠다는 16.7%로 나타났고, 전동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하는 항목은 50%에 그침.
 - 화장실 외부에 점자안내판이 없거나, 화장실 문이 고장나있거나, 청소도구가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5) 모니터링 대상 8곳 중 5곳은 장애인주차장이 없거나 규격 미달
 -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폭, 길이, 위치에 대해서 휠체어장애인이 승·하차가 편리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16.7%만이 그렇다고 답변.

- 일부 공원의 경우 장애인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6) 공원 주변 교통시설(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과 연결되는 보도상태에서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이동가능한지는 8.3%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도 블록 설치된 곳은 16.7%로 나타남.
- 7) 공원과 인접한 지하철역의 승강기 설치 41.7%, 저상버스 정차는 16.7%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해수욕장 및 주변 시설의 모니터링 분석

- 1) 해수욕장 출입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폭과 형태가 설치된 경우는 63.6%, 장애인 통행이 원활하도록 공원 내 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72.7%,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판매기, 음료대)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27.3%로 집계되어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판을 설치한 경우는 18.2%로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관련 편의시설 없음.
- 3) 장애인용 화장실은 출입문이 충분히 넓은지는 30% , 화장실내부가 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히 넓은지는 30%, 남녀구분은 1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선 관리부실로 나타남.
- 4)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폭, 길이, 위치에 대해서 휠체어장애인이 승·하차 하기에 편리한지에 대한 여부는 30%로 나타나,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5) 해수욕장 주변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보도에서 휠체어장애인이 이동가능한지는 18.2%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유도블럭 설치되었는지는 27.3%로 나타남.
- 6)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 교통시설 연결되는 보도에서 유도블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도블록이 설치된 해수욕장도 유도블록의 방향이 화단과 연결되는 등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유도블럭 위에 장애물(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음
- 7) 해수욕장 주변 지하철역 내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27.3%, 저상버스가 정차는 90.9%로 나타났음.

8) 해수욕장 개장 전, 후 편의시설 비교

- Y : 정당한 편의제공, N : 정당한 편의 미제공

해수 욕장	개장 여부	주출 입구	통행로	점자 및 음성 안내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 시설	이동권				
					출입문	화장실 내부	남녀 별도		장애 인용 주차 구역	점형 블록	휠체 어이 동	지하 철승 강기	저상 버스
A 해수 욕장	전	N	Y	N	N	N	N	Y	Y	N	N	N	Y
	후	N	N	N	N	N	N	Y	Y	N	N	N	Y
B 해수 욕장	전	Y	Y	N	N	N	N	해당 없음	해당 없음	N	N	해당 없음	Y
	후	Y	Y	N	N	N	N	해당 없음	해당 없음	N	N	해당 없음	Y

다. 총 평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첫째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 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3)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공원에서는 지하철역·버스정류장의 이동접근성이,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및 주변 편의시설에서의 접근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정당한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원, 해수욕장 등 관련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지방자치단체 4곳

제목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결과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부터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광역시 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접근 등에 대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보건소에서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편의제공, ○○광역시 및 ○○광역시 시티투어버스 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 ○○지역 소재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3. 귀 기관에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의 장애인 접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이 자유롭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과제 4.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장애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하는 20개 사업장(‘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중 2011년 4월 적용 예정인 사업장)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9. 27. ~ 2010. 10. 22. (4주간)

라. 모니터링 참여자(총 19명, 장애인 10명 52.6%참여)

장애유형				총합
시각	지체	뇌병변 (휠체어)	비 장애	
1	5	4(3)	9	19

2 장애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모집 채용 과정	1-1. 모집자료, 채용광고 등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		담당자 설문지 면접
	1-2. 지원서, 기타 양식은 장애인이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게 형식 제공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1-3. 모집 장소의 장애인 접근성.		담당자 설문지 면접
채용 이후	가. 사업장의 접근성	가-1 사업장의 주출입구 단차 유무	직접이용
		가-2 장애인 근로자가 출입구 이용가능 유무	직접이용
		가-3 턱낮추기, 경사로, 승강기, 안전손잡이등의 필요한 수단 제공유무.	직접이용
		가-4 화장실 편의시설	직접이용
	나. 사업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	나-1 장애인 근로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유무. (접근성이 보장된 인트라넷 등)	담당자 설문지 면접
		나-2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지침서나 작업 지시서 제공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나-3 정보접근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등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유무.(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등)	담당자 설문지 면접
		나-4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유무.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	담당자 설문지 면접
		나-5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 개조유무.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담당자 설문지 면접
	다. 교육, 훈련	다-1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교육 및 훈련가능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다-2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교재(점자자료등)가 제공, 낭독자 및 수화통역사등 보조인력의 제공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다-3 교육에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유무.(높낮이 조절용 책상, 화면확대프로그램 등)	담당자 설문지 면접
		다-4 교육훈련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라. 시험 평가	라-1 시험 및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등)이나 보조인력 제공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라-2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시험 및 평가시간 연장가능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분 류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방법
		라-3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 변경)을 운용한 동등한 경쟁가능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마. 직무나 정책의 조정	마-1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를 위한 작업 일정, 근로시간을 변경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마-2 정당한 편의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 방침을 조정유무.		담당자 설문지 면접
바. 기타(장애인차별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담당자 설문지 면접

3 장애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결과

가. 장애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장애인고용 공단에서 추천하는 20개 사업장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차별금지)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내지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1항내지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및 별표 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가) 모집·채용 과정

- 업무내용상을 사유로 편의시설 설치할 의사가 없거나,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음.
(산재장애인만 고용한 사업장)

나) 사업장의 접근성

- 주 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계단과 턱을 지나야 가능함.
- 식당(3층)과 휴게실(2층)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함.
- 사무실(3층), 작업장(2층)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외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 짐을 나르는 리프트만 있음.
- 5층 건물인데 승강기 없음. 복도가 매우 좁아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식당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쪽으로 경사로가 있으나 경사각이 심하고 핸드레일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음.
- 유도블록이 있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고 방향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음.
- 유도블록의 색이 회색이라서 바닥과 구분이 안되는 경우 있고, 깨진 유도블록 있음.
-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거나 일반화장실에 마크만 부착해 놓은 상태라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함.
-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거나 규격이 맞지 않아 이용이 불편함.

다) 사업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

-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의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답답을 느낀다고 함.(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음).

라)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인식개선교육

-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장애인에 대해 인식(장애의 유형, 에티켓 등)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사업장 담당자는 시종일관 그곳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공고를 하고, 채용 후에도 똑같이 대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시작할 수 없는데도 같은 잣대로 대하는게 오히려 차별이라고 말함. 사업주 및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나 기본적인 에티켓이 전혀 없이 그냥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는게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 사업장에서 담당자와 면담 중 “정상인”이라는 표현자체를 요청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마) 기타

-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들 중 몇은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세금 감면 등의 경우에만 장애인임을 밝히고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직접 말하거나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식개선 필요.)

나. 장애인고용 사업장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분 류	모니터링 내용		이행비율(%)	
모집, 채용 과정	1-1. 모집자료, 채용광고 등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		57.1	64.3 (9/12)
	1-2. 지원서, 기타 양식은 장애인이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게 형식 제공유무.			42.9 (6/11)
	1-3. 모집 장소의 장애인 접근성.			64.3 (9/12)
채용 이후	가. 사업장의 접근성	가-1 사업장의 주출입구 단차 유무	37.5	42.9 (6/12)
		가-2 장애인 근로자가 출입구 이용가능 유무		50 (7/11)
		가-3 턱받추기, 경사로, 승강기, 안전손잡이등의 필요한 수단 제공유무.		21.4 (3/12)
		가-4 화장실 편의시설		35.7 (5/13)
	나. 사업장내에서의 의사 소통 및 업무수행	나-1 장애인 근로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유무. (접근성이 보장된 인트라넷 등)	10	35.7 (5/9)
		나-2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지침서나 작업 지시서 제공유무.		7.1 (1/8)
		나-3 정보접근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등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유무.(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등)		0 (0/4)
		나-4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유무. (낭독자, 수화통역자)		0 (0/5)
		나-5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 개조유무.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7.1 (1/6)
	다. 교육, 훈련	다-1 접근가능한 장소에서 교육 및 훈련가능유무.	17.9	50 (7/11)
		다-2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교재(점자자료 등)가 제공, 낭독자 및 수화통역사 등 보조인력의 제공유무.		0 (0/5)
		다-3 교육에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유무.(높낮이 조절용 책상, 화면확대 프로그램 등)		7.1 (1/6)
		다-4 교육훈련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유무.		14.3 (2/6)

분 류	모니터링 내용		이행비율(%)	
라. 시험 평가	라-1 시험 및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 등)이나 보조인력 제공유무.	2.4	7.1 (1/5)	0 (0/4)
	라-2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시험 및 평가시간 연장가능유무.			
	라-3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 변경)을 운용한 동등한 경쟁가능유무.			
마. 직무나 정책의 조정	마-1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를 위한 작업일정, 근로시간을 변경유무.	53.6	50 (7/9)	57.1 (8/9)
	마-2 정당한 편의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 방침을 조정유무.			
바. 기타(장애인차별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21.4 (3/14)	

4 장애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결과 총평

- ‘장애인차별금지법 11조 3항’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2011년 4월을 기점으로 확대 적용됨.
- 장애인고용사업장 모니터링은 내년에 확대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현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추천한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나 사업장의 거부, 사업장 영업형태(용역직원 파견업체 등) 등의 이유로 16개 사업장을 방문 14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가. 모집, 채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모집에 관한 자료, 채용광고 등은 64.3%, 지원서 작성 등의 용이성은 42.9%가 장애인 이용 가능이란 답변을 함. 점자안내문 및 지원서 등은 별도로 구비해 두지 않았으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대체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웹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집, 채용정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응시접수장소 및 채용장소 접근성에 대해서는 64.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음. 그러나 ○

○○ 사업장의 경우 위 3개항목(정보제공, 지원서 등, 채용시험장소) 모두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나. 사업장(사무실, 작업장, 식당 및 휴게실 등의 편의공간) 접근성 결과

- 주출입구의 경우 장애인 이동이 편리한 곳은 42.9%, 기타 작업장 및 사무실 등의 출입문에 대한 접근성은 50%, 건물 내 이동 편의를 위한 턱제거, 경사로, 승강기,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곳은 21.4%로 집계되어 외부에서 사업장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자유롭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구조로 인해 모니터링단원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도 힘이 듭.
- 화장실의 경우 입구 턱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화장실 내부의 편의시설도 35.7%만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단만으로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고, 장애인 이동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편의제공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이들 사업장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근무하지 않음.

다. 사업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 장애인 근로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접근성이 보장된 인트라넷 등)이 된 경우는 35.7%이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정보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지침서나 작업지시서 제공,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작업 수행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7.1%만이 제공 또는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작업지시서와 작업대 등을 모두 제공하는 사업장도 1곳이 있었던 반면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도 5곳이나 있었음
- 정보접근 및 업무수행을 위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기계 또는 낭독자, 수화통역사, 지적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러한 보조기구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증의 시각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장애인(청각장애인 제외) 근로자가 채용된 곳이 없다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됨.
-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이 1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사소통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증지체(4-6급), 산재

(절단)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보조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해됨.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구 및 수화통역사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임.

라. 교육 및 훈련, 시험 및 평가를 위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교육장 운영은 50%로 과반수였으나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교재(점자자료 등)를 제공하고, 낭독자 및 수화통역사 등의 보조인력 배치하는 사업장은 0%로 전혀 없었음. 교육에 필요한 보조수단(높낮이 조절용 책상, 화면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은 7.1%, 위탁 교육훈련 시 정당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14.3%로 나타남.
- 시험 및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 등) 및 보조인력 제공하는 기업이 1곳 있었으나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평가시간 및 평가방식을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자체 시험 및 평가가 없거나 경비와 같은 단순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장이었음.

마. 직무나 정책 조정

- 장애인 근로자의 재할, 기능평가, 치료를 위한 작업일정,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있는 사업장은 50%, 정당한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침을 조정 변경한 곳은 57.1%로 과반수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교육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21.4%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업장의 경우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힘.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애유형 및 그에 따른 소통방법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 총 평

- 고용영역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다만,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및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함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사항은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할 단계적 범위(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기존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사업장의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아니고 단순 임차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비를 소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변경 외의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도 떨어졌으며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일부 담당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근로능력의 부족, 배려와 시혜의 일방적 대상)을 가진 사업장도 있었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지사)에 송부 예정
2. 12월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논의 예정.

〈지역 과제 : 광주 권역〉

과제 1.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1.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지자체 청사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지자체 청사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대상

- 1) 광주광역시 5개 구청
- 2) 전주시 2개 구청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7. 10. ~ 2010. 7. 20.

라. 모니터링 참여자 : 총 18명(장애인 50% 참여)

장애 유형		총 합
지 체	비장애	
9 명	9 명	18 명

2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대 상	방 법
청사 부근에서 주출입구 까지 접근성	1. 주출입구 부근 편의 시설. - 접근로의 기울기 및 너비, 평평함, 바닥표면의 재질, 2cm이하 덮개 설치 여부 - 경사로 기울기, 양쪽 손잡이가 연속적 설치여부 - 점형 블록, 선형 블록 설치 및 적절성 - 점자, 촉지도식, 음성인식 안내판 설치 여부	
장애인전용 주차장	2.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크기 및 수, 접근성	
출입구, 복도, 계단	3.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 유·무,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	1. 4인 또는 5인 1모듈 구성. 2. 각 모듈별 조장 선정 후 자체적인 모니터링 일정 및 역할 조정 - 사진 찍기, 시범 모델, 관련기관 공무원 전담, 규격 체크 등 3. 모니터링 기간 각 지자체 구청에 공문 사전발송 및 담당자 협의 4. 체크리스트 모니터링단 카페 공지 5. 모니터링시 모니터링을 나왔음을 해당 기관에 공지 후 활동 6. 활동 후 개인별 체크리스트와 보고서 제출
	4.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 가능한 복도 너비, 장애물 유·무, 미끄러움 정도	
	5. 계단의 손잡이 부분 양끝 굴절 부분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2층 이상시 접근성 및 편의시설	6. 2층 이상시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설치 유·무 및 수 - 점자 버튼(높이 포함), 숫자점멸기, 음성 층안내 작동 및 설치 유·무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틈 정도, 승강장 황색 점형 블록 설치 유·무	
	7. 장애인 화장실 설치 유·무 - 출입문, 통로 넓이, 대변기간 전동휠체어 회전 가능 정도의 넓이,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대변기 휠체어 접근성, 사용 여부 알 수 있는 잠금장치 등 -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여부, 영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여부 - 점자판 설치 여부	
비상시 대비책	8. 점멸 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비상벨 주변 설치 여부	
민원, 업무 해결의 편의성	9. 민원실, 안내데스크 편의시설 점검 - 접수대, 작업대가 휠체어 이용시 높이 및 무릎 발판이 들어가는지 점검	

분 류	대 상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업무안내 책자 및 점자 접수 양식지 비치 -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및 독서도 비치 - 수동휠체어 대여 및 도우미 도움 가능 여부 	
기 타	10. 자동판매기 접근성 및 사용가능 여부	

3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가. 지자체 청사(구청)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대상

-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4개 구청
- 전주시 2개 구청

2)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 11조 내지 제12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7조 및 시행령 별표 1, 2

3) 모니터링 주요 사례

이 동 권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록, 선형블록이 깨져 있거나 수가 부족하고 바닥과 색깔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없거나 경사로가 가파르고 좌우측 손잡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경사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 승강기에서 휠체어 회전할 정도의 폭과 넓이가 충분치 않고 음성 층안내, 점멸기 미설치
접 근 권	각종 편의 제공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미설치 또는 철거 · 계단 시작, 끝 부분에 층이나 위치를 알리는 점자판표지판이 없음 ·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나 점자업무안내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 · 점멸식 비상경보등이 미설치 또는 확인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 ·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관리부서가 아닌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경우 · 주출입구 경사로 입구에 민원인이 주차한 경우
화 장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하는 통로가 비좁아 휠체어 회전이 어려운 경우 ·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칸이 있으나 청소도구 보관과 같은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 ·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 · 남녀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 공간이 협소해 칸 안에서 휠체어 회전이 어렵거나 변기로 옮겨 앉기 불편하며 문을 닫기 힘든 경우 · 거울이 휠체어를 탄 채 보기 힘들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경우 ·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잠금장치 미설치 · 물을 내리는 버튼이나 레버가 변기 뒤편에만 위치하여 불편 · 화장실을 알 수 있는 점자안내판이 없음 · 회전수평 손잡이가 고정되어있는 경우 많음

4)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이동권 (출입구)	1. 주출입구 설치된 접근로 넓이, 접근성	48	(승강기)	20. 계단 손잡이, 승강기 버튼, 점자표지판	71
	2. 보도, 접근로의 바닥표면 재질	76		21.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24
	3. 덮개 설치, 격자 구멍, 접근로와의 높이차.	67	접근권 (화장실)	22.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접근성	19
접근권 (주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81		23.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칸 넓이	19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근성	95		24. 수직, 수평 손잡이 설치	29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95		25. 대변기 옆쪽 휠체어 접근성	24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	95	26.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여부 표시 및 잠금 기능	52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이동권 (출입구·복도·계단)	8. 주출입구 통로 높이 차이	67		27. 화장실 세면대 휠체어 사용 적절성	52
	9. 8번에 유(有)일 때 대체 이동로 설치	81		28.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여부	71
	10. 출입구의 넓이 및 편의성	62		29. 영유아용 거치대 시설 구비 여부	24
	11. 출입문 손잡이 휠체어 이용자 사용 가능 높이	95	이동권 (안내·비상시)	30. 점자 블록, 선형 블록 설치, 적절성 여부	52
	12. 복도 넓이, 바닥 표면	100		31. 적절한 점형블록 설치	62
	13. 복도 보행 장애물 무(無)	95		32.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38
	14. 2층 이상시 이동 수단 설치	95		33. 음성안내장치 설치	0
	15. 경사로 기울기, 양쪽 손잡이 설치	43	34. 점멸형태 비상 경보등 설치 및 위치	19	
	16. 승강기 전층 운행	67	접근권 (기타)	35. 접수대의 휠체어 이용 적절성	67
	17. 승강자과 승강기 바닥 틈 3cm 이하	95		36. 음료 자판기 접근성	71
	18. 승강기 스위치 높이 적절성	86		37. 음료 자판기 휠체어 장애인 사용 적절성	95
	19. 승강기 내부 편의시설	29			

4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총평 및 활용방안

가.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의 이동권 모니터링 분석

- 지자체 청사의 경우 내부보다 주출입구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편으로 나타남.
 - 매개 시설(접근로, 주 출입구 등) 설치 64%, 내부시설(복도, 경사로, 승강기 등) 설치 72%
- 내부시설에서 이동시에 통로 높이차이가 없거나 있어도 대체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사무실 등의 출입구의 넓이가 좁은 편으로 나타남.
- 점자블록, 선형블록 설치 수가 부족하며 바닥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점형블록이 많았음.

- 점자블록, 선형블록 설치 적절성 52%, 적절한 점형블록 설치 62%
-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편
 - 건물 주출입구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는 38%로 매우 저조 했으며 음성안내 장치 설치는 전무. 점자업무안내지 미비치

나.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의 접근성 모니터링 분석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대체적으로 청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규격, 면수도 준수하는 편
- 장애인전용화장실 매우 떨어지며 설치된 편의시설의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고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넓이나 폭이 좁은 편임.
 -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접근성 19%, 수직, 수평손잡이 설치 29%, 대변기 옆쪽 접근성 24%, 표시 및 잠금기능(사용여부) 52%, 세면대 휠체어 사용 적절성 52%, 영유아용 거치대 시설 구비 여부 24%
- 민원을 볼 때 접수대의 높이가 다소 높은 편임.
 - 접수대의 휠체어 이용 적절성 67%

다. 기 타

-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
 - 점멸형태 비상 경보등 설치 및 위치 19%
- 음료 자판기 대한 접근성이나 사용 적절성은 양호한편.
 - 음료자판기 접근성 71%, 음료 자판기 휠체어 장애인 사용 적절성 95%

5 총 평

-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청사의 주출입구에 대한 이동 편의성이 떨어지며 청사 내 이동권 및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대체로 규격과 위치 선정 등의 상태가 양호하나 장애인 화장실의 관리 상태는 여러 곳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지방자치단체 6곳

제목 지자체 청사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 6월에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7월~8월에는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성, 그리고 지자체 청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였으며 10월에는 지역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나타난 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이 자유롭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지자체 청사). 끝.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지역 과제 : 대구 권역〉

과제 1. 대구 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2.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 〈3〉 회신 등 개선 사항

과제 1. 대구 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공원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대구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나. 모니터링 대상

- 대구시내 13개 공원
- 대구시내 2개 유원지 및 수목원

다. 모니터링 기간

- 2010. 6. 28(월) ~ 2010. 7. 8(목)

라. 모니터링 참여자(총 21명)

장애유형				총합
뇌병변	청각	지체	해당없음	
2	2	3	14	21

2 공원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공원 접근권과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의 접근권	1. 장애인 출입 가능한 접근로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2.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보도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3. 공원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4. 공원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접근성	직접 이용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5. 공원내에서 편의시설 접근성 여부 (음료대, 매점, 각종시설 등)	직접 이용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6. 공원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접근성	직접 이용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7. 공원 산책로 등 전체적인 공원 이용 편의성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공원까지의 이동권	공원 인근 대중교통시설에서 공원까지 장애인 이동성	직접 이동하며 모니터링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3 공원 모니터링 결과

가. 모니터링 대상

- 대구시내 총 15개 공원 - 유원지, 수목원 포함

나.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2호)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제11조, 제12조)
- 장애인편의증진법(제7조, 부칙 제1조) 및 시행령(별표1, 별표2)
-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0호) 및 시행령(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공원시설)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접근성〉

- 공원입구 또는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유도 신호장치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공원 내 산책로의 이동의 어려움은 적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공원 내 시설의 접근 시 턱이 높거나 입구의 폭이 좁은 경우가 있음.
- 음수대, 매점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성 부족
 - 자판기 지폐투입구와 버튼의 위치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
 - 공원 내 매점 입구에 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움.
 - 음수대 사방에 턱이 있고, 높이가 높아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미흡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거나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경우
 - 관리 소홀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 화장실 시설 미흡
 -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청소도구함 등을 적재한 경우
 -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자동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편함
 -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가 어려움
 - 입구가 좁거나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경우

〈주변 교통〉

- 저상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움
-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음.
- 공원으로 가는 인도의 점자블럭이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인도 위에 주차금지용 블라드가 놓여 있어 이동하기가 어려움.

다. 공원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내용		이행 비율 (%)
공원 내 이동	1. 주출입구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	66.7
	2. 공원 보도가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너비, 기울기, 바닥의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60.0
	3. 공원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유도신호장치 설치여부	0.0
화장실	4.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의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	46.7
	5.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가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40.0
	6. 장애인용 대변기 남녀구분 설치 여부	40.0
편의 시설	7.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	33.3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접근성 여부	46.7
교통 시설	9. 공원과 주변 교통시설 보도에 점자블럭 설치여부	28.6
	10. 주변 교통시설에서 공원까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 가능 여부	40.0
	11. 공원 주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40.0
	12. 공원 주변 저상버스 운행여부	85.7

4 공원 모니터링 결과 총평 및 활용방안

가. 공원의 주변교통 및 이동권 모니터링 분석

- 대구지역 지하철은 총 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공원 주변으로 운행하지 않거나 공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였음.
 -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40.0%
- 공원접근이 가능한 버스노선은 대체적으로 충분히 운행되고 있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운행비율은 높았으나 매일 운행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실제 이용은 적었음.
 - 공원 주변 저상버스 운행 여부 85.7%

- 교통시설 이용 후 공원까지의 보도는 점자블럭이 일부만 짧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점자블럭 위에 주차 금지용 블라드를 세워 놓은 사례도 있었음.
 -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공원까지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여부 23.1%

나. 공원 주출입구 및 관련 시설의 이동권 모니터링 분석

- 공원 출입구로 휠체어 사용자등 장애인의 대부분 이동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일부 공원의 경우 보도의 재질이 고르지 않거나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장치의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 주출입구의 장애인이 접근하기 충분한 폭과 형태를 갖춘 곳은 66.7%로 대상 공원에 따라 가파른 경사로가 있거나, 턱이 있는 곳도 있었음.
 - 공원 내 보도의 휠체어 사용자 통행의 어려움이 없는 곳은 60%였으며, 공원 보도에 점자블럭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도의 재질이 고르지 못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이 불편한 곳도 있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 장치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공원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

다. 공원 내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 모니터링 분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았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남녀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도구들을 두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 하는 공간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음.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휠체어가 들어가기 충분한 출입문을 확보한 곳과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갖춘 곳은 각 46.7%, 40% 정도 었음.
 - 장애인용 대변기 남녀 구분 설치 여부 40% 었음.

<장애인 주차공간>

-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공원의 경우 주차장이 없거나, 협소한 경우가 많았다.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한 곳은 46.7%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더라도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였음.

〈그 밖의 편의시설〉

- 공원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음료대는 사방으로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 밖에 공원내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입구는 좁고 턱이 있거나, 바닥의 재질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접근의 어려움이 있었음.

-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 접근 가능 여부 33.3%

라. 총평 및 활용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첫째 시설물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 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공원 내 이동권 및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공원까지 이동편의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원 및 교통 등 관련 행정기관(교통사업자 포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편의증진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물을 이용 하는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원으로 접근 및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 광역시(공원녹지과)

제목 '대구시내 공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 6~7월에 대구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고 해당 구청 및 공원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사무소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7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 대구시내 공원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과제 2.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결과 보고

1 모니터링 개요

가. 모니터링 주제

-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및 편의제공

나.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다. 모니터링 대상

- 대 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대구시 문화예술시설 5곳

라. 모니터링 기간

- 2010. 7. 19(월) ~ 2010. 8. 6(금)

마. 모니터링 참여자(총 9명)

장애유형		총합
뇌병변	해당없음	
2	7	9

2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방법

분 류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시설 접근 및 이동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접근성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주출입구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대표소 접근의 용이성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음료대, 자동판매기 장애인 접근성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시설 내 장애인 이동성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편의제공	장애인 화장실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문화 시설 관람을 위한 보조기구 및 보조 인력 제공 여부	직접 이용(휠체어포함)
웹사이트 접근성	인식의 용이성	홈페이지 방문
	운영의 용이성	홈페이지 방문
	이행의 용이성	홈페이지 방문

3 모니터링 결과

가. 주출입구 접근권

- 문화·예술 시설 내 장애인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었으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주출입구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음
- 주출입구는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폭의 경사로가 설치되었으나, 자동문이 아닌 미닫이문만 설치된 곳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 혼자 입구를 드나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나. 문화시설 내 이동권

- 매표소 창구가 높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고, 일부 문화 시설의 경우 공연이 있을 시에는 장애인용 매표소를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음.
- 시각장애이용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음.
- 문화·예술 시설 내 엘리베이터는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내에 음성안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점자버튼은 설치되어 있었고, 버튼의 위치도 휠체어 이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음.

다. 화장실 등 기타 편의제공

〈장애인 화장실〉

-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비교적 확보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나 소방호스 등 물품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었음.

〈기타 편의제공〉

- 음료 자판기가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음.
- 대부분의 문화·예술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수화통역사, 활동보조인 등)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 직원들이 시설 내 이동과 안내를 돕고 있음.
- 모니터링 대상 시설 중 한곳만 보이스리더기와 보청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공연이 있을 때 수화통역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음

라. 웹사이트 접근성

-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 웹사이트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은 좋았으나,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배경 이미지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4 모니터링 총평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보조인력 배치, 장비 및 기기 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시설 접근성 및 편의제공(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인력배치) 모니터링 결과, 특히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이나 관람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작품 감상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시설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 설치하였거나, 내부공간이 좁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었음. 또한 화장실 내부에 청소도구 물품 등을 놓아두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보조기기의 제공과 보조인력의 배치가 대부분 안 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관련 부처에 구체적 기분 마련을 건의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 문화·예술 시설의 웹 사이트들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들에 비해 그 특성상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적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2〉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 수신자 : ○○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제목 '대구시 문화예술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결과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10. 7~8월에 대구시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고 해당 구청 및 문화예술시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 등을 사무소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문화·예술 사업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0. 4. 11.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 대구시 문화예술시설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3〉 혁신 등 개선 사항

※ 2010. 12. 31. 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 조치 내용을 받아 관리할 예정임

※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업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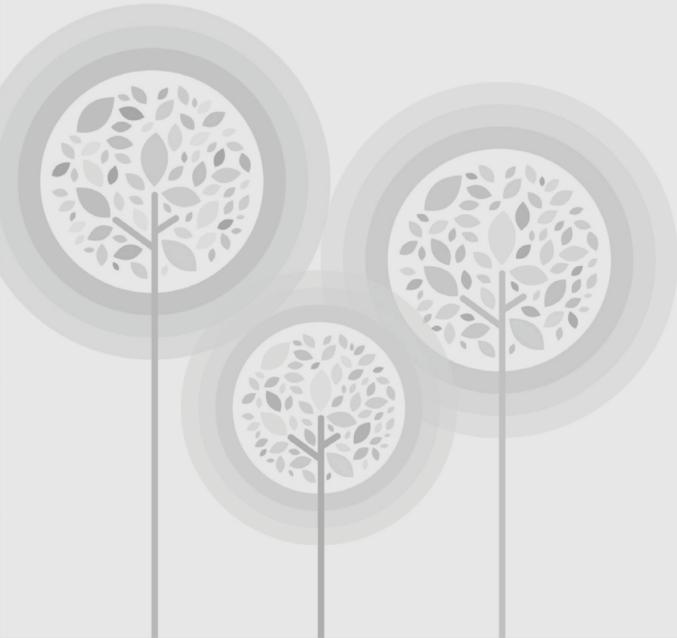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사진 1. 시설 접근성 관련 사진



▲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차량 주차.



▲ 출입문 점자블럭을 덮고 있는 매트.



▲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



▲ 복잡한 점자블럭.



▲ 경사로의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위험.



▲ 손잡이 옆에 화분을 놓아 손잡이 이용불가.



▲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음.



▲ 경사로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



▲ 도서관 정문 앞 배수로 사이가 넓어 휠체어 바퀴가 빠질 우려 있음.



▲ 블라드로 인해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며, 시각장애인은 부딪힐 우려가 있음.

사진 2. 시설 내 이동권 관련 사진



▲ 계단 점형 블록 미설치.



▲ 계단 점형 블록 미설치.



▲ 계단 난간에 층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미부착.



▲ 2층 전시실로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또한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도 무게제한으로 인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이용 불가능.



▲ 엘리베이터 버튼 높이가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사용 어려움.



▲ 엘리베이터 버튼 높이가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사용 어려움.



▲ 음수대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사용 어려움.



▲ 안내데스크가 높음.



▲ 안내데스크가 높음.

사진 3. 화장실 관련 사진



▲ 화장실 출입문 및 통로가 비좁아 휠체어 진입 어려움.



▲ 화장실 출입문 및 통로가 비좁아 휠체어 진입 어려움.



▲ 사용하기 어려운 잠금장치.



▲ 사용하기 어려운 잠금장치.



▲ 세면대 손잡이가 변기 사용 폭을 제한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이 어려움.



▲ 장애인화장실 대변기의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 미설치



▲ 화장실 내 짐을 적재해 놓음(창고로 사용).



▲ 화장실 내 짐을 적재해 놓음(창고로 사용).



▲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청소 도구들.



▲ 비상호출벨이 화장실 문밖에 설치되어 있음.

사진 4. 안내 시설 및 정보접근 관련 사진



▲ 경사로 진입시 도서관 안내축지도, 직원호출버튼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버튼 설치(모범사례).



▲ 출입문에 호출기가 있으나 점자표시가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 시설 안내 축지도 있으나 점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시설안내지도에 점자 및 음성안내 없음.



▲ 시설안내지도에 점자 및 음성안내 없음.



▲ 점자 안내도, 촉지도, 음성안내 없음.



▲ 점자 안내도, 촉지도, 음성안내 없음.



▲ 리플릿에 보이스아이를 삽입하거나 별도 점자리플릿을 제작하지 않음.



<장애인 보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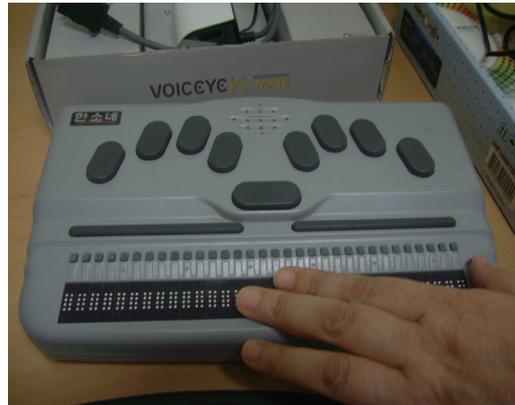
▲ 확대기



▲ 바코드 인식기



▲ 보청기



▲ 점자정보 단말기



▲ 오디오북 듣기용 장치

사진 5. 참정권 관련 사진



▲ 2층에 있는 투표소



▲ 지하 1층 투표소



▲ 2층 투표소



▲ 2층 투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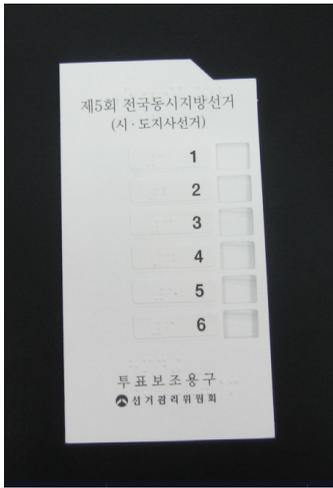
▲ 투표소 앞 턱



▲ 투표소 앞 계단 및 턱(경사도가 있지만 방치해 놓음)



▲ 나무로 만든 간이 경사로(틈이 벌어져 있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



▲ 시각장애이용 투표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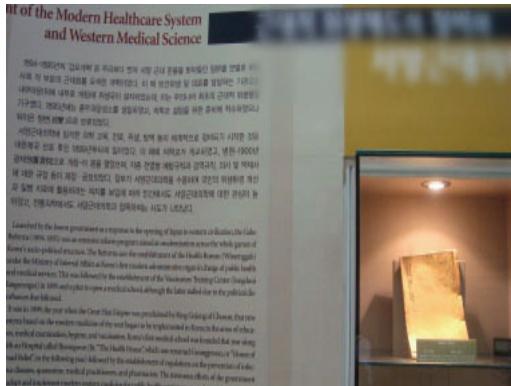


▲ 시각장애이용 투표용지



▲ 장애인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이용이 어려움.

사진 6.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사진



▲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점자, 음성 안내가 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시각적인 전시물에 대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 전시장 내부의 음성안내장치(점자안내가 없음)



▲ 전시실 안내 점자 및 음성안내, 점자블럭 없음.



▲ 박물관 등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자료에 수화 및 자막 없음.



▲ 방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안내판



▲ 서가 사이의 폭이 좁아 휠체어 통행 어려움.



▲ 서가 사이의 폭이 좁아 휠체어 통행 어려움.



◀ 높고 음성지원이 안되는 열람석 발권기



▲ 정보열람 컴퓨터 접근 어려움.



▲ 정보열람 컴퓨터 접근 어려움.



▲ 도서관 내 자료검색대가 높고 휠체어 장애인 접근 어려움.



▲ 도서관 내 장애인열람실이 설치되어있으나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사용이 어려움.

사진 7. 공공기관 행사 관련 사진



▲ 행사장 입구 경사 급하며 손잡이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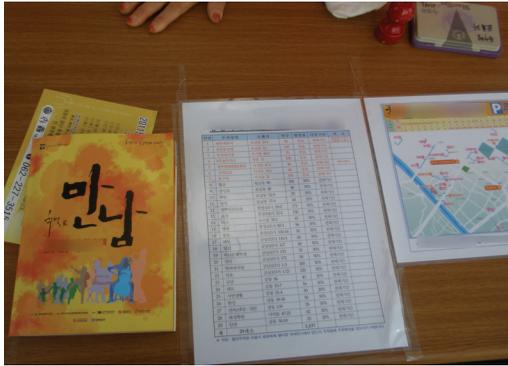
▲ 행사장 내 경사로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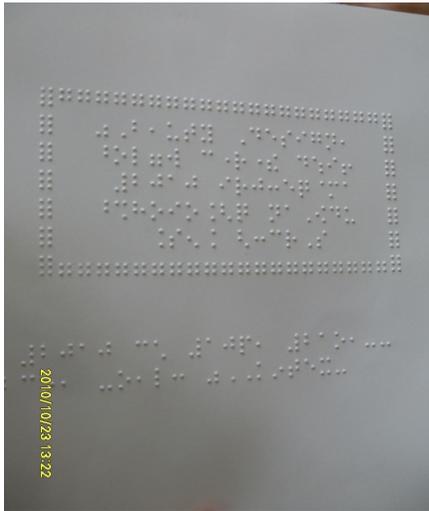
▲ 행사 진행시 점자블럭이 있는 문을 폐문으로 사용.

날짜	구분	회차	시간	참가번호	비고
0.30 (토)	계	11회			
	실버부	1회	10:00 ~ 10:30	25325001 ~ 25325029	정보검색
	장애인부	1회	10:00 ~ 10:30	25326001 ~ 25326015	정보검색
	일반부	2회	10:50 ~ 11:20	25324003 ~ 25324068	정보검색
	가족대향	3회	14:00 ~ 14:30	25328009 ~ 25328054	정보검색
고등부	4회	14:50 ~ 15:20	25313001 ~ 25313025	한글문서	
			25323005 ~ 25323059	정보검색	
	5회	15:40 ~ 16:10	25313027 ~ 25313064 25323060 ~ 25323096 (25323001, 25323002, 25323003, 25323004 포함)	정보검색	

▲ 장애인부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시험일정에 대한 점자안내, 보조기기 제공되지 않음.



▲▶ 행사 참가시 점자리플릿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행사(토론회) 개최시 점자리플릿 제공.



▲ 행사장 내에 별도로 장애인석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 존재



▲ 행사장 내에 별도로 장애인석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 존재



▲ 토론회 개최시 장애인석을 맨 뒷자석이나 통로쪽에 설치.



▲ 토론회 개최시 장애인석을 맨 뒷자석이나 통로쪽에 설치.



▲ 야외 화장실 경사로에 난간이 없어 위험.



▲ 야외 화장실 경사로에 난간이 없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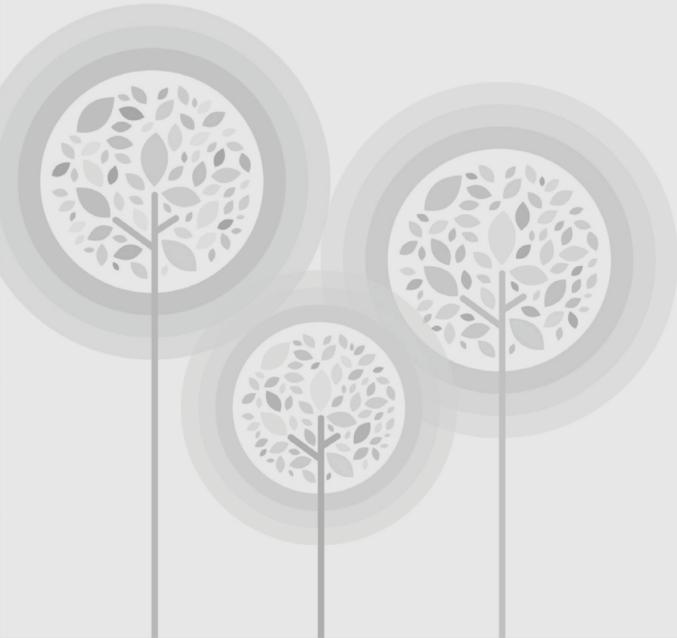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 야외 행사장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사용불가.



▲ 야외 행사장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의 리프트.

Ⅵ. 모니터링 활동 후기



1. 서울 권역

박정혁

김장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마치며...

박 정 혁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지난 6월,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첫 단추를 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모니터링. 이 법이 제정되었던 배경에 대해 굳이 줄줄이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열망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제정 된지 4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 장애인들이 살기에 조금씩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게만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장차법 모니터링 시행은 참 시의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인권위는 장차법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차별 당한 장애인들의 진정을 받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이다.

지난 4월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장차법 모니터링을 제안 받았을 때, 조금은 망설였다. 법에 대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외한이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를 꼬박꼬박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일이었다.

결국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역시 막연했다.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 장애에 속한 불편함 밖에 안 보인다. 그룹을 나눠 한 조에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애초부터 그렇게 조를 나눴지만 조별로 모여 진행했던 모니터링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작았다. 서로가 바쁘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렇긴 한데 이렇다보니 혼자 할 때가 더 많았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혼자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고양시 모 미술관에 간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창 더웠을 7월, 땀 뻘뻘 흘러가며 지하철을 타고 저상버스를 타고 10km 가까이를 전동으로 굴러서 도착했건만 그 미술관은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계단만 잔뜩 있는 그런 곳이었다. 몇 분을 그 미술관 주위를 맴돌다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한 마디로 개고생은 했지만 날씨가 좋아서 간만에 맑은 공기 마시고 바람도 쐬고 해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조원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했을 때도 기억이 새롭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작았지만 우리 조원들 배려심이 참 많았다. 특히 세식이 형님, 할 때마다 음료수를 뽑아준다. 청각장애인 형님이라 서로 말은 안 통해도 형님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저시력인 은주 누님의 맑은 웃음도 문득 떠오른다. 깨알 같은 글씨를 적으며 체크하는 모습이 옆에서 지켜보는 나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어쨌거나 5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났다. 투표소, 고궁, 공원, 박물관, 도서관, 공청회, 시민축제 등 지금껏 했던 모니터링들이다. 바쁜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곳들을 일일이 찾아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사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었고 돈이 궁해서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뭐가 되었든 참 재미있었고 보람도 느낀다.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 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인권위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법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분명 인권위에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 사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 장애 관련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이 장차법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여 장애 관련 인력을 대폭 늘렸으면 한다.

우리가 했던 모니터링, 참 많이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좀 더 공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인권위가 전문인력을 뽑아 제대로 교육시키고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시행해야 한다. 어쨌든 모니터링의 주는 인권위가 맡아야 하는데 인력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아무튼 장차법 모니터링을 위해 발로 댄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고 인사하고 싶다.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장애인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굳건히 서서
그 어떤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이것은 분명 차별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
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모니터링을 마치고

김 장 훈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지난 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과 관련한 시설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전까지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었고, 특히나 상대적 소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에 의거하여 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었고, 대학의 마무리에 달려가는 시점인 이번엔 하지 못하면 또 언제 해 볼 기회가 있을까? 하고 과감히 지원을 했습니다.

5월, 처음 모니터링 주제를 받았습니다. 6월 2일에 잇을 지방선거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선거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예컨대, 선거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선거 방송 및 선거 홍보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등입니다. 개인적으로 날짜를 놓쳐 모니터링 보고서와 체크리스트를 내지 못하였지만, 지금이나마 여기에 간략히 올려 봅니다. 선거 관련 웹사이트는 어느 정당을 망라하고 거의 모든 정당의 사이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별로 색채 효과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너무 현란하여' 약시의 경우 어떤 사이트인지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스크린리더(컴퓨터 응용프로그램으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준다.)으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홍보'라는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의 명을 '선거홍보'라 변경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각종 영문과 수자가 난잡하여 나열된 링크명으로 뜨는 것들이 허다하였습니다.

이후 박물관, 미술관, 각종 전시회, 공청회 등을 돌아보며 '당사자'로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찾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론 국가 인권위원회 서울지역 모니터링단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가열찻던 지난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후기를

쓰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 좋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결론을 공유 할 수 있어 한 번 더 좋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부분은 앞서 잠시 언급한 글 뿐 아니라 모니터링 보고서, 체크리스트 등에 있는 내용으로 지면상 넘기도록 하고 6개월동안 경험한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들을 써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인권위원회 모니터링의 긍정적인 면 2가지를 꼽자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시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사회와의 소통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전자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로 많은 시설에서 개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후자의 경우, ‘장애’와 관련된 주제로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과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주제적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다수결의 민주주의, 결과 민주주의가 중요시 되었던 사회에서 숙성된 숙의 민주주의(과정 민주주의)로의 변화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숙의 민주주의는 결과민주주의에 비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됩니다. 또한 다양성과 다원화에 대해 포용적이기에 소통의 수단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변화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모니터링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유도 블록, 건물의 엘리베이터, 지하철이 출발함을 알리는 주황색 불빛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결과로서 얻어지는 무언가를 떠나 이런 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는 사람들과 더불어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회가 좀 더 다원화 되고 다양성의 가치에 포용심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모니터링단원으로, 소통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자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산 권역

김 미 강

박 용 민 외 13명

2010년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김 미 강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3년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 좋다. 첫째는 그냥 흐지부지했던 모니터링활동이 작년엔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제법 모니터링 체계도 잡혔다.

2010년 5월 첫 번째 모임. 작년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고 2년, 3년 만에 보는 낯익은 사람도 있었다.

모니터링활동은 시티투어버스, 부산지역 소재 박물관, 지역도서관 등 부산에 살면서 일부러 찾아 갈 일이 없는 내겐 색다른 경험으로 좋았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을 기록해본다.

에피소드 하나 - 광안리 해수욕장 모니터링(三無;; 손잡이, 유도블록, 화장실)

평소 걷기를 좋아하는 나이에 오늘은 여유 있게 걸어 보려고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광안리해수욕장으로 고고싱~~

인도를 정비해서 깔끔해졌다는 느낌(유도블록 하나 없이)을 받으면서 경사로가 몇 개인지 이용 가능한지 헤아려 가면서 광안리해수욕장 끝에서 끝까지 20년 전에는 해변 쪽으로 공중화장실도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당연히 있겠거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경사로 개수, 위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길을 따라 걸었다. 가는 길에 벤치도 있어 앉아보기도 하면서.

그런데 '공중화장실 100m', '50m' 안내판만 보이고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다. 해변 끝까지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은 없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한쪽 끝에는 작은 해변공원이 있었다. 그 곳 공중화장실은 이번 도로를 건너 건물지하에 화장실이 있다했다. 그렇게 몇 시간동안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무거워진 발걸음 때문에 길 건너 화장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고 집으로 향했다.

나중에 다른 모니터링단원한테 확인해보니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나 있는 2차선 차도를 건너 해변경찰서 옆 수영문화센터건물에 화장실이 있었다. 어이 상실!!

에피소드 들 - 장애인고용사업장 모니터링

회동동이란 주소 하나만으로 아침 일찍 낫선 곳을 찾아간다는 건 나로서는 힘든 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검색으로 사업장 위치며 교통편이며 알아봤다. 우리집이 있는 연산동에서 대중교통(버스)으로 1시간 거리로 택시를 타면 20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었다. 내겐 택시는 고급 교통 수단이기에 경제적으로 만만한 두리발을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전날 두리발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예약이 안된다.”는 것이다. 100대 썩이나 운영되고 있으면서 전날 예약이 안된다니... 친구에게 물어보니 예약 받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예약할 수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당일 ‘즉시콜’로 예약하기로 마음 먹고 예약방법 등을 검색해 보았는데 당일 예약도 아침 8시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사업장 정문에서 10시까지 만나기로 해 빠듯했지만 “설마 아침시간에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당일 여유만만하게 두리발 예약센터로 전화를 했건만 40분 동안 통화중신호만 들려왔다. 계속 연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나가서 부딪혀보자.’ 결국엔 마을버스타고, 버스타고, 택시타고, 약속시간에 맞춰 사업장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 일이 바빠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이런 난감한 일이~

그리고 더해지는 짧은 기억들

2010년도 10월 31일. 공식적인 마지막 모니터링 활동에서 본 작은 몸짓 하나에 새삼 감사하다. ‘2010년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개막식’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어울마당 개최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거의 다수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역수같이 부는 바람 속에 소수의 몇몇을 위한 수화통역 제공이라는 부산광역시의 큰 변화를 봤을 때 그 감동은 모니터링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다.(외국인(!) 어울마당이고, 함께 즐기자고 하는 행사인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운운하며 불편할 필요가 있냐며 답변했던 담당자가, 수화통역 요청을 받아드려 당일 개막식에 수화통역사를 섭외한 것이다. 비록 수화통역을 신청한 모니터링 단원에게 접수되었고 처리되었음에 대해 답변을 해주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 만나는 유도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그냥 무심코 봐왔는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난 후로 어디를 가든 직업병(?)처럼 세심하게 봐진다. 그리고 ‘다음 모니터링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다. 아직 시도하지 못한 모니터링 사안들을 내년엔 ‘하고 싶었으나 이미 개선되어’, 못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2010년 8월, 코디네이트 구인 메일을 보고서...

10여 년 동안 하던 일을 7월에 그만두고 많이 허전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게 좋았다. 그래서 겁도 없이 코디네이터 일에 도전하게 되었고, 8월말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부산인권사무소 담당자가 구체적인 일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란 마음으로 보냈다.

보고서 정리를 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힘들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왔지만 나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 울산지역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단원들은 모니터링 현장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세밀하게 보고서 정리를 했는지 나로서는 놀랍기만 하다. 단순히 볼 수 없다가 아닌 불편함을 몸으로, 가슴으로 보는 듯했다. 다른 장애유형을 가진 단원들이나 비장애인 단원들은 유도블록의 유무만 보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유도블록 위에 다른 구조물이 있어 통행에 불편은 없는지, 필요한 공간까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려내진 못했다.

보고서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부산인권사무소 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의 방향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혼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모니터링 단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안팎으로 서툰 나로서는 코디네이터 일은 힘든 일이었으나 단원들의 따스한 도움이 있어 끝까지 마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내년에도 보입시데이~ ”

2010년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모음

박용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개인적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은 처음 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직접 방문하여 세부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파악했던 부분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장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상반기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일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하반기(기업체 관련)에는 바쁜 일정으로 조원에게 부탁하는 등 해당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치 못하였다.

긴 시간, 함께 한 조원들 수고했고, 고생했습니다.

우리들이 했던 모니터링 내용이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범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년째 모니터링을 활동 하면서 회가 거듭할수록 모니터링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현재 상황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다.

올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초기에는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나 10월에 들어서면서 전혀 활동하지 못해, 장애인고용사업장 모니터링에 대한 아쉬움점이 많이 남는다.

올해 모니터링 활동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은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도서관 모니터링이다. 나 역시 학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편리하게 독학을 할 수 있는 도서관 조차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집 가까운 도서관이 있지만 위험한 지형 관계로 접근성이 어려워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찾아 멀리 가야하는 현실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모듬별 활동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힘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특히 늘 함께 해주신 이금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손경연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2010년도는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그동안 몰랐던 분야에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많은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팀별 활동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고, 시야도 많이 넓히게 된 것 같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엔 팀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시간 맞추는 일이 가장 힘들었으며, 팀장이 연락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의견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 반면 팀원은 약간 소극적인 자세였던 것 같고, 편의시설에 따라 팀별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움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모니터링 활동으로 차별사항들이 많이 시정되고, 고쳐져서 발전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손우영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작년과 달리 올해 팀장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모니터링 초반에는 과제가 주어질 경우 조원과 함께 역할을 정하고 맡은 역할에 대한 개별 활동을 했다면 도서관 모니터링 시점부터 팀별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팀별 활동이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활동을 통해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었다. 아쉬운 부분은 작년과는 달리 모니터링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다.

유길상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사실 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지만 생활하면서 불편한점이 있어도 그냥 적응하면서 살았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하면서내 주위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쳐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야 '불편사항이 개선된다.'는 것과,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환경에 관심을 가지갠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유영진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가 공존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많이 일깨워 주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모니터링 단원들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한다. 모니터링단원들 모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희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편의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부산광역시 정책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권력기관에 전달 되었으면 하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좀 더 열린 마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니터링 단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확산되어 갔으면 합니다. 차별금지도 해야 하지만, 더불어 아직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이헌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이나 복지시설의 발전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많이 보게 되었고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호진, 정미자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활동이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교육 부족으로 모니터링 방법, 목적, 보고서 작성 요령 등 모든 부분에서 목적에 조금 벗어난 결과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2011년에는 사전교육이 더욱 철저히 이뤄졌으면 하고, 담당자도 늘려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정성규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장애인의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의시설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모니터링은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차별이 곳곳에 숨어있는데도 편의시설 모니터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발전적이고 더 다양한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귀를 기울이며, 차별금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혜선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 느꼈다.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이 지나가면 시선을 주지 않는 게 생각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오만이라는 것도 알았다.

더불어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사회에서 장애인은 곳곳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인식의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모니터링 활동이 꼭 계속 되었으면 한다.

김강, 정연경, 정태호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가파른 언덕, 수 많은 계단, 모니터링 장소까지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든 적도 많았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로 팀원들간에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지만, '이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팀 전체적으로 볼 때 즐겁게 활동했고, 소중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다.

최부귀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이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중을 못해 송구스럽다는 생각 밖에 없다.

황선일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많이 아쉽고, 시원스럽다. 2010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씩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느꼈다. 물론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2011년에도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될 것이므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 권역

박 경 선

공 병 조

모니터링 후기

박 경 선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광주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평소 오방장애인자립 생활센터 김대근사무국장님이 경험삼아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 한마디 때문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시설물 관련해 사전지식이 없어 간단히 법 조항과 시설물설치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모니터링 현장에 참여 하게 되었다. 다행히 1기에 활동했던 조원이 팀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팀별로 4명에서~6명이 구성되었는데 특별히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어도 모니터링 현장에 가게 되면 나는 사진을 찍고 1기 경험있는 단원이 관련 책임자와 이런저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고 장애가 있는 팀원은 직접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출해 관련 책임자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대화와 모니터링 보고서에 사진모델이 되곤 했다. 이렇게 물 흐르는 역할분담이 이뤄져 어려울거라는 우려는 사라지게 되었다.

활동 중 힘들었던 부분은 현장에서 맞이하는 실무자들이다. 상냥하게 안내해주시면서 대화 내용을 메모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쁘게 귀찮게 한다는 태도로 투명스럽게 대하시는 분, 그냥 알아서 하고 가라고 몰라라 하는 분들 온도차가 매우 달랐다. 물론 더운 여름 날씨에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무엇을 지적하고 고치라는 식은 고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니 협조를 해달라는 마음은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

모니터링 현장에서 단원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말은 “과연 이 활동을 통해 나아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에서 데이터 수집과 권고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과연 이 활동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가지고 있는 듯하다. 참여 했던 모니터링 결과가 좀 더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들은 활동취지와 모두들 같으나 개선 실행의 노력이나 이행이 보여질 것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자주 교차 되었다.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근래 국가인권위에대한 소식들은 개선 될거란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2기 활동이 1기 보다 기간이 길고 인터넷 웹 접근성, 시설물 접근성, 문화향유 접근성 등 여러 주제로 접근하다 보니 모니터링단원 개개인들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웹 접근성 교육에 대한 반응들은 매우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 주제별로 성격에 맞게 단원들(인적자원)을 배치시키는 것은 3기 활동에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니터링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애순, 노정환 사무관님께 감사드리며 광주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2기 단원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차법 모니터링을 마무리하며.....

공 병 조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저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뇌병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차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한 일인이었습니다. 언론매체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장애인차별에 대해 떠들어대도 나오는 상관없거나, '지네들이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어?'라는 생각과 '아니~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걸 국가가 뭘 어찌란 말이야?' 라는,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몰지각한, 그래서 더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저는 고향에서 광주로 올라온 뒤, 광주인권위에 인연이 닿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니터링을 하던 날 저는 아주 의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리라 다짐했었죠.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활동을 거의 못하게 조성돼 있는 걸 보고 현실이 참으로 처참하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일무위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죠. 한마디로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고 바깥활동을 해보지 않은 우물 안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일 피부로 와 닿았던 게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역시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정말 형편없다고 느낄 만큼 자원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근래에 지어진 공공건물이나 도로, 보행길 같은 경우 그나마 괜찮았으나 조금 오래 되거나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나하는 마음에 허탈함과 자괴감까지 들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이 공공건물이나 웹 접근성으로 다소 국한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를 거듭하면서 확대 되겠지만 모니터링이 보다 장애인들에게 밀접한 사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모니터링 사전교육도 세세하게 해서 성과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겠구요.

예를 들어 장애인콜택시라든가 저상버스, 육교, 저상버스 정류장, 보행길에 유도블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만 장애인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모니터링 단원들이 이룩한 성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모니터링 단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니터링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주위 분들의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걸 목격하면서 아! 이게 우리의 성과라면 가장 큰 성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 특히, 복지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는 유럽에는 그 동네에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접근성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한명을 위해 전부 뜯어 고친다는 소리를 그곳에 살다 오신 장애인 분에게 듣고서 앞으로 장애인인권이,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더욱 확대돼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대구 권역

기 윤 석

신 태 선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 활동후기

기 윤 석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1.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동기

평소 장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고 주위의 친척과 지인들 중에 장애를 가진 분도 없어서 장애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관심 없는 세계일뿐이었다. 열악한 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자 스스로 힘겹게 외치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이었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들의 힘겨운 몸부림은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 우연한 기회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장애아동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성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달간의 짧은 경험은 나에게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는데, 가장 큰 수확은 장애인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관념 속에서,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 대학생의 신분으로 좀 더 의미 있고 대승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물론 지역 사회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3시간 남짓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나 잘못된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좀 더 본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대구인권사무소에 게시는 한 사무관님의 추천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2.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활동과 소감

모니터링 위원으로 선발된 후 처음으로 가지는 모니터링 모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깔끔하고 이늑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를 방문한 것도 본인에겐 무척 신선한 경험이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니터 위원 분들을 뵈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다수 계셨는데 그분들이 스스로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소 말이 느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도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모니터링은 한 달을 단위로 각 구별로 조를 정해서 전국 과제와 지역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모니터링 자체는 소요되는 시간도 적고 특별히 힘든 일이 아니어서 부담이 없었지만 같은 조 모니터 위원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각자 바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함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그 점이 무척 아쉬웠다. 특히 그 부분은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전제로 하여 당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활동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실제적 소감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각 조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까지 소속되어 있었는데 특히 우리 1조의 경우 김태우 선생님께서 조장을 맡아 조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0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박물관이나 지역 공원, 도서관 등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전혀 장차법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한 곳, 한 곳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는 소회는 장차법 모니터링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장애인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거의 관습처럼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악습을 깨려는 모니터링 활동은 지속적이고 좀 더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회성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 점은 특정인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3.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에 대한 제언

장차법 모니터링활동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모니터링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인구 이 백만명의 대도시에서 모니터 위원은 고작 20명 남짓으로 지역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장애인 차별을 모니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차별을 시정하려면 직접 차별을 받는 당사자나 그 지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차별철폐의 외침은 그들만의 의미 없는 혼잣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관심을 불러일으

켜야 한다. 모니터 활동을 손수 해보고 직접 장애인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친분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편견을 깨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잠재적 기성세대인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모니터 활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문이 모니터 대상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니터 대상기관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안내데스크에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응대를 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모니터 대상기관 내의 소통문제가므로 인권위 측에서 직접 해결불가능한 문제이기는 하나, 좀 더 활발한 모니터를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2010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 활동에 대한 후기를 간략하게나마 적어보았다. 모니터 활동은 비록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장애인 차별 철폐에 대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의 인식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인권위 모니터링 활동후기

신 태 선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올 봄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지부의 한 분으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즈음 지금은 재활을 통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저희 아들이 도서관 관리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였을 때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3일부터 모니터링 단원 25명중 제가 제일 연장자이면서 부족하였지만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이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그 열기에 고무되기도 하였습니다.

① 2010. 6. 2에는 전국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② 2010. 6. 대구시내 공원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모니터링, ③ 2010. 7. 8에는 대구시내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모니터링, ④ 2001. 9. 10에는 공공기관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7월과 8월에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힘들기도 하였지만, 덕분에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게 되고 공공시설물과 공원을 가보게 되었고,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잘 이어져 가다가 포장마차나, 상점의 물건 진열대에 가려지게 되거나, 새로 마을 앞 길 포장 공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구나 하구 생활주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1호선은 아직도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곳이 많아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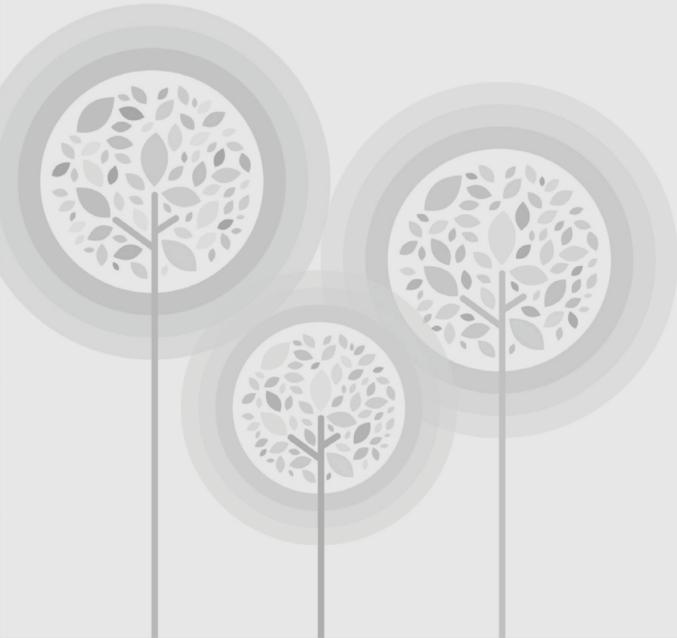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제가 속해 있는 정신장애인협회의 회원들은 몸보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호자들의

사후에 혼자서 자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회 속에서 돌봄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을 봄 5월에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하고보니 어느덧 초록 빛 은행잎들이 노랗게 가로수 길 위에 떨어져 텅굴고 산야의 나뭇잎들이 고운 빛으로 짙은 가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Ⅶ.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제언 1.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김 주 영 (교수, 한국재활복지대학)

I 논의에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장애인 차별의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함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실시된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전국과제로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모니터링’과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모니터링’, ‘공공기관의 행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지역과제로 서울지역에서는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을, 부산지역에서는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과 ‘보건소 모니터링’,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을,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전주시 관내 지자체 청사 모니터링’을, 대구지역에서는 ‘대구 시내 공원 모니터링’과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각각 수행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생활과 사회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물리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므로 순차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영역보다는 매우 긴요하거나 쉽게 간과되면서도 삶에 중요한 영역부터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업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로는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파악해 왔던 장애인의 참정권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또 이번 사업에서는 모니터링의 범위를 노동권이나 생존권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문화와 행복 추구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성과라 하겠다. 일회적 성격이 많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도 새로웠다. 한편, 지역과제에서는 고궁·공원 모니터링이 주를 이루었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지자체 청사에 대한 모니터링, 해수욕장과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과 같은 특별한 과제들도 눈에 띈었다.

여기서는 총 열 가지의 전국과제 및 지방과제를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과 ‘여가·문화 모니터링’, ‘공공기관 모니터링’의 세 분야로 묶어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201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과제

분야구분	과제구분	과 제 명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전국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여가·문화 모니터링	전국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모니터링
	전국	공공기관 행사 모니터링
	지역(서울)	고궁 및 공원 모니터링
	지역(부산)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
	지역(부산)	공원 및 해수욕장 모니터링
	지역(대구)	대구시내 공원 모니터링
	지역(대구)	문화·예술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공공기관 모니터링	지역(부산)	보건소 모니터링
	지역(광주)	광주광역시 및 전주시 지자체 청사 모니터링

II 분야별 과제 수행 결과

1.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올해는 4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참정권 분야의 장애인 차별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정당 및 선거후보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웹 사이트에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 수화나 자막과 같은 대체수단은 어떤 사이트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점자로 제작된 선거공보는 약 60% 정도가 제공되었고 이들 자료의 점역 비율은 60~70%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선거방송의 자막 또는 수화 서비스는 90% 이상 제공되었으나 자막방송의 제공 비율이 매우 낮고 수화 또한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는 편의시설 측면에서 출입구와 접근로가 80% 정도 갖추어진 반면 점자블록 설치, 점자투표 안내문 비치,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비율은 저조한 형편이었다. 54%의 투표소에는 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전문성과 친절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모니터링단에서는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관계 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번 결과를 검토하면서 향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웹 사이트, 공보, 방송에 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기준을 정하여 이번 결과에서 나온 차별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며, 특히 투표소의 편의시설은 그 절차와 투표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통일된 설치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활동보조인 운영에 대한 규칙(자격, 사전교육, 행동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 등)도 개발하여 차기 선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여가·문화 모니터링 결과

1) 여가·문화 모니터링의 대상과 분야

여가·문화 모니터링은 전국과제 2건, 지역과제 5건 등 총 7건으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여가·문화 모니터링 대상별 구분과 세부 대상

대상별 구분	세부 대상
문화 체육 시설	박물관, 미술관(전시관), 예술회관(음악공연장), 체육관, 공공도서관
공원과 해수욕장	고궁, 공원, 해수욕장
시티투어버스	시내 순환용 시티 투어 버스
공공기관 문화행사	토론 및 공청회, 축제 행사

한편, 모니터링 분야는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동 및 접근 편의, 내부 시설의 이용 편의에 모아져 있다. 그 구체적인 대상별 모니터링 분야는 <표 3>과 같다.

〈표 3〉 대상별 중점 모니터링 분야

대상별 구분	중점 모니터링 분야
문화 체육 시설 공원과 해수욕장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동 및 접근 편의, 내부시설의 이용 편의
시티투어버스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버스의 이용 편의, 대중교통과의 연계
공공기관 문화행사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내부시설의 이용편의

2) 문화·체육 시설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박물관, 미술관(전시관), 예술회관(음악공연장), 체육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이동과 주출입구 및 시설 내 접근 편의, 해당 시설 내의 각종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매우 낮았으며, 특히 기관의 홍보 특성상 이미지와 동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형편으로 분석된다. 시설의 주출입구와 실내 공간의 이동 접근 편의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유도 시설이나 계단 등의 경계 블록 설치 등)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독서확대기, 점자안내서, 도서 검색용 컴퓨터 등)의 제공도 서울의 경우 17~33% 수준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보조인력의 배치 수준은 공공도서관은 61%였으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궁을 포함한 공원과 해수욕장

한편, 고궁이나 공원 근처의 지하철이나 저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비교적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공원 등에 이르는 안내 유도시설과 인도의 상태(턱, 폭, 노면 등)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궁이나 공원의 출입구는 비교적 장애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었으나, 고궁 또는 공원 내 보도와 각종 편의시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29~31% 수준에 그쳐 장애인의 고궁 및 공원 이용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두고 있는 고궁 등은 서울의 경우 40%에 머물렀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은 거의 모두 갖추고 있으나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된 곳은 역시 반을 넘지 못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공원과 함께 해수욕장 및 주변 시설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저상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긴 반면, 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해수욕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의 버스정류장이나 해수욕장 근처에 설치된 장애인용 주차장으로부터 해수욕장 입구에 이르는 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애인의 해수욕장 진입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수욕장 내 점자 안내물이 부재하고 망원경이나 포토존, 전망대와 같은 각종 이용시설에 접근이 곤란하며, 규격이 맞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의 화장실 출입과 이용에도 불편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4) 시티투어버스

시티투어버스 모니터링은 부산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부산지역 3개 노선과 울산지역 1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버스의 이용 편의,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관련 웹 사이트는 홍보용 플래시의 경우 텍스트나 수화, 자막 등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며, 확대나 음성서비스 등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18%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승차권 구입에 있어서 온라인예매, 전화예매 등이 가능하지만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어렵고, 현장 구입의 경우 선착순이어서 전반적으로 구입이 쉽지 않다. 버스는 출입문이 매우 비좁고 2층 버스의 경우 진입계단이 매우 가파르고 폭이 좁으며, 계단 손잡이도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차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시티투어버스에는 안내원이 탑승하지 않아 모니터를 통한 노선 안내와 기사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모니터를 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사에게 더 이상의 안내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울산지역 시티투어버스에는 안내원이 탑승하여 노선과 경유지에 대해 안내하며, 연계관광지에서는 별도의 안내원도 따로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다른 장애인들의 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5) 공공기관 문화행사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로는 토론이나 세미나, 공청회,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모니터링에서는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행사 시설의 이용편의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장애인들은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다.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수화통역이나 점자자료 등의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기 힘들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사 장소가 옥내일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는 행사장 접근과 이동 및 간이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 여가·문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전반적으로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여가·문화 분야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동 및 접근 편의, 내부 시설의 이용 편의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여전히 불편 그 자체인 것으로 분석된다. 모니터링단에서는 각각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제안에 덧붙여 적어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과 같은 유물, 작품, 유적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설명과 해설이 필요한 문화 시설에는 각종 멀티미디어 해설 자료를 비롯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 해설사 등을 양성하여 고정 배치하고, 상시 자원봉사 인력풀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 내 이동과 내부 이용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해수욕장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옥외 행사 모니터링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간이 화장실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을 포함한 옥외 행사장을 이용할 때 겪는 이동·접근 및 시설 이용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서 나온 문제점들 외에 어떤 요소들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체계화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본다.

시티투어버스는 최근 많은 도시들이 앞 다투어 노선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 상품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산지역의 모니터링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장애인 이용 편의 요구를 제대로 밝혀서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 구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승차권 구입 방식이라든가 안내 및 관광지 소개 자료 제작, 안내원 수칙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 해설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보급하는 것이 할 일이다.

3.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모두 지역과제로, 부산지역에서 수행한 보건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광주지역에서 수행한 광주 및 전주시 관내 지자체 청사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보건소의 경우 총 14개 기관을, 지자체 청사의 경우 광주와 전주에 있는 7개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점 모니터링 분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공공기관 모니터링대상과 중점 모니터링 분야

대상	중점 모니터링 분야	비고
보건소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용 편의	부산 8개 울산 5개 양산 1개
구청	이동권(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접근권(각종 편의 제공 및 시설, 화장실)	광주 5개 전주 2개

먼저 보건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웹 사이트를 통한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자 안내책자 등을 구비한 보건소는 한 곳도 없었고, 화상전화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 있었으나 직원들이 조작방법을 몰라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편의에 있어서 주 출입구에 이르는 경사로가 필요시 100% 설치되어 있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100%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구 또한 장애인의 출입에 비교적 편리한 편이었으나 일부 보건소의 경우 전기 절약을 위해 자동문의 한쪽만 가동하는 바람에 전동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실내 구조는 장애인의 이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3층 건물인 한 보건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이용자의 층간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점자블럭이나 점자안내문, 핸드레일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64%에 이르렀다.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치기준을 따르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청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비교적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고, 주 출입구의 진출입이 청사 안에서의 이동조건보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시설의 이동시 대부분의 청사에서 통로의 높이 차가 없고 있더라도 대체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어 복도 이동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각 실의 출입구 폭은 충분히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럭이 부족하며, 바닥의 색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게 대한 안내판이나 안내자료 비치도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에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원 접수대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에게 다소 높은 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단에서는 결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의견들에 덧붙여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관공서의 장애인 이동편의와 이용편의

조치는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보건소의 경우 체력이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며, 관공서의 경우 시민 즉,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 곳일 뿐만 아니라, 청사 자체가 모든 건물의 모델이 되며,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이용 편의 정도가 민간의 이용 편의 수준을 이끌어 갈 책무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소를 포함한 관공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단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다소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바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시민사회가 요구해야 한다.

III 논의를 맺으며

지금까지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야별로 정리하고 제언을 하였다. 사실상 올해가 전국 규모의 첫 모니터링 사업인 만큼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모니터링 단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으며, 노동이나 교육, 복지와 같은 생존과 직결된 분야를 벗어나 참정권과 여가·문화 즉, 사회 참여와 삶의 질에 대한 권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 않아 씁쓸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놓칠 수 없다.

첫째, 모니터링의 척도에 준거와 통일성이 있었으면 한다. 총 10개의 과제를 세 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여가·문화 분야(7개 과제)에서는 모니터링의 중점이 크게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 이동 및 접근 편의, 내부 시설의 이용 편의 등 세 가지에 모아져 있었는데, 실제 각 과제별 모니터링 척도(체크리스트)는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결과들은 일치된 해석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일관성 있는 대안 제시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을 할 때는 같은 유형의 과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척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둘째,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국과제와 지역과제의 연계성이 나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전국과제라 하더라도 지역 모니터링단들이 전부 참여하는 격이므로 여기서는 전국과제와 지역과제의 연계성보다는 차별성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전국과제와 지역과제 사이에 어떤 연계성 또는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 이것은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기획 과정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 사업을 기획할 때는 전국과제와 지역과제의 연계성(논리성이 있어야 함) 또는 차별성(지역성이 있어야 함)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한다.

셋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책에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각각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은 앞선 노력에 비해 너무 형식적이며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직 장애인의 삶의 질 회복과 향상을 기능하거나 확인하기엔 우리사회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는 매우 매너리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는 그 뻔한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더 천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에 소요된 이상의 시간과 정력을 쏟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 집단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풍부히 갖도록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이번 모니터링의 성과와 모니터링단의 노력을 단 일점도 평가절하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은 향후 모니터링에 거는 기대이자 주문이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된 모니터링 척도를 갖추는 것도, 전국과제와 지역과제의 연계성 또는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풍부한 대책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국가인권회의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언 2. 동등한 권리옹호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서 재 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7년간의 지나긴 시간이 필요했다. 7년간의 지나긴 시간이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는 집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편적 권리와 경제적 효율성과 이득, 손실의 논리가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7년간의 끈질긴 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결실을 이끌어 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쯤 접어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된 권리, 그 권리는 일깨워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비로소 세상에 뿌리 깊은 차별적 요소들을 시정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눈과 시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1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서울지역 네트워크 연대를 꾸렸고, 지체장애 영역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네트워크 연대에 참여하였고, 청각장애영역은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로 네트워크 연대를 결성하였다. 시각장애영역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맡았고, 발달장애영역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장애인부모회와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조사원일 것이다. 모니터링 조사원의 경우, 각 지역 사회 네트워크에서 선발하였는데 자격조건은 단 하나,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이였다. 그 이유는 장애유형별, 장애특성별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가 다르고,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적

경험에서 나오는 모니터링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체가 함께 모여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체장애영역, 청각장애영역, 시각장애영역별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체크리스트교육이 실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를 살펴보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모듈별로 앉아서 토론도 하고, 각 장애영역별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영역별 개별적인 교육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영역 지표개발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발달장애영역 지표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 발달장애당사자 부모와 부모연대, 서울장애인부모회,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단체가 모여서 우리 사회,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득히 먼 꿈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제공해야 할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발달장애부모들이 모임의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들을 떠올리며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체크리스트>는 발달장애 전문가 집단(교수, 활동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완성, 개발하였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만든 <체크리스트>는 제주DPI, 울산 교육청,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행자부 등에서 요청, 여러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체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2 모니터링을 시작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2010년 3월부터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장소를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15곳(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우편취급소, 보건소, 도서관, 공원, 국공립병원, 구민회관,

국공립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3월에 시작한 모니터링은 5월말에 완료되었고, 지체장애영역(200곳), 시각장애영역(212곳), 청각장애영역(213곳), 총 625곳을 모니터링하였다.

발달장애영역은 지표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모니터링은 7월 말에 시작되었다. 처음 계획은 발달장애 당사자 조사원이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었으나, 발달장애 당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발달장애 부모가 조사원이 되어 상반기에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2단계는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여 9월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발달장애 부모 모니터링은 서울지역 8개구(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광진구, 노원구, 강북구), 총 21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9월 초순에 조사는 완료되었다. 발달장애 당사자 모니터링은 당사자 2명이 참여하였고, 활동보조인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지역 52곳을 모니터링하였다.

〈표 1〉 장애유형별, 네트워크 단체별 모니터링한 조사장소

지체장애 영역	지체장애	200곳 조사장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41곳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41곳
	중량장애인자립생활센터	41곳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36곳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41곳
시각장애 영역	시각장애	212곳 조사장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212곳
청각장애 영역	청각장애	213곳 조사장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123곳
	한국농아인협회	90곳
발달장애 영역	발달장애	266곳 조사장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14곳
	서울장애인부모회	52곳
계		총 891곳 조사장소

〈표 2〉 장애영역별 조사장소

지체 장애 영역	경찰서	공공 도서관	공원	구민 센터	국공립 병원	버스 정류장	보건소	세무서	우체국	우편 취급소	주민 센터	지하철 역사	체육 시설	파출소	구청	총 15곳
	3곳	8곳	8곳	3곳	3곳	19곳	5곳	2곳	15곳	7곳	57곳	49곳	8곳	7곳	6곳	200곳
시각 장애 영역	경찰서	공공 도서관	공원	구민 센터	국공립 병원	버스 정류장	보건소	세무서	우체국	우편 취급소	주민 센터	지하철 역사	체육 시설	파출소	구청	총 15곳
	7곳	10곳	12곳	4곳	8곳	41곳	10곳	7곳	17곳	10곳	18곳	38곳	10곳	13곳	7곳	212곳
청각 장애 영역	경찰서	공공 도서관	공원	구민 센터	국공립 병원	버스 정류장	보건소	우체국	우편 취급소	주민 센터	지하철 역사	체육 시설	파출소	구청	총 14곳	
	7곳	4곳	1곳	1곳	10곳	54곳	6곳	47곳	7곳	14곳	42곳	1곳	1곳	18곳	213곳	

3 모니터링 결과, 그 이후 집단진정을 준비하다

■ 지체장애 영역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지체장애영역은 ▲공원의 경우, 보도블럭이 전동휠체어가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화장실 내부가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조사장소 8곳 중, 6곳), 여성 장애인 영유아대 거치대 등 시설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조사장소 8곳 중, 5곳) ▲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며, 화장실 내부 역시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장소 5곳 중, 5곳 모두).

경찰서와 파출소의 경우,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 입력장치(볼마우스, 한손키보드, 터치스크린)등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경찰서는 조사장소 3곳 중, 2곳/ 파출소는 조사장소 7곳 중 5곳 미제공), ▲구민센터와 구청, 주민센터(조사장소 57곳 중, 48곳 미제공)도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 입력장치(볼마우스, 한손키보드, 터치스크린)등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한 정당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맞춤형 체육용 기구(조사장소 8곳 중, 7곳 미제공), 체육지도자와 보조인력 미제공(조사장소 8곳 중, 7곳), 장애인 샤워실 샤워커튼 미제공(조사장소 8곳 중, 7곳),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미제공(조사장소 8곳 중, 7곳)으로 나타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권>에서 소외,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높낮이가 차이가 클 경우, 이동식 발판 설치가 시급/ 화장실 잠금장치가 고리로 되어 있어 사용불가능한 점/ 환승 구간 이동식 리프트 사용만이 가능한 점 등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버스안내판이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가 읽을 수 있도록 1.5m의 높이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조사장소 19곳 중, 8곳만 1.5m 설치)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 시각장애 영역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영역은 ▲공원의 경우,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조사장소 12곳 중 12곳 모두 미제공), ▲구민센터(조사장소 4곳 모두), 구청(조사장소 7곳 모두)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구청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필요한 자료에 2차원 바코드 인쇄, 및 휴식공간에서 읽을 수 있는 점자자료 비치, 서류에 점자라벨 표시 등이 제공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조사장소 7곳 모두 미제공), ▲경찰서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점자자료, 텍스트 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형태 제공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장소 7곳 중 1곳)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 내 보조견 접근 거부(조사장소 8곳 중, 5곳), 병원 주출입구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 미설치(조사장소 8곳 1곳 제공),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를 통한 주요시설이나 방 배치(조사장소 8곳 모두 미제공)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시설 내 보조견 접근 거부(조사장소 10곳 중 7곳), 번호대기표 음성안내지원(조사장소 10곳 중 8곳 미제공) 등에서는 정당한 편의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드러났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앞 점형블록 설치(조사항목 41곳 중, 39곳 미설치), 버스정류장 점자안내판 설치(조사항목 41곳 모두 미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이 도사리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세무서와 우체국, 우편취급소, 파출소 등의 공공근린시설은 모든 조사항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가 전무한 상태여서, 차별시정이 시급한 곳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 청각장애 영역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청각장애영역은 ▲경찰서의 경우, FM보청기기, 화상기기,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수화통역자가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사장소 7곳 모두 미제공),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사장소 4곳, 모두 미제공).

구청의 경우에는 FM보청기기는 조사장소 18곳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화상전화기(조사장소 18곳 중, 7곳 미설치), 접수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조사장소 18곳 중, 1곳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센터의 경우, FM보청기기(조사장소 14곳 중, 14곳 미설치), 화상전화기(조사장소 14곳 중, 12곳 미설치), 전자문자안내판(조사장소 14곳 중, 10곳 미설치), 수화통역제공(조사장소 14곳 중, 13곳 미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비상벨 주변에 함께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국공립병원의 경우,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가 설치(조사장소 10곳 중, 10곳 미제공)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더욱더 정당한 편의 시설이 열악하였는데, FM보청기기(조사장소 6곳 중, 6곳 미설치), 수화통역제공(조사장소 6곳 중, 6곳 미제공),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비상벨 주변에 함께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진찰 받는 병동에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조사장소 6곳 중, 1곳만 설치)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버스 정류장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조사장소 54곳 중에서 10곳 설치), 버스내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조사장소 54대 중, 1대)로 조사되었다. ▲지하철역사의 경우,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조사장소 42곳 중, 모두 미설치), 수화통역사(조사장소 42곳 중, 모두 미제공)가

상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경우, FM보청기기(조사장소 47곳 중, 5곳 설치), 화상전화기(조사장소 47곳 중, 1곳 설치), 전자문자안내판(조사장소 47곳 중, 3곳 설치)으로 나타났다. ▲우편취급소의 경우,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전자문자안내판 설치(조사장소 7곳 모두)가 어느 한 곳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3년째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는 공공 근린시설, 이러한 차별 방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집단진정을 추진하였고, 올해 6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역 네트워크는 조사한 공공근린시설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총597곳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하였다.

〈표 3〉 집단진정 참여 단체

지체장애 영역	지체장애	187건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39건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41건
	중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9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7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41건
시각장애 영역	시각장애	201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201건
청각장애 영역	청각장애	209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128건
	한국농아인협회	81건
계		총 597건

4 집단진정 이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번 모니터링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단체와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든 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역 네트워크가 연대하여,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실태 조사한 점,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공공근린시설 중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597곳을 집단진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597곳을 집단진정한 궁극적 목적은, <정당한 편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촉구하고,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구축은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확보를 가져오게 되고,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제공하게 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을 모니터링 하고, 집단진정을 한 이후,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인차별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언론과 매스컴에서 취재, 보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버스정류장에 <전자문자안내판>과 <음성안내> 등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이행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당한 편의>에 관한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한 편의시설> 지침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발달장애영역 모니터링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12월 초, 발달장애부모와 발달장애 당사자가 모니터링한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266곳을 집단 진정할 계획이다.

집단진정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참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 배제, 분리되지 않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이 거의 오지 않고, 부모가 대신 오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사실상 필요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자, 발달장애인들이 공공근린시설에 왜 오지 않을까?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공공근린시설 종사자들을 받고 있는가?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만들어진 매뉴얼(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집)이 비치되어 있는가? 발달장애인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정당한 편의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부모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구축을 위한 집단진정은 우리 사회는 부모 뒤편에 서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공공근린시설 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매뉴얼 비치, 종사자들의 발달장애특성 이해교육 및 의사소통 교육,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자료집 비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편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차별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다.

5 내년 <학교 모니터링>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내년도 서울지역 학교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다. 내년도 모니터링에서는 청각장애영역, 시각장애영역의 조사원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조사원의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분은 조사장소를 혼자 찾아가기 어렵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내년에 <학교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 조사원의 경험과 관점에서 <장애유형별 체크리스트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크리스트 개발은 <장애유형별 조사원이 3차례 이상 만나서, 체크리스트 만들기 모임>을 통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6 2010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인권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내용을 권리영역으로 보면, <참정권>, <문화향유권>, <이동권>, <건강권>,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정권 영역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니터링단 구성에 있어서 지체장애 영역의 비율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많은데 비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적장애 영역은 당사자 조사원의 참여율이 낮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체크리스트 조사항목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영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지적장애의 경우, 장애특성상 정보접근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이 선거투표를 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사전 조사 및 체크리스트조사항목 개발>을 바탕으로 한, 지적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렇지만, 이번 모니터링이 선거관리 위원회 및 정당 및 선거후보자 웹사이트, 정당 및 선거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선거 후보자 대담 및 토론을 위한 선거방송(수화, 자막, 화면해설), 투표소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별 조사가 진행되었

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에서 〈7개 정당 및 33개 선거후보자 웹사이트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장애인 웹접근성’에 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번 〈참정권〉 관련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형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된다.

문화향유권 영역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주체, 즉 당사자 참여구성이 지적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체크리스트의 조사항목에서도 〈편의시설〉에 관한 조사항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해설〉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측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동영상 서비스〉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을 배려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시설접근성에 비해 정당한 편의〈보조기기, 보조인력, 점자자료, 보청기 제공〉등에 관한 준수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니터링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개선 협조 요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과 차후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궁이나 공원에 관한 모니터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경우,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점, 알림장치가 없다는 점, 전동휠체어 회전이 안 되는 곳 등의 정당한 편의 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는 점, 고궁 등 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나 음성안내판 설치가 전체 18개 대상 시설 중 1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고궁 내 각종 문화재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1곳도 없었다는 점, 홍보 및 안내책자와 관련하여 점자나 음성안내 제공이 18개 시설 중 1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조사결과는, 공공근린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구축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고궁이나 공원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가 존엄하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작동되고, 살아 숨쉬어야 한다.

인권위가 고궁 및 공원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청, 각 지자체, 각 고궁 등 관리소에 어떠한 대응방안 조치를 요구했으며,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와 2차년도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공기관에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모니터링에서는, 앞에서 나온 실태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시설접근에서는 〈정당한 편의시설〉구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보접근권〉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권리〉에 필요한 점자자료 배치와 수화통역사 배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는 매우 많은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가겠는가?〉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시티투어버스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중점 내용이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 접근, 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모니터링 대상이 장애인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관한 모니터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실 시각장애인은 혼자서는 거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고, 음성안내가 지원된다고 해도, 몇 번 버스가 내 앞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 정류장 안내판의 경우,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정류장인지,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요즘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 문자 안내판 설치가 눈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버스 내 문자 안내판 설치, 음성안내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건강권 영역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니터링 조사대상을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참여한 당사자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 영역과 뇌병변장애영역이 그 다음,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당사자 조사원이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점은 아쉬우나, 다양한 장애영역별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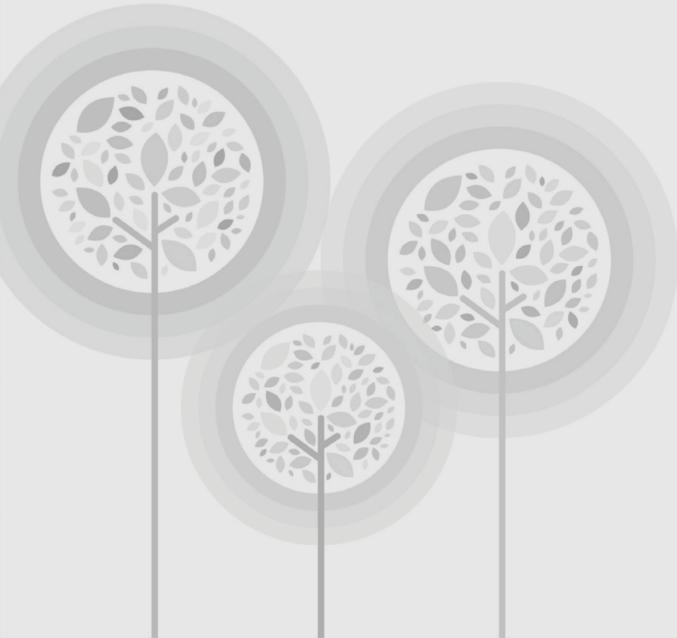
그런데 체크리스트 조사항목을 보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반면에, 지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조사하는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지,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대리인, 보조인 배치가 제공되고 있는지, 지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시각장애인이 보조건을 대동할 경우, 세균의 감염문제 등을 이유로 <보조건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항목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보조건을 대동할 경우, 보조건 접근>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점도 아쉽다.

2010년 인권위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조사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별, <정당한 편의>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장애특성별 <정당한 편의>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년 2011년 인권위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조사원 구성과 참여에 있어 신중함과 공정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리스트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조사항목이 편중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조사항목도 배제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니터링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보장일 것이다. 동등한 권리,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것,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참여와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위의 모니터링 조사결과가 모니터링 조사 대상 장소 및 관련 부처에 결과 통보 및 개선 협조 요청 및 정책 권고 등의 후속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요소 개선, 즉 정당한 편의제공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자문단 명단

1. 자문단 명단(총 7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기간	소속	담당 권역
1	김주영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서울
2	남찬섭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
3	유동철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동의대학교 교수	부산
4	조한진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
5	박옥순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6	김황용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2.24 ~ 2010.12.31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
7	임성택	모니터링단 자문 위원	2010.6.4 ~ 2010.12.31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서울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명단

가. 본부 모니터링단(총35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기간
본부-1	이규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	김필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	류창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4	서성남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5	이석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6	박찬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7	홍진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8	조혜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9	김세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0	임은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1	배덕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2	박정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3	김재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4	김철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5	하정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6	김대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7	이재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8	황철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19	김슬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0	박승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1	이유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2	김진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3	염대협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4	정희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5	전성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6	김장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7	박성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8	한승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29	김현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0	함효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1	서주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2	김희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3	김지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4	박영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본부-35	전성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6.18 ~ 2010.11.31.

3. 부산 모니터링단(총30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기간
부산-1	손원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2	성현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3	엄혜경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4	이미경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5	강래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6	김미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7	김은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8	김태훈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9	이이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0	엄상윤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11	김 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12	정연경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13	정태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4	강 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5	정성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6	황선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7	박용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18	박원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19	서범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0	이금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1	손경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2	유영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3	정승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4	정혜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5	최부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부산-26	손우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7	유길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8	이호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29	정미자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산-30	황효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31. ~ 2010.11.31.

4. 광주 모니터링단(26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기간
광주-1	권순국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2	김도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3	조성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4	김미숙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5	김대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6	변금섭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7	서미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8	김영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9	공병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0	김규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1	우지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2	임은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3	장은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14	임옥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5	박경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6	윤진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7	서미란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광주-18	박성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19	조재한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0	이민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1	김양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2	김형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3	권세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4	권세영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28. ~ 2010.11.31.
광주-25	장윤성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9.14. ~ 2010.11.31.
광주-26	우광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9.14. ~ 2010.11.31.

5. 대구 모니터링단(총25명)

연번	이름	위촉 직위	기간
대구-1	김태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	김갑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3	이수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4	장진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5	이준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6	김시형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7	김언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8	홍혜주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9	송두용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0	김세령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1	윤수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2	장미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3	원성필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4	김동희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5	엄연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6	이선옥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7	이호식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8	태소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19	정동환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0	이영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1	신태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2	곽봉균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3	박원호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4	박종건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대구-25	전근배	위촉직 자원봉사자	2010.5.17. ~ 2010.11.31.

<부록 3> 모니터링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5.11 법률 제102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

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 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

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개정 2010.5.11>)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시행일 2011.5.12>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

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 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2010.5.11>

④ 삭제<2010.5.11>

⑤ 삭제<2010.5.11>

부칙 <제8341호, 2007.4.1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80호, 2010.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 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 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

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0766호, 2008.4.10〉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 시설	실내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아외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진입 시설
실외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타법개정]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대상시설	이동 편의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2. 여객시설

이동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 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	○	○

이동 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역사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환승시설	○	○	○	○	○	○	○				
공항시설	○	○	○	○	○	○			○	○	
항만시설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 (가) 버스의 행선지는 버스 외부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추 수 있다.
- (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

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차 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수직손잡이

(가) 저상형·일반형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철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가) 차량의 행선지는 차량 외부의 측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의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출입구 통로

(가)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 중 1곳 이상은 각각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도록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승강구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1개 차량당 1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직손잡이

(가) 수직손잡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출입구 통로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

(1) 안내시설

(가) 항공기에는 당해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내부시설

(가)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기타시설

(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항공기 안의 통로는 비치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선박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목적항의 항명 및 당해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목적항의 항명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박 안의 출입구 부근 또는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 (3)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휠체어 승강설비
 - (가)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엘리베이터 안의 넓이는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5)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장애인전용화장실
 -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당해 선박의 규모·구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나목(6)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와 선박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호 가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 (8)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1)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출입구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연속된 때에는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문의 형태

(가)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 안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

(가) 여객시설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여객시설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통로

(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50미터 이내 마다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바닥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단·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보행장애물

(가)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공작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통로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성 확보

- (가) 통로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키플레이트(휠체어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벽면 보호대 또는 안전판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가) 경사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1.5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울기

- (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높이가 16센티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손잡이

- (가)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질 및 마감

- (가)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출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 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크기
- (가)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 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이용자 조작설비
- (가)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 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 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기타 시설
- (가)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라목 (3)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

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각 층의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장소

- (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보도여건 및 승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나) 내부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및 속도

- (가)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가)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1) 계단의 형태

- (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디딤판 및 철편
 - (가) 계단에는 철편(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으로 하고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가)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기준은 라목(3)의 규정을 적용한다.
- (5) 재질 및 마감
 - (가)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나)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

(가)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코는 계단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1) 일반사항

(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마)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

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바)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전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변기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마)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차. 점자블록

(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및 색상

-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반구형·원뿔절단형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마)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 (가)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각·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카. 유도 및 안내시설

- (1)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비상벨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前面)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3)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7)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개찰구

- (1)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2)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디. 보안검사장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항공기의 객실 안으로 총포·도검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도어형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안검사장 안에 휠체어사용자 등 도어형 금속탐지기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가 통행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러.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항공기의 승강구 사이에 마련된 것으로서 당해 승강구에 접속하여 여객을 여객터미널로부터 직접 항공기에 승강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머. 대기시설

- (1)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이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시각장애인으로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 (3)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4)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3. 도로

가. 교통약자가通行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턱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라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 다목(3) 내지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 (1)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08.12.3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별표 2] <개정 2005.7.27, 2006.1.19, 2007.2.1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 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종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p>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받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10) 점자블록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2007.2.12)</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이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이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제 1 종 근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제 2 종 근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운동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공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모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p>(가)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천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 사항임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6.8, 2005.12.30, 2007.3.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먼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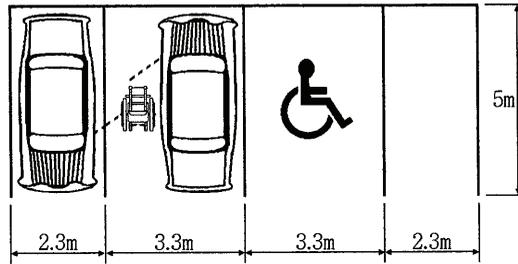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 - 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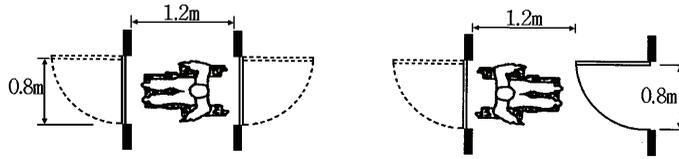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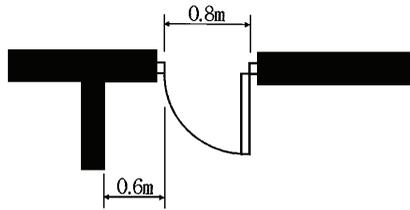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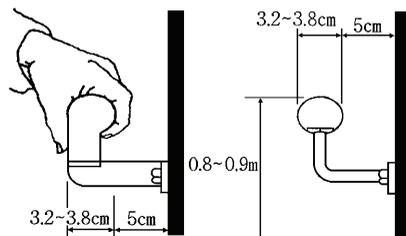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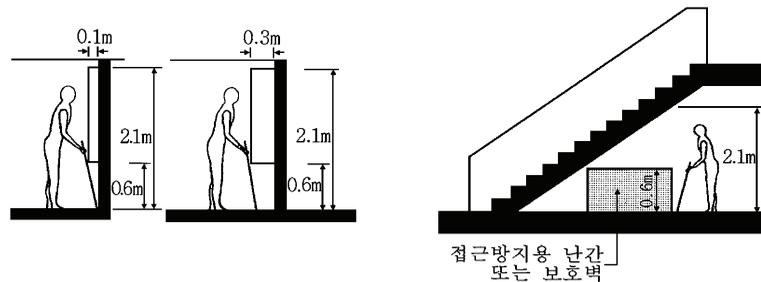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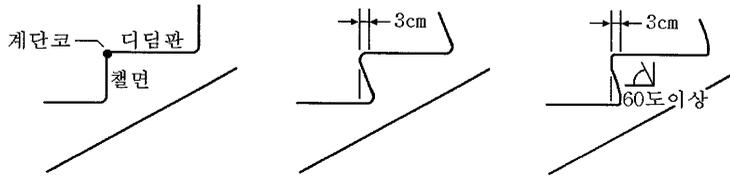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 × 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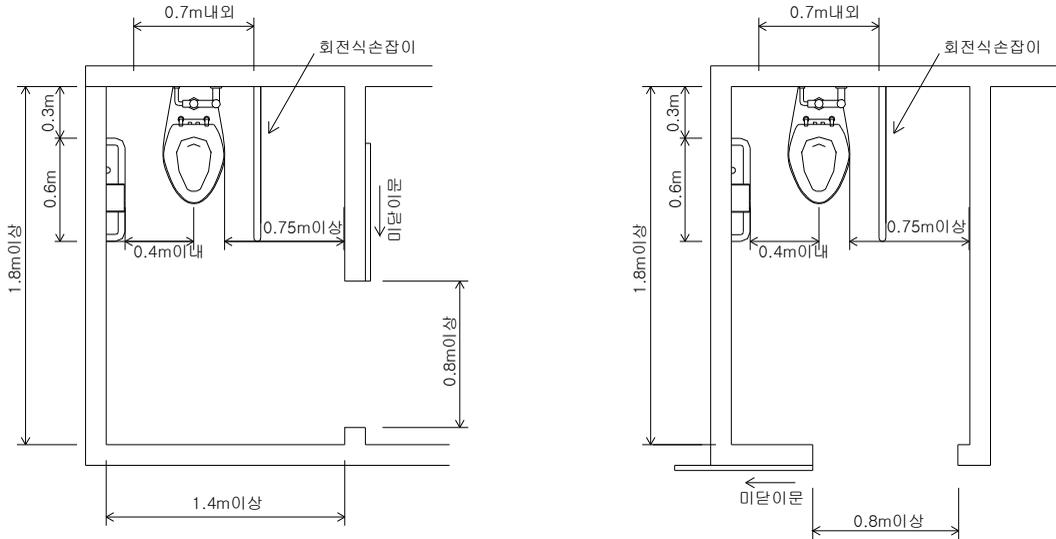
-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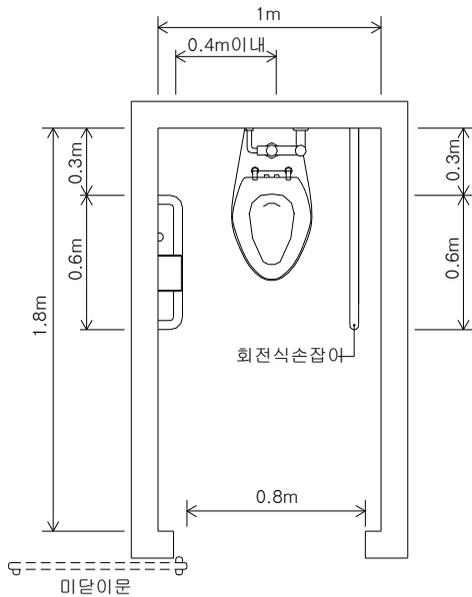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

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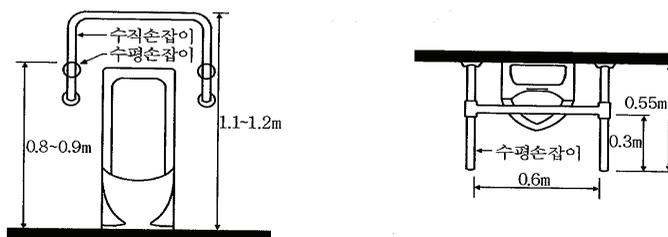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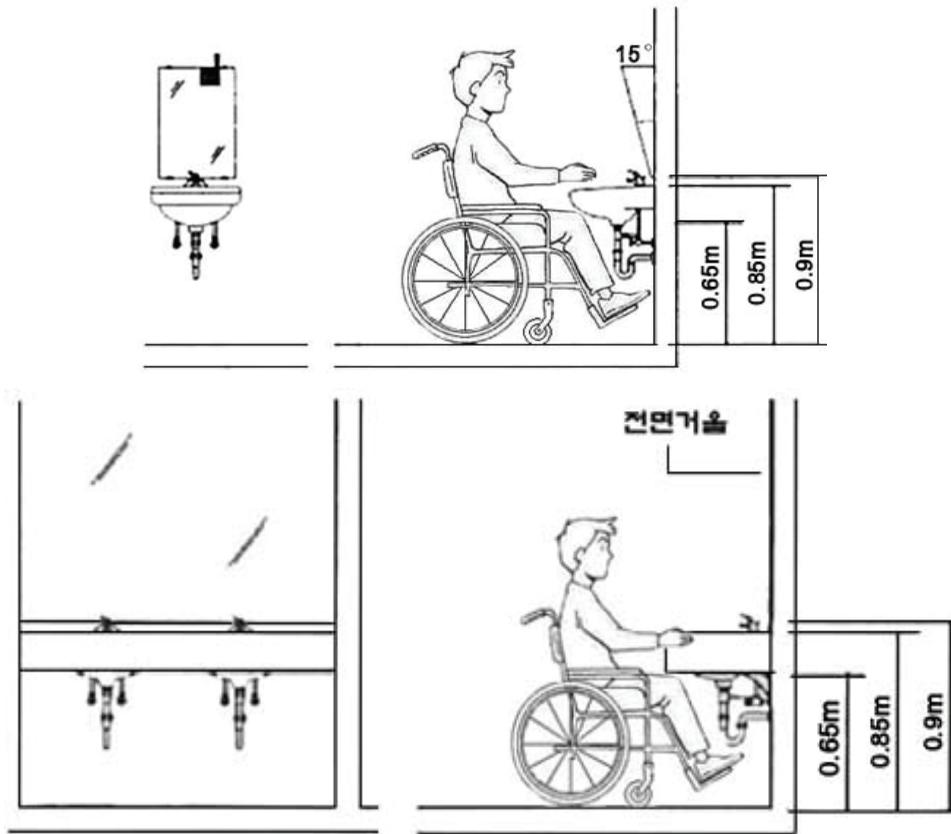
라. 세면대

(1) 구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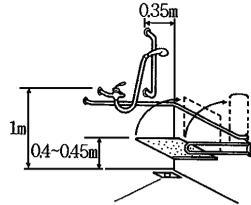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

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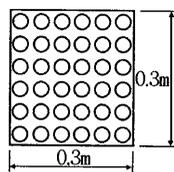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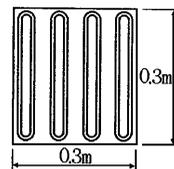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각·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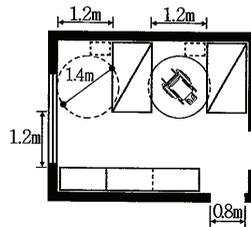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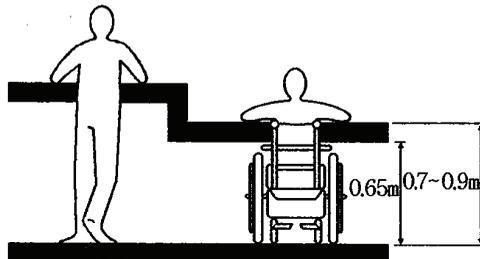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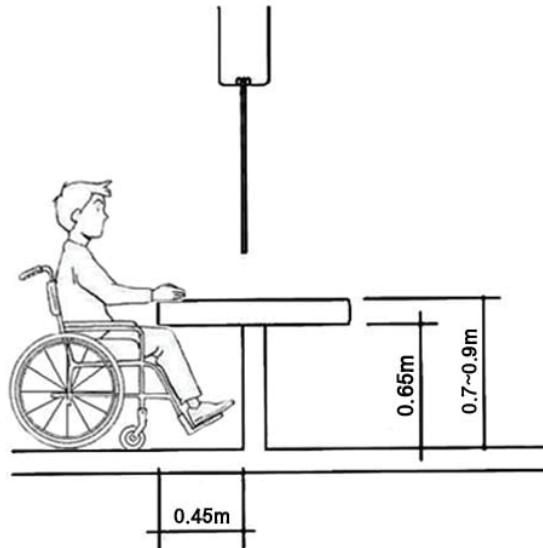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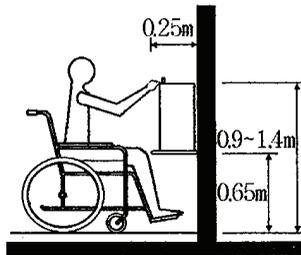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

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1999.6.8>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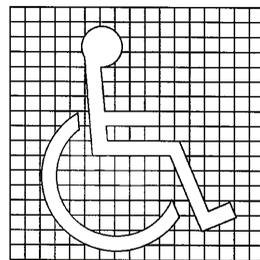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기본형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별표 3] <개정 2007.3.9>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울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울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울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행인 현병철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2125-9854

팩 스 (02) 2125-9848

HomePage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